

2023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
Remuneration System





2023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
Remuneration System

본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당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3월 5일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진옥동

진옥동

목 차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08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09
나. 지배구조 현황	12
다. 관련 규정	17
2. 이사회	18
가. 역할	19
나. 구성	26
다. 활동내역	35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평가	47
3. 회장후보추천위원회	50
가. 역할	51
나. 구성	51
다. 선임기준	51
라. 활동내역 및 평가	52
마.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관련사항	54
4.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55
가. 역할	56
나. 구성	56
다. 선임기준	57
라. 활동내역 및 평가	60
마.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	65
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	77
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 관련 사항	79
아.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81
5.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86
가.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87
나. 사외이사 활동내역	102
다. 사외이사 보수	105
라. 사외이사 교육·연수	108
마. 사외이사 평가	113
바.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117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18
아.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119
자. 기부금 등 지원내역	119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120
6.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	122
가.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 내부규정	123
나.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23
다. 대표이사 회장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24
라. 대표이사 회장 자격충족 여부	125
마.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관리현황	125
바.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125
사. 대표이사 회장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126
7. 감사위원회	127
가. 역할	128
나. 구성	132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33
라. 감사보조조직 등	143
8. 위험관리위원회	145
가. 역할	146
나. 구성	147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48
9. ESG전략위원회	154
가. 역할	155
나. 구성	155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56
10.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159
가. 역할	160
나. 구성	160
다.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관련	160
라. 활동내역	162
11. 그룹경영회의	166
가. 역할	167

나. 구성	167
다. 협의절차(운영현황)	167
라. 활동내역	167
12. 그룹리스크협의회	168
가. 역할	169
나. 구성	169
다. 협의절차(운영현황)	170
라. 활동내역	170
13.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174
14.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175
가.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활동 내역	176
나. 준법감시직원 현황	176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179
가. 총괄	180
나. 구성	180
다. 권한과 책임	181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82
2. 보수체계	186
가. 주요사항	187
나. 보수 세부사항	189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89
 [첨부]	
가. 관련규정	193
나.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274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23.9.14 시행) 과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2023.12.28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사와 자회사등의 지배구조 정책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2023년 말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2023년 말 기준 현임 이사 중 이사회 의장을 먼저 기재한 후 최초 선임일 순으로 기재하였으며, 최초 선임일이 동일한 경우 가나다 순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퇴임 이사에 대한 기술은 현임 이사에 관한 내용에 연속하여 상기 순서에 따라 기재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동 연차보고서의 목차 상 위원회 순으로 기재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먼저 기재한 후 다음 가나다 순으로 기재하였습니다.

2023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
Remuneration System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2. 이사회
3. 회장후보추천위원회
4.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5.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6.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
7. 감사위원회
8. 위험관리위원회
9. ESG전략위원회
10.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11. 그룹경영회의
12. 그룹리스크협의회
13.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14.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2023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
Remuneration System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09
나. 지배구조 현황	12
다. 관련 규정	17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당사는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룹의 성장경로와 조직문화가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한국ESG기준원이 실시하는 ESG 평가에서 2015년 이후 9년 연속 통합평가등급 A+를 획득하였으며, 특히 2017년의 경우 역대 최초로 지배구조 부문에서 유일한 S등급을 부여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는 한층 고도화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를 적용받고 있으며 해당 평가에서도 연속해서 최상위 A+등급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참고] 연도별 한국ESG기준원의 당사 기업지배구조 평가등급 결과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배구조 평가등급	A	A	A+	A+	A+	A+	A+	S	A+	A+	A+	A+	A+	A+

* 2018년 신규 평가모형 도입에 따른 평가 등급 조정

당사의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구조의 투명성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 회사 및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전자공시시스템(dart.fss.co.kr)에 공시하여 지배구조와 관련된 일체 사항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둘째,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각 위원회 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일체의 내부 규정 전문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여 당사의 지배구조 운영 방식에 관해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셋째, 주주총회 결과,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미준수 사실이 있을 경우에도 지체없이 회사 및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특히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않고, 또한 적극적인 주주의결권 보장을 위한 전자투표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제도를 도입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주주총회에 대한 공정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하여 주주총회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내 지배구조 관련 공시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shinhangroup.com/kr/governance/board_notice1.jsp

(2) 지배구조의 건전성

건전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당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에서 이사회와 관련하여 권고하고 있는 사항을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이사회규정 등의 내규에 반영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의 안정성

당사는 이사회와 경영진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구현하고자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각각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을 통해 충실히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82%(전체 11명 중 9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로 법적으로건인 과반을 훨씬 상회하도록 운영하여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사회내위원회를 사외이사 과반 이상으로 구성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회내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중: 평균 94%)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사내이사인 대표이사 회장과 이사 아닌 경영진에 대한 선임·해임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외이사에게는 자료요청권·자문요청권 등의 권한을, 회사에는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함이 입증될 경우 사외이사로서의 경륜 활용,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연속성, 이사회내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초 선임시 2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이후 1년 단위로 연임하여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경우에 한해 주주총회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선임 대상 후보군에 속하는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및감사위원회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기추천 및 본인 추천안건에 대한 의결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표이사 회장의 연령을 만70세 이하로 제한하여 경영승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4)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당사는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하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명문화하여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 이사회가 특정 배경과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지배구조법에서 전문성 요건으로 제시한 분야 중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정보기술(IT)의 6개 분야 전문가를 고르게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업권을 총괄하는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복합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 주된 전문성 분류별 이사회 구성현황

구분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정보기술(IT)	총원
2023년 3월 정기주총 이후	2명	2명	1명	2명	3명	1명	11명

한편 당사는 국적, 성별, 연령, 경험 및 배경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보유한 사외이사 후보들로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을 구성하도록 정한 '이사회 다양성 Guidelines'을 준수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현재 이사회 구성원으로 여성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하여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추구하고 동시에 2개 국적(대한민국, 미국), 2개 주요 활동국가(대한민국, 일본) 출신 사외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글로벌 관점을 회사경영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젠더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에 최소 20% 이상 여성 후보군을 반영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 Board Skill Matrix (2023.12말 이사회 기준)

구분	곽수근	김조설	배훈	성재호	윤재원	이용국	이윤재	정상혁	진옥동	진현덕	최재봉
금융							●	●	●		
경제		●					●				
회계	●		●		●						
경영	●				●		●	●	●	●	
법률			●	●		●					
IT/디지털											●
글로벌		●	●	●		●			●	●	

[참고] 최근 3개년 사외이사 후보군 중 여성 후보 수 (매년 30% 이상 유지 중)

구분	사외이사 후보군 수	사외이사 후보군 중 여성 후보 수 (비중)
2021년 12월말 기준	131명	49명 (37.4%)
2022년 12월말 기준	140명	50명 (35.7%)
2023년 12월말 기준	164명	56명 (34.1%)

(5) 그룹의 성장경로와 조직문화가 반영된 지배구조

당사는 1982년 7월 재일동포 소액주주 341명(100%출자, 자본금 259억원)의 모국애를 담아 '대한민국 최초의 순수민간자본'으로 출범한 신한은행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은행'을 기치로 모국의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재일동포 소액주주들의 순수한 사명감이 그룹의 창립 정신이며, 그 정신은 새로운(新) 한국(韓)의 銀行이라는 회사 명칭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한은행 창립부터 현재까지 재일동포 주주들은 창립 주주로서 단순한 투자자 이상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재일동포 주주들은 창립 이후 회사의 시장지위 유지와 견실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흔들림 없이 지지를 보내 주었습니다.

또한 외환위기 시 큰 폭의 주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한 주식 갖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조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조력자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창립 주주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은 창립 당시 3개 지점만을 가진 작은 금융회사였던 신한은행이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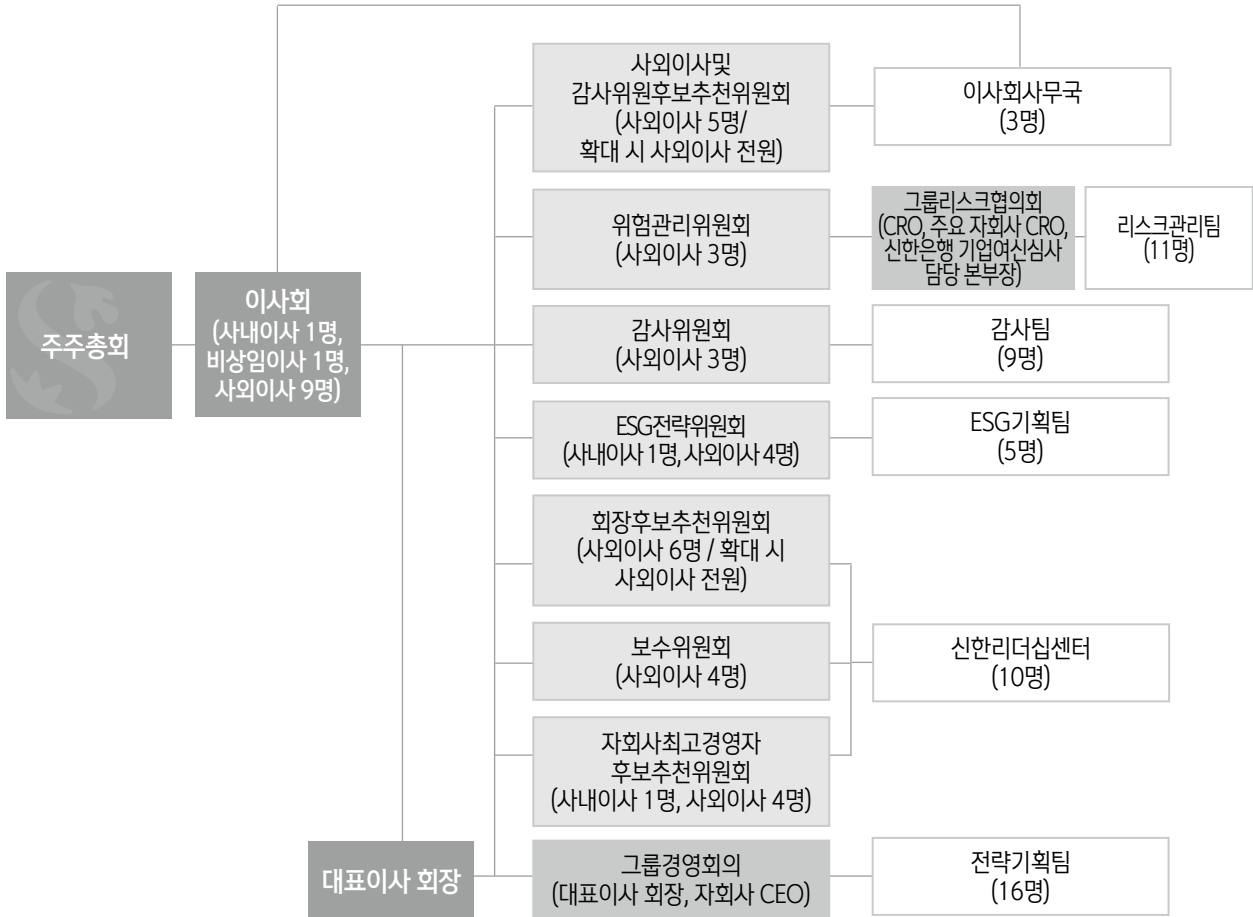
이러한 창립 주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창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당 그룹은 "신한"이라는 가치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깊은 금융분야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안정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아울러 2001년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금융지주회사'로 출범한 당사는 글로벌 금융그룹인 BNP Paribas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인 IMM PE의 투자를 유치하고, 2020년에는 글로벌 사모펀드인 Affinity Equity Partners와 EQT Private Capital Asia(舊 Baring Private Equity Asia)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룹의 성장경로와 조직문화를 지배구조에 반영하고자 창립 이념과 재일동포 주주를 대표하는 경영, 법률, 경제 분야 전문가 사외이사과 전략적 제휴사인 IMM PE, Affinity Equity Partners 및 EQT Private Capital Asia(舊 Baring Private Equity Asia)가 추천한 회계, 법률, 정보기술(IT) 분야 전문가 사외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2023.12월말 기준)



(2) 지배구조의 특징

(가)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갖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총원 11명 중 사외이사는 9명으로 그 구성비율이 82%에 이르며 타 금융회사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2010년 3월부터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사회내위원회 중심의 운영

이사회내위원회는 총 7개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회장 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ESG전략위원회,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회장 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지배구조법 등 법령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며, 나머지 2개 위원회는 이사의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과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이사회내위원회 구성도 역시 위 (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지배구조법은 사외이사 구성비를 과반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 내규 역시 사외이사의 수를 과반수로 규정하였으나, 실제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3조) 마찬가지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 중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실제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최고 경영자 경영승계 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3조)

감사위원회의 경우 지배구조법 및 내규(감사위원회규정 제7조)에서 사외이사 구성비를 2/3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당사는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에 대한 업무감독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의 경우 지배구조법 및 내규(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3조)에서 사외이사 구성비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당사는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 자율적인 결의로 설치한 ESG전략위원회와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도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든 이사회내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임원후보 추천권한의 분산

당사는 임원후보추천과 관련하여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1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당사는 관련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임원추천권한을 세분화하여 이사회내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컨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004년 5월 10일부터 당사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회장후보추천위원회(舊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2011년 8월 25일부터 당사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08년 2월 4일부터 당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그리고 이사회운영위원회는 2011년 8월 25일부터 당사 비상임이사(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추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1년 3월 25일 정관 및 관련 내규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합하여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비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추천 권한을 이사회로 이관하고 이사회운영위원회는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독립성, 투명성을 위하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회내위원회로 편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인 사외이사는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선임하여 특정 사외이사에게 임원 추천권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구분	추천 대상 임원	소속 위원 (사외이사)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	최재봉, 김조설, 윤재원, 이용국, 진현덕 (단, 사외이사 후보 최종 추천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 절차 개시 시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성재호, 배훈, 이용국, 이윤재, 진현덕, 최재봉 (단, 대표이사 회장 후보 선정을 위한 최종 회의시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신한금융그룹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곽수근, 배훈, 성재호, 이윤재

(라) 이사회내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당사는 지배구조법에서 명시하는 바에 따라 1인 이상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에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회계전공 경영학 교수로 재직 중인 윤재원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계전공 경영학 교수 출신인 곽수근 이사를 포함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시킴과 더불어 그 전문성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의 경우 다양한 국내외 대형 금융·법률자문을 약 15년간 수행하며 금융 및 자본시장에 대한 전문 경험을 보유한 법률·금융 전문가인 이용국 이사와 법률 전문성을 비롯하여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해 면밀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성재호 이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위험관리위원회의 역할 수행에 깊이를 더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수위원회 위원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초과 재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 유지 등을 감안하여 이사 재임기간 중 구성원의 변동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 가능경영 강화

당사는 고객, 주주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성장하고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룹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2015년 3월 25일 국내 금융사 최초로 ESG전략위원회(舊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바)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책임 준수

당사는 국내 최초의 민간 금융지주회사로서 지배구조의 구성 측면에서도 지주회사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이전 모범규준의 관련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경영관리 및 위험관리 협의회를 지속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1년 9월부터 대표이사 회장의 의사결정 지원기구로서 그룹 주요현안을 협의하는 그룹경영회의(모범규준 상 경영관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12월부터 그룹의 제반 리스크관련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그룹리스크협의회(모범규준 상 위험관리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11월부터 위험관리위원회의 실무 정책 기구로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위원장) (이름/사내사외 비상임 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	1. 자회사를 포함한 경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조직의 중요한 변경 및 계약에 관한 사항 5. 회사의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사항 6.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 7.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회사의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수립·평가 및 상시적인 최고경영자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9/11	이운재 (사외이사)	· 주요 역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이사회규정 제10조 · 구성: 제36조,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조, 이사회규정 제5조 · 이사회 의장: 정관 제45조,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5조, 이사회규정 제7조
사외이사및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 ¹⁾	1.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 3.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5/5 (9/9) ²⁾	최재봉 (사외이사)	· 주요 역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3조, 사감추위규정 제6조 · 구성: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3조, 사감추위규정 제3조 · 위원장: 사감추위규정 제4조
회장후보추천위원회 ³⁾	1.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 2. 대표이사 회장의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 3.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 추천 4.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6/6 (9/9) ⁴⁾	성재호 (사외이사)	· 주요 역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0조, 회추위규정 제6조 · 구성: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0조, 회추위규정 제3조 · 위원장: 회추위규정 제4조

(3) 지배구조 현황(요약)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위원장) (이름/사내사의 비상임 여부)	관련 규정
감사위원회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 및 외부감사인 해임요청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3/3	윤재원 (사외이사)	·주요 역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2조, 감사위규정 제10조 ·구성: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2조, 감사위규정 제7조 ·위원장: 감사위규정 제8조
보수위원회	1.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 체계의 설계 운영 및 그 설계 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자회사 경영진의 평가 및 보수와 관련한 사항 5. 회사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결정 6. 보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보수 체계와 관련된 사항	4/4	성재호 (사외이사)	·주요 역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5조, 보수위규정 제6조 ·구성: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5조, 보수위규정 제3조 ·위원장: 보수위규정 제4조
위험관리위원회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2. 회사 및 자회사별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 그룹리스크관리규정과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6.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금융감독원의 비소매 및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그룹 내부등급법 승인 관련 의사결정 사항 9. 리스크 공시정책에 관한 사항 10. 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이와 관련된 자본관리 계획, 자금조달 계획 11.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금융위원회 등 외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타 규정,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 1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3	이용국 (사외이사)	·주요 역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4조, 위험위규정 제6조 ·구성: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4조, 위험위규정 제3조 ·위원장: 위험위규정 제4조
ESG전략위원회	1.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2. 기후변화대응을 포함한 친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규범/정책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속가능경영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5	곽수근 (사외이사)	·주요 역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7조, ESG위규정 제6조 ·구성: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7조, ESG위규정 제3조 ·위원장: ESG위규정 제4조
자회사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	1.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 2.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4.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5. 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에 관한 사항 6. 자회사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등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4/5	진옥동 (사내이사)	·주요 역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9조, 자경위규정 제6조 ·구성: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9조, 자경위규정 제3조 ·위원장: 자경위규정 제4조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위원장) (이름/사내사외 비상임 여부)	관련 규정
그룹경영회의	<p>그룹 주요 현안을 협의하여 대표이사 회장의 의사결정 지원</p> <p>1. 그룹의 비전/전략방향 및 경영계획/예산 수립과 관련된 사항</p> <p>2. 그룹 전략 실행을 위해 자회사등 및 사업부문 간 협조 또는 이해 조정 필요 사안</p> <p>3. 자회사등 및 사업부문별 각종 경영현안 중 자회사등 간 공유 및 협의가 필요한 사안</p> <p>4. 자회사등 및 사업부문 간 공동으로 적용되는 제도 관련 사안</p> <p>5. 그룹 차원의 브랜드 전략 관련 사안</p> <p>6. 기타 대표이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 외부 법률 혹은 계약에 의해 기밀로 유지해야하는 안건 등은 부의 생략 가능</p>	-	진옥동 (사내이사)	<p>· 주요 역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3조, 그룹경영회의 운영 규정 제2조, 제6조, 제7조</p> <p>· 구성: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3조, 그룹경영회의 운영규정 제3조</p> <p>· 위원장: 그룹경영회의 운영규정 제3조</p>
그룹리스크협의회	<p>그룹과 자회사 리스크정책 및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하여 그룹의 제반 리스크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결</p> <p>1. 국가, 중점관리영역, 개별 기업 및 계열 등 익스포저 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p> <p>2. 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p> <p>3. 금융감독원 내부등급법 승인 대상을 제외한 그룹 비소매 신용평가시스템 관련 의사결정 사항</p> <p>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	방동권 (그룹위험관리 책임자)	<p>· 주요 역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4조, 그룹리스크협의회 규정 제2조, 제5조, 제6조</p> <p>· 구성: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4조,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 제3조</p> <p>· 위원장: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 제3조</p>

- 1)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당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
- 2) 사외이사 후보 최종 추천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 절차가 개시되면 사외이사 전원 참여
- 3)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당사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 4) 대표이사 회장 후보 선정을 위한 최종 회의 시에는 사외이사 전원 참여

다. 관련 규정

- 첨부1. 정관
- 첨부2. 지배구조 내부규범
- 첨부3. 그룹내부통제규정
- 첨부4. 이사회규정
- 첨부5.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첨부6.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첨부7. 감사위원회규정
- 첨부8. 보수위원회규정
- 첨부9. 위험관리위원회규정
- 첨부10. ESG전략위원회규정
- 첨부11.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첨부12. 그룹경영회의 운영규정
- 첨부13.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
- 첨부14. 신한금융그룹 윤리강령

2023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
Remuneration System



2. 이사회

가. 역할	19
나. 구성	26
다. 활동내역	35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평가	47



2. 이사회

가. 역할

(1) 총괄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대표이사 회장의 선임 및 해임, 회사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그룹 및 회사 내 주요사항을 결정합니다. 또한 건전한 견제기능을 통해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다양한 전문역량과 식견을 보유한 사외이사, 신한문화에 대해 이해가 깊은 금융분야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 회장 및 비상임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에서 그룹 및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 내외의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당사는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및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에 정하고 있으며, 동 내용은 당사 정관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자회사를 포함한 경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자회사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회사의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사업계획, 재무계획, 위험계획, 예산계획 등을 포함한 경영계획을 수립·평가·최종승인하며,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경영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7일 개최한 제9회 임시이사회에서 '2024년도 그룹 경영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을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2024년도 경영계획은 2023년 9월에 개최한 경영계획 관련 지주회사 실무자 워크숍에서 '그룹 전략 리뷰 및 향후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경영계획 주무부서인 전략기획팀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임원·부서장회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그룹 경영계획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6일 개최한 이사회워크숍에서 해당 초안에 대해 논의하여 그룹 전략 방향성을 확정하고 자회사에 공유하였으며, 이후 자회사별 성과분석회의를 통해 2023년의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각 사별로 2024년도 경영계획 초안을 검토하였고, 자회사 경영계획 담당임원 협의 및 그룹경영회의를 통해 '2024년도 그룹 경영계획(안)'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안건을 2023년 12월 7일 개최한 제9회 임시이사회에서 결의함으로써 '2024년도 그룹 경영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룹의 추구 가치 및 장기 지향점인 '고객중심'과 '一流(일류) 신한'의 달성을 위해, 과거 성공의 틀에서 벗어나 원점에서 새롭게 고민하는 혁신과 도전을 추진하고자 "고객중심 一流신한 틀을 깨는 혁신과 도전"을 경영슬로건으로 정하고 세부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 경영계획은 막연한 목표나 지향점 설정보다는 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바탕으로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24년 전략과제 최우선 전략과제와 핵심 전략과제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우선 전략과제는 2024년 그룹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선제적 내부통제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세부 추진 방향으로 '내부통제 新 거버넌스 확립', '금융사고 선제적 예방체계 강화',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윤리준법 文化 내재화', '잠재위험 확대 대응 및 철저한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장 지원 리스크 관리', '미래성장 동력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가 있습니다.

둘째부터 여덟째 과제는 핵심 전략과제입니다.

둘째, "Beyond Legacy, 차별화 된 고객기반 확보"입니다. 세부 추진 방향으로 "금융 본업 가치 제고", "과감한 제휴, 새로운 시도", "고객기반

추진 체계 강화'가 있습니다.

셋째, “효율적 성장을 통한 자본시장 시장지위 제고”입니다. 세부 추진 방향으로 ‘상품 공급 - 운용 역량 강화’, ‘IB biz 성과 확대’, ‘글로벌, VC 경쟁력 강화’, ‘업권간 연결과 성장 지원’이 있습니다.

넷째, “Value-up 2024, 지속가능한 一流 글로벌”입니다. 세부 추진 방향으로 ‘내부통제 · 리스크관리 및 협업체계 강화’, ‘차별적 가치 창출’, ‘비은행 기여도 확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이 있습니다.

다섯째, “Digital to Value 통한 성과 창출 Scale-Up”입니다. 세부 추진 방향으로 ‘신한 SOL 유니버스 구축을 통한 성과 창출’, ‘비즈니스 연속성 강화 및 디지털 ESG 활동 확대’, ‘디지털 비즈니스의 효율성 제고 및 신기술 · 신사업 투자 지속 추진’, ‘지속 가능한 디지털 Core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여섯째, “‘바르게’ 중심 신한문화 대전환 추진”입니다. 세부 추진 방향으로 ‘메타인지를 통한 직원 성장’, ‘바르게 중심 경영 방향성 내재화’, ‘미래인재 경쟁력 확보’, ‘HR테크 활용 인사혁신’이 있습니다.

일곱째,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ESG 추진”입니다. 세부 추진 방향으로 ‘진정성 있는 친환경 경영 추진’, ‘사회적 요구 반영한 사회공헌 확대 추진’, ‘DEI 문화 조성 및 가치 확산’이 있습니다.

끝으로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는 성장과 수익”입니다. 세부 추진 방향으로 ‘그룹 사업라인 기초체력 강화’, ‘신성장동력 발굴 및 시장기회 선점’, ‘효율적 자원 배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한 전략과제와 중기 전략목표의 일관성, 업권별 특성 및 환경 등을 감안하여 신한은행을 비롯한 15개 자회사들이 각기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당사 이사회 및 각 회사별 이사회에서 각각 승인하여 그룹 전체의 일관된 전략 방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사회는 반기마다 ‘그룹 경영계획 연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경영계획의 진행상황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각 1회 추진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이행경과를 점검하는 한편, 이를 통해 각 자회사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CEO 전략과제 평가 및 보수체계와 연계함으로써 그룹 차원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2월 8일 개최한 제1회 임시이사회 및 8월 10일 개최한 제3회 정기이사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2024년 또한 2월 8일 개최한 제1회 정기이사회에 동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나) 정관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2호는 ‘정관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에서 정관을 중요한 규정으로 적시하여 정관의 개정 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관 외에도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중요한 규정으로 지배구조 내부규범, 이사회규정, 이사회내위원회규정, 경영진운영규정, 내부통제규정 등을 적시하고 기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규정까지 포함하여 해당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2월 28일 개최한 제1회 정기이사회를 통해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승인하였으며, 3월 23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근거를 정비하는 한편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배당기준일을 결산기말(12월말)에서 배당금액 확정일(주주총회일)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정책을 반영한 점이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이 외에 동이사회를 통하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명칭 변경과 해당 위원회의 심의 및 결의사항의 일부 변경, 감사위원회 기능 중 내부감사책임자 위임 대상 명확화, 경영진 보수 항목의 명칭 정비 등을 위하여 ‘지배구조내부규범’, ‘이사회규정’, ‘감사위원회규정’, ‘경영진평가및보수규정’,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5월 11일 개최한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그룹 자체정상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그룹자체정상화계획운영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위기상황 단계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의 주요 역할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8월 10일 개최한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 권고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 작성 기한을 명시하기 위해 ‘이사회규정’의 개정을 결의하였습니다.

끝으로 11월 9일 개최한 제4회 정기이사회에서는 임원 성과급 환수 관련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기준 개정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경영진 성과보수 제도 운영을 위해 ‘뉴욕증권거래소 상장회사 성과보수 환수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경영진 평가 및 보수 규정’과 ‘PS운영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 예산 및 결산승인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3호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사, 경영진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이사회 권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계획의 수립과정은 상기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서 기재한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2023년 12월 7일 개최한 제9회 임시이사회에서 아래 내용과 같이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총예산은 1,905억원으로 전년대비 62억원 증가한 금액이며, 세부적으로는 경비예산이 37억원 증가하고 자본예산이 2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경비예산은 1,770억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498억원, 물건비는 1,231억원, 예비비는 40억원입니다. 당사 이사회는 예산계획과 더불어 결산안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결산안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책임자가 2023년 1월 초안을 마련하였고, 2023년 2월 8일 개최한 제1회 임시이사회 결의를 통해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2023년 2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2023년 2월 23일 개최한 제2회 감사위원회에서 제22기 결산 회계감사 결과를 확정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하였고 2023년 3월 23일 개최한 제2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4호는 ‘조직의 중요한 변경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주식 및 자본금의 변경’, 제10조 제1항 제5호에 ‘자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1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본의 출자’, 제10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로서 1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제10조 제1항 제8호 다목에 ‘외국금융기관 등과의 포괄적 업무제휴, 자본의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제휴 또는 협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승인’ 등을 이사회 권한으로 보다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8일 개최한 제1회 임시이사회에서는 ‘2022년 하반기 자회사 등 편입 및 제외’ 안건을 통하여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5호 예외규정(자회사등이 손자회사등에 출자한 금액이 손자회사 등 편입 및 제외 당시 지주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2022년 하반기 중 발생한 자회사 등 편입 및 제외 내역을 일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7월 27일 개최한 제6회 임시이사회에서는 ‘2023년 상반기 자회사 등 편입 및 제외’ 안건을 통해 2023년 상반기 중 발생한 자회사 등 편입 및 제외 내역을 일괄 보고하였습니다.

추가로 12월 7일 개최한 제9회 임시이사회에서는 ‘그룹 포트폴리오 조정 보고’를 통하여 당사의 자회사 중 하나인 신한시과 신한은행간의 자산양수도 관련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경우 향후 실제 청산 시점에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의할 예정입니다.

(마)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 및 평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5호는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이사 등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권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8일 개최한 제1회 임시이사회에서는 '2023년 이사회 구성의 건'을 심의하고, 이사회 구성원 총 수와 사내/사외/비상임이사의 비중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14명(사외이사 12명, 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 중이던 당사의 이사회는 2023년 정기주주총회 이후 11명(사외이사 9명, 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감안하고 창업 배경의 특수성, 외부 기관투자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였으며, 이사회 구성의 변경을 통해 이사회의 운영과 논의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2023년 2월 28일 개최한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는 '이사 후보 적정성 심의의 건'을 통해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전원에게 적정성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 후보 추천의 건'과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동 내용은 2023년 3월 23일 개최한 제 2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3월 23일 개최한 제2회 임시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과 '대표이사 회장 선임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지난 6년간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임한 조용병 전 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새로이 진옥동 이사가 이사회 전 개최된 제2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됨에 따라 후속 이사회에서는 진옥동 이사를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경청하고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내야 하는 이사회 의장으로는 금융과 경제 전반에 걸친 지식과 이해도가 탁월하고 민·관을 아우르는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수집력을 보유함으로써 이사회에서 균형 잡힌 의견을 제시함은 물론 지난 2년간 이사회 의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이윤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계속 역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사 전원의 의견에 따라 이윤재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재선임하였습니다.

동일자에 개최한 제3회 임시이사회에서는 '이사회내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결의하였으며 이어진 연석회의에서는 각 위원회별 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사회내위원회 별 위원장 및 위원 선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최재봉(위원장), 김조설, 윤재원, 이용국, 진현덕
 - * 단, 사외이사 후보 최종 추천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 절차가 개시되면 사외이사 전원을 위원으로 구성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성재호(위원장), 배훈, 이용국, 이윤재, 진현덕, 최재봉
 - * 단, 대표이사 회장 후보 선정을 위한 최종 회의시에는 사외이사 전원을 위원으로 구성
- 보수위원회 : 성재호(위원장), 박수근, 김조설, 이윤재
- 위험관리위원회 : 이용국(위원장), 성재호, 최재봉
- ESG전략위원회 : 박수근(위원장), 김조설, 윤재원, 이용국, 진옥동
-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 진옥동(위원장), 박수근, 배훈, 성재호, 이윤재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우 동일자에 앞서 개최한 제22기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은 윤재원(위원장), 박수근, 배훈 이사입니다.

또한 동 이사회는 '이사 보수 승인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대표이사 회장인 사내이사의 보수는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 12월 19일 개최한 제10회 임시이사회에서는 '이사 아닌 경영진 선임의 건'을 통해 2024년 그룹의 전략방향, 지주회사 조직개편 내용 등을 반영하여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 지주회사 경영진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바)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6호는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7호 라목에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승인'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에는 신한은행 은행장이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와 신한은행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가 성립이 됩니다. 이러한 이해상충 행위를 감독하기 위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신한은행 은행장인 비상임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재적이사 2/3 이상 찬성을 요하는 특별결의 방식으로 결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에는 당사가 사용 중인 사무공간에 대하여 소유주인 신한은행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에 따라 2023년 12월 7일 개최된 제9회 임시이사회를 통하여 임대차 계약의 건을 결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는 당사의 사무공간에 대한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 관리비 금액과 함께 향후 3년간 계약 갱신을 감안한 임대차계약 한도를

승인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3일 개최한 제3회 임시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제도 운영 관련 보고'를 실시하고, 사외이사가 소속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과거 2년간의 기부금 내역을 확인한 후 이해상충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사) 내부통제기준 수립·평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7호는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10호에 동일 내용을 이사회로 정하고 있고, 아울러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내부통제규정의 개폐를 이사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에는 내부통제 관련 규정을 개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기타 중요 사항으로 2023년 2월 8일 개최한 제1회 임시이사회에서 '2022년도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2023년 2월 28일 개최한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는 '2022년도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와 '2022년도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그리고 '2022년도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를 각각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10일 개최한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는 '그룹 준법감시인 상반기 내부통제 활동'을 보고받았습니다.

한편, 당사 이사회는 나날이 증가하는 내부통제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내부통제 관련 아젠다를 두 차례 워크숍을 통해 논의하였습니다. 첫째로 5월에 개최한 제1회 이사회워크숍에서는 "내부통제 교육·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법무법인 소속의 내부통제 전문 변호사를 초빙하여 최근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와 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둘째로 8월에 개최된 제2회 이사회워크숍에서는 그룹의 준법감시인이 '그룹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안건을 발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위험(리스크)관리기준 수립·평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8호는 '회사의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11호에 동일한 내용을 이사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은 관계법령 및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0조 제3항은 이사회가 각 이사회내위원회 규정의 '결의사항 등'을 제·개정함으로써 권한을 위임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내위원회의 권한으로 하도록 위임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는 본 연차보고서 1.지배구조 일반-나.지배구조 현황-(2)지배구조 특징-(나)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이사회내위원회 중심의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이사회 권한에 해당하는 일부 내용을 개별 이사회내위원회에 분산하여 위임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15호는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내위원회가 결의한 사항 중 재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사회로 결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내위원회 중심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이며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운영하되, 이사회내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전문적 의사결정을 요하는 '회사의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다수의 내용을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6조(결의사항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6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2. 회사 및 자회사별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 그룹리스크관리규정과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6.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금융감독원의 비소매 및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그룹내부등급법 승인 관련 의사결정 사항
9. 리스크 공시정책에 관한 사항
10. 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이와 관련된 자본관리 계획, 자금조달 계획
11.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금융위원회 등 외국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타 규정,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
1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리스크 검토결과를 심의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인 자회사등의 편입 및 제외에 관한 사항
2. 제1호 자회사등의 편입 및 제외와 관련하여 자회사등이 해당 자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신용공여
3. 이사회 결의사항인 중요한 계약 등
 - 가. 1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본의 출자
 - 나.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로서 1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 다. 외국금융기관 등과의 포괄적 업무제휴, 자본의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제휴 또는 협약에 관한 사항
 - 라.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승인
4.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
5. 회사의 리스크관리 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금융위원회 등 외국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타 규정,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
7.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타 중요사항으로 2023년 7월 27일 개최한 제6회 임시이사회를 통하여 그룹 자체정상화계획(안)의 방향성을 보고하고 이어진 2023년 10월 6일 제7회 임시이사회에서 '그룹 자체정상화계획(안)'을 최종 승인한 후, 이사회 승인을 득한 그룹 자체정상화계획(안)을 금융감독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자) 경영승계업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9호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수립·평가 및 상시적인 최고경영자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12호에 동일 내용을 이사회 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승계업무'를 이사회 의 권한으로 두고 있으나, 상기 (아) 위험(리스크)관리기준 수립·평가와 마찬가지로 사유로 다수의 내용을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6조(결의사항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위임하고 있습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6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대표이사 회장 후보인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 가.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검토에 관한 사항
 - 나.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평가 등 경영승계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대표이사 회장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 라. 대표이사 회장 후보인 이사의 추천

2023년 2월 28일 개최한 제1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2022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에 대한 평가, 2023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동일자에 개최한 제1회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에는 총자산 10조원 이상인 자회사 CEO 근무 경험자 및 총자산 10조원 이상인 겸직 사업그룹장을 거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자회사 CEO, 2년을 초과하여 총자산 10조원 이상 겸직 사업그룹장으로 근무한 경영진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5월 10일 개최한 제3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2022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의 성과평가 결과 및 2023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의 개발활동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2023년 7월 27일 개최한 제4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그룹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동일자에 개최한 제6회 임시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차) 기타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및 '주주총회의 부의안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8일 개최한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을 통해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결산승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상정하기로 하고 2023년 3월 23일 제22기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타 결의사항으로 2023년 4월 27일 개최한 제4회 임시이사회와 7월 27일 개최한 제6회 임시이사회, 그리고 10월 25일 개최한 제8회 임시이사회에서 각각 '분기배당 실시의 건'과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을 결의하며 지속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실행할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5월 11일 개최한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는 콜옵션의 만기가 도래하는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차환 목적으로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건'을 결의하였으며, 2023년 12월 19일 개최된 제10회 임시이사회에서는 적정 자본비율 관리를 위한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2023년 6월 19일 개최한 제5회 임시이사회에서는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모의훈련 실시안'을 보고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기 수립한 계획의 위기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차기 자체정상화계획을 보다 실효성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7일 개최한 제9회 임시이사회에서는 2024년 중 자회사 영업자금 및 자본확충 지원 필요 시 유동성 한도 확보를 위한 '2024년도 자회사 자금지원 한도 설정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카) 주요 이사회 보고사항

첫째, 이사회규정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및 그 실적', '이사회내위원회의 심의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회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직전 개최된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운영실적 전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관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의 운영실적은 반드시 위험관리책임자와 감사 담당 임원이 직접 보고하도록 운영함으로써 해당 위원회가 경영진과 독립된 위치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 이사회에 준법감시인과 감사 담당 임원이 배석하여 이사회회의 의사결정이 내부통제에 어긋남이 없고 적법하게 이뤄지는 지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사회규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회장이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주기적인 경제 환경 분석과 주요 이슈 사항을 점검할 것을 주문한 사외이사들의 요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 개최한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 '2023년 시행 주요 회계기준'을, 8월 10일 개최한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2023년 하반기 매크로 주요 이슈'를 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 6일 개최한 이사회워크숍에서는 '2024년 금융환경 전망'과 '2024년 리스크관리 방향성' 등을 보고하여 이사회가 거시적인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2월 8일 개최한 제1회 임시이사회에서 '2022년도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2월 28일 개최한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 '2022년도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 '2022년도 감사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수행실적'을

보고하였으며, 8월 10일 개최한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그룹 준법감시인 상반기 내부통제 활동'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5월 11일 개최한 이사회 워크숍에서 "내부통제 교육·연수"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와 동향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8월 10일 개최한 이사회 워크숍에서는 '그룹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보고하는 등 이사회와 이사회 워크숍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 및 현황, 주요 이슈를 두루 점검함으로써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셋째, 사외이사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주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0조 제3항은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2회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2월 8일 개최한 제1회 임시이사회, 5월 11일 개최한 제2회 정기이사회, 8월 10일 개최한 제3회 정기이사회, 10월 6일 개최한 제7회 임시이사회 및 12월 19일 개최한 제10회 임시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당사 이사회는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정관 제36조,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조, 이사회규정 제5조)

최소 인원을 3명으로 규정한 것은 상법의 최소 이사회 총원(상법 제383조제1항)을 반영한 것이며, 최대 15명으로 제한한 이유는 이사가 16명 이상인 경우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저하 등으로 의사결정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로서 각 금융업권 별 자회사의 경영관리를 원활히 통할하고 최고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이사회내위원회) 중심의 전문적인 의사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규모를 유지해 왔으며,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6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 이사회규정 제5조)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사외이사 최소 인원수 및 이사 총수 요건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창립 이래 최소 8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포함시켜 과반수 요건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왔으며, 아울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 원칙을 구현하였습니다.

2023년말 당사 이사회는 총11명의 이사(사내이사인 대표이사 회장 1명, 비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6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으며 회사 또는 자회사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38조제1항,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6조제1항, 동조제4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를 반영하여,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Clubby Boards)를 막기 위해 최대 임기를 제한한 것입니다. 2023년말 기준 재임 이사에 관한 임기 관련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내이사인 진옥동 이사는 2023년 3월 제2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3년 임기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비상임이사인 정상혁 이사는 2023년 3월 제2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2년 임기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23년 3월 제2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도래한 11명(곽수근, 박안순, 배훈, 변양호, 성재호, 윤재원, 이용국, 이윤재, 진현덕, 최재봉, 허용학)의 이사 중 8명(곽수근, 배훈, 성재호, 윤재원, 이용국, 이윤재, 진현덕, 최재봉)이 1년 임기로 재선임되었고, 1명(변양호)은 임기 만료 전인 2023년 1월 중에 사임하였으며, 2명(박안순, 허용학)은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2023년 중 임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외이사인 김조설 이사의 경우 2022년 3월 제2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2년 임기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이사는 소극적 자격요건과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재임 기간 중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외부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이사의 공통된 소극적 요건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영 제7조, 제8조가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추가적으로 상법 제382조 제3항, 동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소극적 요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내부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이사인 대표이사 회장의 소극적 요건으로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7조에 따른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신규 선임 시 연령은 만67세 미만이어야 하며, 만67세 이상인 대표이사 회장이 연임하여 대표이사 회장이 되는 경우에는 재임기한이 만70세를 넘지 못합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을 적극적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의 요건으로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3항은 비상임이사 후보자 소속 기업이 당사 자회사등과 여신 거래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자회사등의 여신심의위원회 등에서 동 거래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룹 상근직원을 겸직하지 않는 비상임이사의 경우, 사외이사에 준하는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또한 제휴계약 또는 주주간 계약 등에 의한 중요한 지분 관계에 있는 자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소극적 요건으로 정관 제39조 제2항,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 제2항은 그룹 자회사등을 제외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겸직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에 적용되는 적극적 요건으로는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기준을 정관 제39조 제1항,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 제1항에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전문성(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및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직무공정성(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윤리책임성(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충실성(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이 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23일 개최한 제5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지배구조 유지에 기여할 사외이사 인선을 위해 이사회 심의를 통해 사외이사의 수와 전문분야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으며, 상기의 소극적 요건에 더해 추가적인 심의기준으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국적, 성별, 연령, 경력, 배경 및 현임 이사와의 조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신한금융그룹의 비전, 성장경로와 기업문화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회사 성장에 기여할 인사를 선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실효성(業의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업종별 비교우위 요소를 접목하기 위해 경영관리 경험 인사를 균형 있게 선임)을 적용할 것을 명문화하였습니다.

2023년말 현재 이사를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 총11명을 전문성으로 분류(여러 분야에 걸쳐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주된 전문 역량 기준)하면 금융전문가 2명, 경영전문가 1명, 경제전문가 2명, 회계전문가 2명, 법률전문가 3명, 정보기술(IT)전문가 1명입니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핵심 전문성 분야의 전문가들을 망라함은 물론 이사회가 정한 전문성 분야를 추가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별 전문성 분류 (선임순 - 가나다순)>

- 이윤재 대표이사: 경제, 금융, 경영 전문가
- 성재호 사외이사: 법률, 글로벌 전문가
- 윤재원 사외이사: 회계, 경영 전문가
- 진현덕 사외이사: 경영, 글로벌 전문가
- 곽수근 사외이사: 회계, 경영 전문가
- 배훈 사외이사: 법률, 회계, 글로벌 전문가
- 이용국 사외이사: 법률, 금융, 글로벌 전문가
- 최재봉 사외이사: 정보기술(IT) 전문가
- 김조설 사외이사: 경제, 글로벌 전문가
- 정상혁 비상임이사: 금융, 경영 전문가
- 진옥동 사내이사: 금융, 경영, 글로벌 전문가

(2) 구성원

연차보고서 대상기간인 2023년 중 당사 이사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사 이윤재 (이사회 의장 / 사외이사)

이윤재 이사는 제18기 정기주주총회일(2019.3.27)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제23기 정기주주총회일(2024.3월)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2019	CJ프레시웨이 사외이사
2012~2016	부산은행 사외이사
2009~2014	(주)엘지 사외이사
2006~2011	KT&G 사외이사
2006~2007	에쓰오일 사외이사
2000~2005	삼성화재 사외이사
2000~2005	제일은행/SC제일은행 사외이사
2001~2010	코레이(KorEI) 대표
1998~1999	대통령 재정경제비서관
1998	대통령 정책1비서관
1996~1998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
1994~1996	재정경제원 은행보험국장
1994	경제기획원 부총리 비서실장
1991~1994	경제기획원 대외조정실 국장 (통상 담당)
1980~1991	경제기획원 과장 (경제기획국 및 예산실)

이윤재 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제20기 정기주주총회일(2021.3.25)부터 현재까지 당사 이사회와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2019.3월~2020.3월), 회장후보추천위원회(2020.3월~현재), 감사위원회(2019.3월~2022.3월), ESG전략위원회(2019.3월~2021.3월),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2022.3월~현재), 보수위원회(2023.3월~현재)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상기 위원회 활동기간 중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2020.3월~2021.3월), ESG전략위원회 위원장(2019.3월~2021.3월)을 역임하였습니다.

② 이사 성재호 (사외이사)

성재호 이사는 제18기 정기주주총회일(2019.3.27)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제23기 정기주주총회일(2024.3월)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3~현재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원장
2021~현재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2009~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6~2021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회장
2015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자문위원회 위원장
2015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2014	법무부 변호사시험 자문위원
2011~2013	성균관대학교 기획조정처 처장
2009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2009~2010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2009	국제법평론회 회장
2007~2009	성균관대학교 입학처 처장
2005~2007	성균관대학교 학생처 처장
2002~2004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소장
2002~2009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2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1997~2002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1994~1997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1993	미국 Georgetown Law Center 조교수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추천위원회(2019.3월~2021.3월), 회장후보추천위원회(2019.3월~현재), 감사위원회(2019.3월~2023.3월), 보수위원회(2020.3월~2022.3월, 2023.3월~현재), 이사회운영위원회(2019.3월~2020.3월),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2021.3월~현재), 위험관리위원회(2023.3월~현재)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상기 위원회 활동기간 중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추천위원회 위원장(2019.3월~2021.3월),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2021.3월~현재), 보수위원회 위원장(2023.3월~현재)을 역임하였습니다.

③ 이사 윤재원 (사외이사)

윤재원 이사는 제19기 정기주주총회일(2020.3.26)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제23기 정기주주총회일(2024.3월)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4~현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21~현재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원장
2023~현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2023~현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자본시장분과)
2018~현재	한국회계학회 다양성(D&I) 위원장/부회장
2017~현재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2015~현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2018~2023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
2013~2019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06~2009	기획재정부 공기업평가위원
2003~2009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00~2002	한국회계기준원 선임연구원
1999	미국공인회계사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추천위원회(2020.3월~현재), 감사위원회(2020.3월~현재), 보수위원회(2020.3월~2021.3월), ESG전략위원회(2020.3월~현재)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상기 위원회 활동기간 중 감사위원회 위원장(2020.3월~현재)을 역임하였습니다.

④ 이사 진현덕 (사외이사)

진현덕 이사는 제19기 정기주주총회일(2020.3.26)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제23기 정기주주총회일(2024.3월)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6.4~현재	(주)페도라 대표이사
2018.8~현재	일반사단법인 민단 도치기 이사
2017.11~현재	공익사단법인 한국교육재단 평의원

이사회

2014.4~현재 사쿠신가쿠인대학 경영학부 객원교수
2014.4~현재 우츠노미야대학대학원 공학연구과 객원교수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2020.3월~2021.3월, 2023.3월~현재), 회장후보추천위원회(2020.3월~현재)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⑤ 이사 광수근 (사외이사)

광수근 이사는 제20기 정기주주총회일(2021.3.25)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제23기 정기주주총회일(2024.3월)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현재 농어촌상생포럼 초대회장
2019~현재 포스코 기업시민자문위원회 위원장
2019~현재 상장사협의회 지배구조자문위원회 위원장
2018~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2017~2021 롯데지주(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2012~201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장
2011~2012 한국경영학회 회장
2007~2009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 및 경영전문대학원장
2004~2007 금감위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1998~2018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994~1995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초빙교수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감사위원회(2021.3월~현재), ESG전략위원회(2021.3월~현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2021.3월~2022.3월, 2023.3월~현재), 회장후보추천위원회(2022.3월~2023.3월)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상기 위원회 활동기간 중 ESG전략위원회 위원장(2021.3월~현재)을 역임하였습니다.

⑥ 이사 배훈 (사외이사)

배훈 이사는 제20기 정기주주총회일(2021.3.25)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제23기 정기주주총회일(2024.3월)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3~현재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2006~2012 재일한국인변호사협회 이사
2002~2006 재일한국인변호사협회 공동대표
1985 일본 사법시험 합격
1979 일본 공인회계사보 등록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보수위원회(2021.3월~2023.3월), 감사위원회(2022.3월~현재), 회장후보추천위원회(2022.3월~현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2023.3월~현재)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⑦ 이사 이용국 (사외이사)

이용국 이사는 제20기 정기주주총회일(2021.3.25)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제23기 정기주주총회일(2024.3월)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현재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선임고문변호사
2024~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24~현재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겸임교수
2020~202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2015~2017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2014~2019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 이사
2012~2019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서울사무소 대표
1992~2012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홍콩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2021.3월~2022.3월, 2023.3월~현재), 위험관리위원회(2021.3월~현재), 보수위원회(2021.3월~2023.3월), 회장후보추천위원회(2022.3월~현재)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상기 위원회 활동기간 중 보수위원회 위원장(2021.3월~2023.3월),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2023.3월~현재)을 역임하였습니다.

㊸ 이사 최재봉 (사외이사)

최재봉 이사는 제20기 정기주주총회일(2021.3.25)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제23기 정기주주총회일(2024.3월)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현재	성균관대학교 부총장(자연과학캠퍼스) 및 산학협력단 단장
2023~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디지털 혁신협의회 자문위원
2022~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기 심의위원
2022~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디지털소사이터티 최고위원
2009~현재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2019~2020	교육부 미래교육위원회 위원
2018~2019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자문위원
2017~2018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2016~2018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 ICT국제화사업추진위원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2021.3월~현재), 위험관리위원회(2021.3월~현재), ESG전략위원회(2021.3월~2022.3월), 회장후보추천위원회(2022.3월~현재)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상기 위원회 활동기간 중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2022.3월~현재)을 역임하였습니다.

㊹ 이사 김조설 (사외이사)

김조설 이사는 제21기 정기주주총회일(2022.3.24)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제23기 정기주주총회일(2024.3월)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현재	동북아시아학회 상임이사 겸 회장
2020~현재	오사카상업대학 경제학부 교수
2020~현재	신슈대학 명예교수
2021~2022	동북아시아학회 상임이사 겸 부회장
2017~2018	나가노현 인권정책심의회 위원장
2014~2020	신슈대학 학술연구원 사회과학계 교수
2001~2020	신슈대학 경제학부 교수
1996~1997	훗 세필드대학 동아시아연구소 (재외연구)
1992~2001	신슈대학 경제학부 조교수
1988~1992	신슈대학 경제학부 강사
1986~1988	신슈대학 경제학부 조수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2022.3월~현재), ESG전략위원회(2021.3월~2022.3월), 보수위원회(2023.3월~현재)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㉔ 이사 진옥동 (사내이사)

진옥동 이사는 제18기 정기주주총회일(2019.3.27)에 비상임이사로 최초 선임되었으며, 해당 임기는 제22기 정기주주총회일(2023.3.23)에 만료되었습니다. 이어 진옥동 이사는 동일자에 사내이사로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제25기 정기주주총회일(2026.3월)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3.23~현재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회장
2019.3~2022.12.31	신한은행 은행장 (신한금융지주회사 비상임이사 겸임)
2017.3~2018.12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
2017.1~2017.3	신한은행 경영지원그룹 담당 부행장
2015.6~2016.12	SB은행 법인장
2014.1~2015.5	SB은행 부사장
2011.12~2013.12	일본 SH캐피탈 사장
2009.12~2011.12	SB은행 오사카 지점장
2008.3~2009.12	신한은행 오사카 지점장
2004.7~2008.3	신한은행 자금부 팀장

진옥동 이사는 사내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15개 자회사를 보유한 신한금융지주회사의 CEO로서 신한금융그룹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ESG전략위원회(2023.3월~현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2023.3월~현재)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상기 위원회 활동기간 중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2023.3월~현재)을 역임하였습니다.

㉕ 이사 정상혁 (비상임이사)

정상혁 이사는 제22기 정기주주총회일(2023.3.23)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제24기 정기주주총회일(2025.3월)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2~현재	신한은행 은행장
2021.1	신한은행 경영기획그룹장(부행장)
2020.1	신한은행 경영기획그룹장(상무)
2017.01~2019.02	신한은행 성수동기업금융센터 커뮤니티장
2009.12	신한은행 고객만족센터 부장
2007.12~2009.11	신한은행 둔촌동지점장
1990.2	신한은행 입행

정상혁 이사는 신한은행 은행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창립이래 당사는 그룹 전략의 일관성 유지 및 그룹 상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사 이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대 자회사이자 그룹의 중심인 신한은행의 은행장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㉖ 이사 변양호 (사외이사)

변양호 이사는 제18기 정기주주총회일(2019.3.27)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23.3.23이나 2023.1.12부로 자진 사임하였습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현재	VIG파트너스 고문
---------	------------

2011~2015	동양생명보험 기타비상무이사
2005~2016	보고펀드 공동대표
2004~2005	금융정보분석원 원장(1급)
2004	재정경제부 이사관
2002~2004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국장 (이사관)
2001~2002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국장 (부이사관)
2001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심의관
1999~2000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심의관
1998~1999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과장
1997~1998	재정경제원 국제금융담당관
1997	재정경제원 정책조정과 과장
1995~1997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산업경제과 과장
1994	재무부 국민저축과 과장
1993~1994	대통령 비서실 경제비서관실 서기관
1990~1992	국제통화기금(IMF) Senior Economist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2019.3월~2022.3월), 위험관리위원회(2019.3월~2023.1월), 보수위원회(2021.3월~2023.1월), 이사회운영위원회(2019.3월~2020.3월), ESG전략위원회(2019.3월~2021.3월, 2022.3월~2023.1월),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2020.3월~2021.3월) 위원으로서역할을수행하였습니다.

상기위원회활동기간중위험관리위원회위원장(2019.3월~2022.3월)을역임하였습니다.

㉓ 이사 박안순 (사외이사)

박안순 이사는 제16기 정기주주총회(2017.3.23)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2023.3.23에 임기만료 퇴임하였습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현재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의장
2010~현재	일본 대성상사주식회사 회장
2012~2018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부단장
1993~2010	일본 대성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2017.3월~2019.3월, 2022.3월~2023.3월), 이사회운영위원회(2018.3월~2019.3월, 2020.3월~2021.3월), ESG전략위원회(2017.3월~2020.3월),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2019.3월~2023.3월)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㉔ 이사 허용학 (사외이사)

허용학 이사는 제18기 정기주주총회(2019.3.27)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2023.3.23에 임기만료 퇴임하였습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현재	홍콩 First Bridge Strategy Ltd. CEO
2008~2014	HKMA 대체투자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
2004~2008	HSBC 아시아 투자은행 금융기관 IB부문 대표
2003~2004	Olympus Capital Investment LLC 매니징 디렉터
1985~2003	JP Morgan 아시아 M&A 대표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2021.3월~2023.3월), 회장후보추천위원회(2020.3월~2021.3월), 보수위원회(2019.3월~2021.3월), 위험관리위원회(2019.3월~2023.3월),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2019.3월~2021.3월),

2022.3월~2023.3월)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상기 위원회 활동기간 중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2021.3월~2022.3월), 보수위원회 위원장(2019.3월~2021.3월),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2022.3월~2023.3월)을 역임하였습니다.

(3) 요약

성명	구분	직위	경력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재임기간	담당 위원회
이운재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국장(1996~1998) · 대통령비서실 재정경제비서관(1998~1999) · KorDi 대표(2001~2010)	2019.3.27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57개월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성재호	사외이사	회장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위원장	·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원장(2023~현재) ·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2021~현재)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9~현재)	2019.3.27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57개월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윤재원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 미국 공인회계사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2004~현재)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2023~현재)	2020.3.26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45개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ESG전략위원회
진현덕	사외이사		· (주)페도라 대표이사(1986~현재) · 우츠노미야대학 공학연구과 객원교수 (2014~현재) · 사쿠신기쿠인대학 경영학부 객원교수 (2014~현재)	2020.3.26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45개월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곽수근	사외이사	ESG전략위원회 위원장	·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장(2012~2014) ·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1998~2018)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2018~현재) · 포스코 기업시민자문위원회 위원장(2019~현재)	2021.3.25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33개월	ESG전략위원회 감사위원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배 훈	사외이사		· 제일한국인변호사협회 공동대표(2002~2006) ·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2003~현재)	2021.3.25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33개월	감사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이용국	사외이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 Cleary Gottlieb 서울사무소 대표 (2012~2019) · Cleary Gottlieb 선임고문변호사(2024~현재)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24~현재)	2021.3.25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33개월	위험관리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최재봉	사외이사	사외이사및 감사위원후보추천 위원회 위원장	·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2009~현재) · 성균관대 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 (2023~현재)	2021.3.25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33개월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김조설	사외이사		· 신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01~2020) · 오사카상업대 경제학부 교수 (2020~현재)	2022.3.24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21개월	ESG전략위원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진옥동	사내이사	대표이사 회장,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신한은행 부행장(2017) ·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2017~2019) · 신한은행 은행장(2019~2022) ·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회장(2023~현재)	2023.3.23	2026.3월 정기주주총회일	9개월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ESG전략위원회
정상혁	비상임이사		· 신한은행 상무(2020) · 신한은행 부행장(2021) · 신한은행 은행장(2023~현재)	2023.3.23	2025.3월 정기주주총회일	9개월	-
변양호	사외이사		· 금융정보분석원 원장(2004~2005) · VIG파트너스 고문(2016~현재)	2019.3.27	2023.1.12 (사임)	45개월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ESG전략위원회

성명	구분	직위	경력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재임기간	담당 위원회
박안순	사외이사		· 일본 대성상사주식회사 회장(2010~현재) ·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의장 (2018~현재)	2017.3.23	2023.3.23	72개월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추천위원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추천위원회
허용학	사외이사		· HKMA 대체투자부문 CIO(2008~2014) · First Bridge Strategy Ltd. CEO(2015~현재)	2019.3.27	2023.3.23	48개월	위험관리위원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추천위원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추천위원회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23년도에는 총14회의 이사회(정기이사회 분기별 1회 총4회, 임시이사회 총10회)가 개최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99.4% 입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3년 제1회 임시이사회 : 2023.2.8 (수)

[안건통지일 : 2023.2.1(수)]

항목	이사회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윤재	박안순	허용학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곽수근	배훈	이응국	최재봉	김조설	조용병	진옥동	
1. 이사 성명	이윤재	박안순	허용학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곽수근	배훈	이응국	최재봉	김조설	조용병	진옥동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자회사최고경영자후추천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나. 2022년 연간 그룹 사업계획 추진실적	이윤재 이사는 해외투자자들이 ESG활동의 진정성을 지속 확인·요구하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들과의 소통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함													
다. 그룹 재무실적	특이의견 없음													
라. 2022년 하반기 자회사 등 편입 및 제외	특이의견 없음													
마. 원화채권 분기 발행 결과 및 자회사 지원 현황	특이의견 없음													
바.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결과	특이의견 없음													
사. 2022년도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특이의견 없음													
아. 감사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자. 이사회 운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 여부
4. 결의안건															
가. 제22기(2022.1.1~2022.12.31) 재무 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2기 결산배당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이사회내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23년 이사회 구성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이사회사무국 2022년도 업무성과 평가 및 2023년도 목표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 제22기(2022.1.1~2022.12.31) 결산 승인의 건 : '2021년도 결산' 주요 내용으로, 손익의 경우 연결기준 총 4조 6,42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6,230억원 증가한 것으로 주요 요인으로 이자이익의 증가, 일부 자회사의 사옥매각이익 반영, 총당금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외형부문에 있어서는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 증가 등에 따라 약 28조원이 증가한 676조원을 시현하였습니다.

결의-나. 제22기 결산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2022년도 결산에 따른 2022년 12월말 기준 주주 대상 결산배당과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주당 865원의 결산 배당을 포함 연간 주당 배당액 2,065원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안을 승인하였습니다.

결의-다.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 2023 회계연도 주주 환원 계획에 따라 1,5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승인하였습니다.

결의-라. 이사회내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023년 1월 중 변양호 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구성에 있어 정족수에 미달하는 이사회내위원회가 발생하여 해당 위원회 위원을 신규 선임하기 위해 '이사회내위원회 위원 선임'을 결의하였습니다. 선임 대상 위원회는 보수위원회이며, 성재호 이사를 2023년 정기주총일(3.23)까지 임기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수위원회 위원장인 이용국 이사는 주요 안건이 2월과 3월에 많은 보수위원회의 특징을 고려할 때 근래에 보수위원회 위원을 경험하였던 성재호 이사가 적임자라는 추천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결의-마. 2023년 이사회 구성의 건 : 지배구조의 안정성,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 이후 운영될 이사회의 이사 수와 비중(사외/사내/비상임 이사)을 결의하였으며, 이사회 운영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9명의 사외이사와 1명의 대표이사 회장인 사내이사, 1명의 비상임이사로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의-바. 이사회사무국 2022년도 업무성과 평가 및 2023년도 목표 설정의 건 : 2022년도 이사회사무국의 업무성과 목표 달성 수준 및 평가 결과를 확인하여 등급을 확정하고, 2023년도 업무성과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사회사무국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대표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의결권은 제한하였습니다.

보고-가.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 2023년 1월 1일부로 취임한 한용구 신한은행 은행장이 건강 상의 사유로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당사는 긴급히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후임 신한은행장의 인선을 논의·추천하였습니다. 한용구 前은행장의 후임으로는 신한은행의 경영기획그룹, 자금시장그룹의 부행장을 역임한 정상혁 부행장을 후보자로 추천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나. 2022년 연간 그룹 사업계획 추진실적 보고 : 당사는 반기마다 '사업계획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경영계획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각 1회 추진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이행경과를 점검함은 물론, 이를 통해 각 자회사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CEO 전략과제를 평가하고 최종적으로는 보수체계와 연계하여 자회사 차원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윤재 이사는 해외투자자들이 ESG 활동의 진정성을 확인·요구하는 점을 감안하여 소통에 보다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고-사. 2022년 내부통제체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보고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및 당사 그룹내부통제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 2023년 제1회 정기이사회 : 2023.2.28 (화)

[안건통지일 : 2023.2.21(화)]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윤재	박안순	허용학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봉	김조설	조용병	진옥동		
1. 이사 성명	이윤재	박안순	허용학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봉	김조설	조용병	진옥동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 시행 주요 회계기준 보고	곽수근 이사는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이 있는지를 점검하였고, 윤재원 이사는 제도 도입에 따라 보험사별 유불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의 현황을 점검함														
나. 신종자본증권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특이이견 없음														
다. 2022년도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이이견 없음														
라. 2022년도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관리 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특이이견 없음														
마. 2022년도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	특이이견 없음														
바. 2022년도 감사업무 추진 실적	특이이견 없음														
사. 감사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이견 없음														
아.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이견 없음														
자. 보수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이견 없음														
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이견 없음														
카.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이견 없음														
타.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이견 없음														
파. 이사회 운영실적	특이이견 없음														
하. 2022년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업무수행 실적	특이이견 없음														
거. 2022년 4/4분기 그룹사간 고객정보 공유현황 및 점검 결과	특이이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중요 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장기보수 유보 여부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이사회보 적정성 심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사외이사 후보 곽수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사외이사 후보 배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사외이사 후보 성재호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사외이사 후보 윤재원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사외이사 후보 이용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6) 사외이사 후보 이윤재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 여부
4. 결의안건														
(7) 사외이사 후보 진현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8) 사외이사 후보 최재봉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비상임이사 후보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 중요 규정 개정의 건 : 이사회내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권한 명확화 등을 위해 '지배구조내부규범', '이사회규정', '감사위원회규정',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규정', '경영진평가및보수규정'의 일부 개정을 결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을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 기능에 집중하여 심의 및 결의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이에 맞춰 명칭도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보다 유연한 이사회내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정관에 위원회 명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필요시 이사회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내부감사책임자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위임 업무를 명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진 보수와 관련한 명칭을 정비하고 통일하였습니다.

결의-나.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앞서 '중요 규정 개정의 건'을 통해 개정된 이사회내위원회 설치 근거 변경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 변경, 배당기준일을 결산기말에서 배당금액 확정일 이후로 정할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주주총회에 부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결의-다. 2023년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2023년 이사보수한도를 전년보다 5억원 감소한 30억원으로 책정하여 주주총회에 부의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결의-마. 이사회보 적정성 심의의 건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회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경우 본인에 대한 심의는 의결권을 제한하였습니다.

결의-바. 비상임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제22기 정기주주총회에 부의할 비상임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을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습니다.

결의-사.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결산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을 상정하기로 하고 2023년 3월 23일 제2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소집을 결의하였습니다.

보고-가. 2023년 시행 주요 회계기준 보고 : 2023년에 시행되는 주요 회계기준과 관련하여 'IFRS17 도입에 따른 주요 변화와 재무 영향'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특수근 이사는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이 있는지를 점검하였고, 운재원 이사는 제도 도입에 따라 보험사별 유불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의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보고-다. 2022년도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였습니다. 2022년도 중 당사 및 9개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결과 단순 미비점 14건을 발견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동 내용을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결의한 내용을 추가로 이사회에 보고(보고-라)하였습니다.

보고-마. 2022년도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5조 제4항에 의거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수행의 적정성과 효과성 검토·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하. 2022년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수행실적 보고 : 당사는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매년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수행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룹의 개인신용정보관리 및 보호에 관한 컴플라이언스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 2023년 제2회 임시이사회 : 2023.3.23 (목)

[안건통지일 : 2022.3.16(목)]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운재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봉	김조설	진옥동	정상혁	
1. 이사 성명	이운재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봉	김조설	진옥동	정상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대표이사 회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그룹의 성장 및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사회 의 역할이 다대한 상황에서, 신임 대표이사 회장이 취임하는 중요한 시기를 고려하였습니다. 여러 이사들의 의견 수렴과 이사회 의 효율적 운영,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내야 하는 이사회 의장의 역할을 감안할 때 다른 이사들보다 더욱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금융업 전반에 걸친 지식과 업무 이해도가 탁월하고 이사회에서 균형 잡힌 의견을 제시해 줌은 물론 지난 2년간 이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준 이운재 사외이사 가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다수 이사들의 의견에 따라 이운재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재선임하였습니다.

결의-나. 대표이사 회장 선임의 건 : 동일자에 앞서 개최한 제2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3년 임기로 사내이사에 선임된 진옥동 이사를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라) 2023년 제3회 임시이사회 : 2023.3.23 (목)

[안건통지일 : 2022.3.16(목)]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운재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봉	김조설	진옥동	정상혁	
1. 이사 성명	이운재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봉	김조설	진옥동	정상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이견 없음											
가. 감사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이견 없음											
나. 보수위원회 운영실적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전반에 사회적 관심이 높고 금융그룹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경영진 보수체계에 대한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이사회 운영실적	특이이견 없음											
라. 사외이사 제도 운영 관련 보고	특이이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이사회내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이사 보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 이사회내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이사회내위원회 별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이사회 진행 도중에 연석회의로 개최한 각 이사회내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임을 결의하였습니다. 그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괄호는 위원장, 위원장 이후 가나다順)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회후추천위원회 : (최재봉), 김조설, 윤재원, 이용국, 허용학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성재호), 배훈, 이용국, 이운재, 진현덕, 최재봉
- 보수위원회 : (성재호), 곽수근, 김조설, 이운재
- 위험관리위원회 : (이용국), 성재호, 최재봉
- ESG전략위원회 : (곽수근), 김조설, 윤재원, 이용국, 진옥동

-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 (진옥동), 곽수근, 배훈, 성재호, 이윤재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우 동일자에 앞서 개최한 제22기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은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사입니다.

결의-나. 이사 보수 승인의 건 : 당사 보수 정책에 의거하여 대표이사 회장인 사내이사의 기본급 및 연간 성과급 수준을 작년과 동일수준으로 결의하였으며 사외이사의 보수 또한 작년과 동일 수준으로 결의하였습니다.

결의-다.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 : 금융업에 대한 전문지식, 회사 경영과 대외 소통 경험 등을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22기 정기주주총회(2023.3.23)에 임기만료 퇴임한 조용병 前 대표이사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보고-라. 사외이사 제도 운영 관련 보고 :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9조 제7항은 사외이사 관련 기부금 제공 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현황을 확인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마) 2023년 제4회 임시이사회 : 2023.4.27 (목)

[안건통지일 : 2023.4.20(목)]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윤재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봉	김조설	진옥동	정상혁	
1. 이사 성명	이윤재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봉	김조설	진옥동	정상혁	
2. 참석여부 및(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 1분기 재무실적	특이의견 없음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결과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2022 사업년도 그룹사배당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관한 사항	사전에 결정되어 있던 사항이나, 보통주로 전환된 주식과 관련하여 시장에 명확하게 소통해 주길 당부함											
4. 결의안건												
가. 분기배당 실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 분기배당 실시의 건 :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분기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주당 525원의 배당을 통해 총액 2,744억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의-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 FY2023 주주 환원 계획에 따라 1,5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승인하였습니다. 곽수근 이사는 주주환원정책과 관련하여 약속된 부분을 이행하는 것이 좋은 방향성임을 언급하였고, 이윤재 이사는 향후 계획한 일정이 시장과 규제 환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부적 요인의 변화를 지속 관찰하며 투자자들에게 긴밀히 소통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보고-가. 2023년 1분기 결산실적 : 당사는 분기 단위로 결산 실적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별 실적과 손익계산서 주요내역, 재무상태표 주요내역을 포함하여 주요 경영지표를 보고하였습니다.

(바) 2023년 제2회 정기이사회 : 2023.5.11 (목)

[안건통지일 : 2023.5.3(수)]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운재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봉	김조설	진옥동	정상혁		
1. 이사 성명	이운재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봉	김조설	진옥동	정상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승인 결과 및 개선방향 보고	위기의 범위에 우발적 요인들을 포함하는지 점검하고, 향후 모의 훈련 과정에서 이사회역할을 정리하여 준비해줄 것을 당부함												
나. 신종자본증권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특이의견 없음												
다. 원화채권 분기 발행 결과 및 자회사 지원현황	특이의견 없음												
라. 감사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마.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실적	COVID-19 지원 정책의 종료에 따른 연체율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모니터링 할 것을 당부함												
바. ESG전략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사. 보수위원회 운영실적	미국 SEC에서 도입하는 임원 성과보수 조정 및 환수 규정과 관련하여 동 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당사 제도의 개선을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함												
아.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자.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차.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카. 이사회 운영실적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수검 내용을 고려하여 이사회를 비롯한 이사회내위원회의 의사록 작성 기한을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로 규정에 명시하고, 실질적으로 규정에 부합하도록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함												
타. 2023년 1/4분기 그룹시간 고객정보 공유현황 및 점검결과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운영규정 개정의 건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지침 개정의 건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의 건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23년 외화채권 발행한도 설정의 건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운영규정 개정의 건 : 그룹 자체정상화계획의 금융위원회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위기상황 단계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반영하는 등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운영규정'의 개정을 결의하였습니다.

결의-나.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지침 개정의 건 : 신한EZ손해보험이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지침'의 적용 대상 회사에 동사를 추가하기 위해 규정 개정을 결의하였습니다.

결의-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건 : 기존 발행했던 조건부자본증권의 콜옵션 만기 상황이 예정됨에 따라 자본비율 관리 목적으로 5,000억원 규모의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곽수근 이사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상승이 이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적절히 대응해 줄것을 당부하였으며, 이운재 이사는 2008년과 유사한 금융 위기 발생 가능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대응 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습니다.

(사) 2023년 제5회 임시이사회 : 2023.6.19 (월)

[안건통지일 : 2023.6.12(월)]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윤재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봉	김조설	진옥동	정상혁	
1. 이사 성명	이윤재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봉	김조설	진옥동	정상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모의훈련 실시(안)	모의훈련이 비록 생소할 수 있으나, 실제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사회 차원에서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연습이기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당부함.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보고-가.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모의훈련 실시안 : 가상의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통해 자체정상화계획 상 위기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차기 계획에 개선·반영하는 등 자체정상화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아) 2023년 제6회 임시이사회 : 2023.7.27 (목)

[안건통지일 : 2023.7.20(목)]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윤재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봉	김조설	진옥동	정상혁	
1. 이사 성명	이윤재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봉	김조설	진옥동	정상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 2분기 그룹 재무실적	특이의견 없음											
나.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과	특이의견 없음											
다.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결과	특이의견 없음											
라. 2023년 외화채권 발행 결과	특이의견 없음											
마. 2023년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모의훈련 결과 및 수립 방향	특이의견 없음											
바. 2023년 상반기 자회사등 편입 및 제외 내역	특이의견 없음											
사. 2023년 하반기 회사 조직개편안	특이의견 없음											
아. 감사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자.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부동산 PF 현황에 대한 별도 보고가 있었으며 고유자산 뿐만 아니라 고객리자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제안함											
차. 보수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카.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타. 이사회 운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분기배당 실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 분기배당 실시의 건 :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분기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주당 525원의 배당을 통해 총액 2,721억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의-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 2023 회계연도 주주 환원 계획에 따라 1,5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승인하였습니다. 윤재원 이사는 연초 수립했던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에 일부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시장에 명확하게 소통하고 향후 가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자) 2023년 제3회 정기이사회 : 2023.8.10 (목)

[안건통지일 : 2023.8.3(목)]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윤재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봉	김조설	진옥동	정상혁			
1. 이사 성명	이윤재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봉	김조설	진옥동	정상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 하반기 매크로 주요 이슈	특이의견 없음													
나. 2023년 상반기 사업계획 추진실적	특이의견 없음													
다. 원화채권 분기발행 결과 및 자회사 지원 현황	특이의견 없음													
라. 그룹 준법감시인 상반기 내부통제 활동	최근 금융기관의 횡령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횡령사고 예방 활동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 감사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바. ESG전략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사.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아. 이사회 운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자. 2023년 2/4분기 그룹시간 고객정보 공유현황 및 점검 결과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이사회규정 개정의 건	수정 결의	수정 결의	수정 결의	수정 결의	수정 결의	수정 결의	수정 결의	수정 결의	수정 결의	수정 결의	수정 결의	수정 결의	수정 결의	가결

결의-가. 이사회규정 개정의 건 :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사회 의사록 작성기한을 규정에 명시하고자 '이사회규정 개정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회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초안을 작성하여 모든 이사들에게 발송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사회내위원회 의사록 작성 또한 동 기한을 준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이사회 논의 도중 성재호 이사의 제안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결의했으며, 최초 부의 내용 대비 수정된 사항은 개정안의 일부 조항 순서 변경을 통해 개정된 규정이 보다 논리적인 흐름으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차) 2023년 제7회 임시이사회 : 2023.10.6 (금)

[안건통지일 : 2023.9.27(수)]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윤재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봉	김조설	진옥동	정상혁		
1. 이사 성명	이윤재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봉	김조설	진옥동	정상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결과	특이의견 없음												
나. 감사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다.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라.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마. 이사회 운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 여부	
4. 결의안건													
가. 2023년도 그룹 자체정상화계획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원화채권 발행한도 설정 및 일괄신고서 신규 제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 그룹 자체정상화계획(안) 승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그룹 자체정상화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사회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보고-라.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적 : 위원회에서 논의된 인선자문단 운영안과 관련하여 이윤재 이사는 지배구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을 감안해 이사회 구성원 모두와 충분한 소통 및 보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카) 2023년 제8회 임시이사회 : 2023.10.25 (수)

[안건통지일 : 2022.10.11(수)]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윤재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봉	김조설	진옥동	정상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 3분기 그룹 재무실적	유동성 핵심예금이 일부 감소 중인 추세와 관련하여 그 원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문함												
4. 결의안건													
가. 분기배당 실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 분기배당 실시의 건 :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분기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주당 525원의 배당을 통해 총액 2,706억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의-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 FY2023 주주 환원 계획에 따라 1,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승인하였습니다.

(타) 2023년 제4 정기이사회 : 2023.11.9 (목)

[안건통지일 : 2023.11.2(목)]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윤재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봉	김조설	진옥동	정상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원화채권 분기발행 결과 및 자회사 지원 현황	특이의견 없음											
나. 감사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다.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라. 보수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마.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	특이의견 없음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 여부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바.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이건 없음													
사. 이사회 운영실적	특이이건 없음													
아. 2023년 3/4분기 그룹시간 고객정보 공유현황 및 점검 결과	특이이건 없음													
4. 결의안건														
가. 사외이사 평가 일부 변경의 건	수정 결의	수정 결의	수정 결의	수정 결의	수정 결의	수정 결의	수정 결의	수정 결의	수정 결의	수정 결의	수정 결의	수정 결의	수정 결의	가결
나. 경영진 등 보수 관련 규정 제·개정건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 사외이사 평가 일부 변경의 건 :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평가의 기준 및 시기 변경을 결의하였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자기 평가 비중을 폐지(30%→0%)하고 동료 평가(Peer 평가) 비중을 확대(60%→90%)하였으며, 평가 실시의 시기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에 활용하기 위하여 1월 초에 실시하던 것을 변경하여 11월 중순에 실시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이사회 논의 도중 이윤재 이사의 제안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결의했으며, 최초 부의 내용 대비 수정된 사항은 자기 평가 비중을 일부 축소(30%→10%)하려던 원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완전히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결의-나. 경영진 등 보수 관련 규정 제·개정건의 건 : 임원 성과급 환수 관련 뉴욕증권거래소 상장기준 개정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경영진 성과보수 제도 운영을 위해 '뉴욕증권거래소 상장회사 성과보수 환수 규정'을 제정하고, '경영진 평가 및 보수규정'과 'PS운영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발행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현재 회계연도 내에 정정되거나 정정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될 경우 중대한 왜곡표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경영진 및 본부장에 대한 성과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파) 2023년 제9회 임시이사회 : 2023.12.07 (목)

[안건통지일 : 2023.11.28(화)]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윤재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봉	김조설	진옥동	정상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년 회사 조직개편 방안 보고	특이이건 없음												
나. 그룹 포트폴리오 조정 보고	특이이건 없음												
다. 2023년 결산배당 기준일 운영 검토	특이이건 없음												
라. 부실정리계획에 따른 장애요인의 해소조치 결과 보고	특이이건 없음												
마. 그룹 고문 활동 점검결과 보고	특이이건 없음												
바. 사외이사 소속 비영리법인 대상 기부금 제공 보고	특이이건 없음												
사. ESG전략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이건 없음												
아. 보수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이건 없음												
자. 이사회 운영실적	특이이건 없음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 여부
4. 결의안건												
가. 2024년도 그룹 경영계획 및 예산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년도 자회사 자금지원한도 설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가결
라. 2024년도 이사회 구성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 2024년도 그룹 경영계획 및 예산 승인 :2024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회사의 사업계획과 동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계획을 결의하였습니다. 윤재원 이사는 재무계획 중 주주환원 계획과 관련하여 주주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바 분기 배당,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등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주주들이 오해하거나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신중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습니다.

결의-나. 2024년도 자회사 자금지원 한도 설정: 자회사의 영업자금 및 자본확충 지원을 위한 자회사별 연간 자금지원 한도를 결의하였습니다.
 결의-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건 : 당사가 사용 중인 사무공간에 대하여 소유자인 신한은행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건을 결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는 당사의 사무공간에 대한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 관리비 금액과 함께 향후 3년간 계약 갱신을 감안한 임대차계약 한도를 결의하였습니다. 본 건은 상법 제398조에 의한 특별 결의사항으로 계약의 상대방인 신한은행의 은행장을 겸임하는 비상임이사의 의결권은 제한하였으며,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건으로 부의되었습니다.

결의-라. 2024년도 이사회 구성의 건 :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 이후 운영될 이사회의 이사 수와 비중(사외/사내/비상임 이사)을 결의하였으며, 이사회 운영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9명의 사외이사와 1명의 대표이사 회장인 사내이사, 1명의 비상임이사로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보고-가. 2024년 회사 조직개편 방안 보고 : 2024년 그룹 전략방향성을 고려하여 지주회사 역할을 반영한 2024년의 회사 조직체계 개편의 주요 방향성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나. 그룹 포트폴리오 조정 보고 : 신한은행과 신한시의 자산양수도 관련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당사의 자회사 중 하나인 신한시는 향후 자산양수도 방식을 통해 청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자회사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보고-마. 그룹 고문 활동 점검결과 보고 : 2023년 3월 23일 제3회 임시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사의 고문으로 위촉한 조용병 前 대표이사 회장이 은행연합회의 회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고문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이에 고문 활동기간 동안의 경영자문 실적과 회사 정책 및 제도 수립에 대한 기여도를 점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바. 사외이사 소속 비영리법인 대상 기부금 제공 보고 : 사외이사가 소속된 비영리법인에 회사가 기부금을 제공할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한국회계기준원의 국제회계기준재단 재정 지원을 통해 IFRS 제·개정 과정에서 상호 소통 활성화를 기대하여 기부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기부금 제공 대상인 한국회계기준원에는 당사의 사외이사인 윤재원 이사가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 기부 내역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하) 2023년 제10회 임시이사회 : 2023.12.19 (화)

[안건통지일 : 2023.12.12(화)]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윤재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봉	김조설	진옥동	정상혁		
1. 이사 성명	이윤재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봉	김조설	진옥동	정상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나. 감사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다.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라. 보수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마.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바. 이사회 운영실적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이사 아닌 경영진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 이사 아닌 경영진 선임의 건 : 지주회사 조직개편 내용 등을 반영하여 지주회사 경영진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윤재 이사는 지주회사의 임원진 변화에 따른 조직 내부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결의-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건 : 적정 자본비율 관리를 위한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 발행금액은 4,000억원 이내이며 발행 시기는 2024년 중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평가

(1) 이사회 평가

이사회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제8조(이사회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의거 연1회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이사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16년 12월 28일 개최한 제8회 임시이사회에서 결의하고, 2020년 12월 17일 개최한 제11회 임시이사회에서 보완한 아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2023년12월 중 평가를 진행 및 종료하였으며, 현재 이사회 운영 지원 시 해당 결과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가) 평가목적 : 이사회 운영 지원 시 참고자료 활용

(나) 평가주체 : 이사 전원에 의한 평가

(다) 평가기준 : ① 운영평가 : 회의시간의 적정성, 안건의 적정성, 회의 개최빈도의 적정성, 회사의 충분한 정보제공 여부
 ② 역할평가 :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상 명시된 이사회의 권한과 관련한 업무 수행 적정성 평가

(라) 평가방법(절차) : 5점 척도 설문 평가, 평가공정성 및 평가자 익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업체를 통한 평가 실시

- 5등급 (매우 우수, 4.50 이상 5.00 이하) / 4등급 (우수, 3.50 이상 4.50 미만) / 3등급 (보통, 2.50 이상 3.50 미만) / 2등급 (미흡, 1.50 이상 2.50 미만) / 1등급 (매우 미흡, 1.00 이상 1.50 미만)

2023년도 이사회 평가 결과, 이사회 운영 및 역할 수행은 우수한 수준(4등급)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적인 개선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외이사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깊은 토의를 위해 주요 아젠다에 대한 사전검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 줄 것
- 이사회내위원회가 타 전문영역의 실무자들과도 적절한 소통을 할 기회가 필요함
- 사외이사 간담회를 자주 개최하고, 사외이사의 안건 제안 기회를 자주 제공해주기 바람
- 사전설명을 통해 정보 전달의 충실성을 제고하되, 안건에 대한 논의는 이사회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
- 연간 활동계획을 일찍 공유하여 이사진의 일정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이사회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가 리스크 관리임. 어떤 종류의 리스크를 어떤 전문성을 지닌 이사가 담당하여 점검 및 모니터링 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함

2023년도 감사위원회 평가 결과, 운영 및 역할 수행은 우수한 수준(4등급)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적인 개선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적 업무 외 안건의 경우 사전 보고를 적극 활용하여 본 회의에서는 논의, 감독 지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해주기 바람
- IT, 위험관리 등의 전문가 초청 세션(연수)의 도입을 원함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위원회와의 역할 분담, 자회사 감사위원회와의 협의 등 관련 소통의 확대가 필요함

2023년도 보수위원회 평가 결과, 운영 및 역할 수행은 우수한 수준(4등급)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적인 개선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원회 안건을 보다 이른 시기에 제공하여 충분히 사전 습득할 시간을 부여해주기 바람
- 상시적으로 성과평가 및 보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수위원회가 회사의 경영진 평가 및 보상 결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함

2023년도 위험관리위원회 평가 결과, 운영 및 역할 수행은 매우 우수한 수준(5등급)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적인 개선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 동향 및 주요 리스크 현안에 대한 교육이 매우 실효성 있었으며, 위원회 위원들을 위한 교육을 더욱 확대해주기 바람
- 충실한 논의를 위해 위원회의 개최 시간 확대가 필요함

2023년도 ESG전략위원회 평가 결과, 운영 및 역할 수행은 매우 우수한 수준(5등급)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적인 개선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과 일정을 일찍 확정하여 안내해주기 바람
- 충분한 회의 시간을 확보하고, 주요 사안(친환경 정책, 다양성 정책 등)에 대한 회사의 추진 현황에 대해 사전설명 강화가 필요함
- 국내외 ESG 규제 동향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주기 바람

2023년도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평가 결과, 운영 및 역할 수행은 우수한 수준(4등급)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적인 개선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가 아닌 외부의 개입은 지양해야 함
- 외부 추천 채널을 다양화하여 우수한 후보군 발굴을 확대해주기 바람
- 사외이사는 전문 분야에 대한 역량뿐만 아니라 경영 현장에 대한 경험도 중요하므로, 현장 감각을 지닌 후보자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평가 결과, 운영 및 역할 수행은 우수한 수준(4등급)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적인 개선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자들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제공해주기 바람
- 적임자 여부를 사외이사들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판단의 근거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주기 바람

2023년도 회장후보추천위원회 평가 결과, 운영 및 역할 수행은 우수한 수준(4등급)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사회에서 발표, 토론 등을 통해 육성 후보들과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바람
- 현재 시행 중인 회장 후보 추천절차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규정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이사에 대한 평가 기준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임 추천 시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0조에 따라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동 규범 제50조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기준은 5.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 마.사외이사 평가 상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계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며, 회사 등 조직 단위의 업무성과와 연동하여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겸직 비상임이사는 제외)에 대한 평가기준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2023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
Remuneration System



3.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	51
나. 구성	51
다. 선임기준	51
라. 활동내역 및 평가	52
마.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관련사항	54



3. 회장후보추천위원회 (舊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내위원회로 도덕성·신한가치 구현능력·업무전문성·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대표이사 회장으로 추천하기 위해 상시 운영되며,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자격요건 설정·후보군 구성·후보군 관리 및 육성·최종 후보자 자격요건 검증 및 추천 결의 등 대표이사 회장 후보추천에 관한 단계별 사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나. 구성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5~7인의 위원으로 상시 운영하며,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하여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선정하는 최종 회의에는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하도록 함으로써 그룹 경영승계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023.3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성재호	사외	위원장	2022.3.24	2023.3.23
이윤재	사외	위원	2022.3.24	2023.3.23
진현덕	사외	위원	2022.3.24	2023.3.23
곽수근	사외	위원	2022.3.24	2023.3.23
배 훈	사외	위원	2022.3.24	2023.3.23
이용국	사외	위원	2022.3.24	2023.3.23
최재봉	사외	위원	2022.3.24	2023.3.23

<2023.3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성재호	사외	위원장	2023.3.23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이윤재	사외	위원	2023.3.23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진현덕	사외	위원	2023.3.23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배 훈	사외	위원	2023.3.23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이용국	사외	위원	2023.3.23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최재봉	사외	위원	2023.3.23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본 연차보고서 6.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나.대표이사 회장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1)일반-(가)대표이사 회장 자격요건(123페이지) 참조

(2) 후보 추천 절차

본 연차보고서 6.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나.대표이사 회장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1)일반-(나)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123페이지), (다)경영승계절차 개시 사유 및 시기(124페이지), (라)최종후보자 추천절차(124페이지), (마)경영승계절차(124페이지) 참조

(3) 업무수행 평가 방식

당사는 대표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성과와 비재무적인 평가요소 모두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룹KPI, 전략과제 달성도를 일정 비율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무 성과지표로 그룹KPI 항목인 중장기 성장기반 관련 지표(총주주수익률, 그룹고객기반), 수익성 지표(조정ROE, 조정ROA), 건전성 지표(실질고정이익비율), 리스크 관련 지표(RAROC), 효율성 지표(총이익경비율)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비재무 성과지표로는 그룹의 전략방향에 따른 주요 전략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평가체계 결정 및 결과 심의는 보수위원회규정 제6조에 따라 보수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3년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총 4회 개최되었으며,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8개로 결의안건 4개, 보고안건 4개입니다. 결의안건은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3년도 제1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2023.2.28 (목)

[안건통지일 : 2023.2.21 (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성재호	이윤재	진현덕	곽수근	배 훈	이용국	최재봉	
1. 이사 성명	성재호	이윤재	진현덕	곽수근	배 훈	이용국	최재봉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대한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2022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심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3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3년도 제1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7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 되었습니다. 제1호 안건으로 2022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심의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2호 안건으로 2023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의 건을 심의하여, 그룹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을 선정하였습니다.

(나) 2023년도 제2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2023.3.23 (목)

[안건통지일 : 2023.3.16 (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성재호	이윤재	진현덕	배 훈	이용국	최재봉	
1. 이사 성명	성재호	이윤재	진현덕	배 훈	이용국	최재봉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대한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3년도 제2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6명 중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 되었으며,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성재호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 2023년도 제3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2023.5.10 (수)

[안건통지일 : 2023.5.3 (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성재호	이윤재	진현덕	배훈	이용국	최재봉	
1. 이사 성명	성재호	이윤재	진현덕	배훈	이용국	최재봉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3. 보고안건에대한의견	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 및 2023년도 운영 일정						특이 의견 없음
	나. 2022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성과평가 결과						특이 의견 없음
	다. 2023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개발활동 계획 수립						특이 의견 없음
	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개선 검토						특이 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2023년도 제3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성원 되었습니다. 경영진 성과평가 체계 상 제1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이후 확정된 일부 육성후보군의 2022년 성과평가 결과와 2023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의 개발활동 계획,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라) 2023년도 제4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2023.7.27 (목)

[안건통지일 : 2023.7.20 (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성재호	이윤재	진현덕	배훈	이용국	최재봉	
1. 이사 성명	성재호	이윤재	진현덕	배훈	이용국	최재봉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대한의견	(보고 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그룹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3년도 제4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6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 되었으며, 그룹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그룹 경영승계계획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및 이를 반영한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내외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룹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절차가 연간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이 그룹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이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통한 경영의 연속성 확보 및 그룹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3) 평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이사회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의거 연1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평가목적, 주체, 기준, 방법은 본 연차보고서 '2.이사회-라.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평가-(1)이사회 평가상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회장후보추천위원회 평가 결과 위원회의 운영 및 역할 수행 정도는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음

2023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
Remuneration System



4.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	56
나. 구성	56
다. 선임기준	57
라. 활동내역 및 평가	60
마.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	65
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	77
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 관련 사항	79
아.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81



4.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그 역할은 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2조)

위원회의 권한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의 추천,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등입니다.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6조 제1항, 내부규범 제13조 제2항)

또한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사외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0조제1항제2항, 내부규범 제24조제1항제2항)

내부규범 제3조에 명시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 아래 위원회는 외부 법령 또는 내규 상 적극적 자격요건, 소극적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당 그룹의 성장경로와 조직문화의 특수성을 추가 고려하여 당사에 적합한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하고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발굴·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내부규범 제13조 제2항 제3호)

전문 분야별(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정보기술, 글로벌, 소비자보호) 후보군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범위 내 취득 가능한 공개정보의 모니터링 및 외부자문기관의 평판 조회를 통해 후보군의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소극적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규범 제3조에서 규율하는 바와 같이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추천경로(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주주, 외부자문기관 등)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 및 내부규범 제24조 제3항)

또한 사외이사 후보의 관련법령 및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0조 제2항 및 내부규범 제24조 제2항)

더불어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6조 제3항 및 내부규범 제13조 제3항)

추가적으로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관련 검증결과 및 추천내용 적정성을 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결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이사회가 더욱 면밀히 살피도록 규정하여 사외이사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0조 제5항)

마지막으로 감사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회계와 컴플라이언스 업무 감사의 전문성을 위해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분야와 법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 노하우와 전문성을 지닌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1조 제1항)

나. 구성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규정상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3조 제1항, 내부규범 제13조 제1항) 이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를 규정에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5인으로 구성된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단 사외이사 후보의 최종 추천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 절차 개시 시에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이사회가 더욱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로부터 금융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가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3조 제2항, 내부규범 제13조 제1항)

또한 독립성을 충족하는 위원 선임에 위해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되는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재선임이 가능한 사외이사는 최대한 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임기가 만료하지 않는 사외이사, 사임의사를 표명한 사외이사, 추가 재임이 불가능한 사외이사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성상 부득이하게 재선임 사외이사가 포함된 경우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대한 의결권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7조 제2항, 내부규범 제13조 제4항)

또한 금융경력, 전문성, 대표성을 충족하는 위원을 선임하면서도 위원회의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 2020년 3월 회계·경영 분야 전문가인 윤재원 이사를 선임하였고, 2021년 3월 정보기술(IT) 전문가인 최재봉 이사, 2022년 3월 경제 전문가인 김조설 이사, 2023년 3월에는 경영 전문가인 진현덕 이사 및 법률 전문가인 이용국 이사를 새롭게 위원으로 선임하여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3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최재봉	사외	위원장	2022.3.24	2023.3.23
김조설	사외	위원	2022.3.24	2023.3.23
박안순	사외	위원	2022.3.24	2023.3.23
윤재원	사외	위원	2022.3.24	2023.3.23
허용학	사외	위원	2022.3.24	2023.3.23

(단, 사외이사 후보의 최종 추천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 절차 개시 시,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

<2023.3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최재봉	사외	위원장	2023.3.23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김조설	사외	위원	2023.3.23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윤재원	사외	위원	2023.3.23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이용국	사외	위원	2023.3.23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진현덕	사외	위원	2023.3.23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단, 사외이사 후보의 최종 추천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 절차 개시 시,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소극적 요건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상법 제382조 제3항 (주식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상장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임원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 제2항 다른 회사 사외이사 겸직여부,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6조 제4항 사외이사 임기제한을 검증하였습니다.

당사 정관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글로벌 등 관련분야의 충분한 실무경험과 지식 보유 등

관련된 전문성 여부와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여부를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추고 그룹의 창업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규정에 더해 2018년 1월 15일 개최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사외이사 후보 선임원칙을 수립하였고, 2019년 8월 23일 개최한 제5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선임원칙 및 후보군 관리기준을 보완하였으며, 2020년 11월 13일 개최한 제6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상기 8대 전문성 외에 조직관리 경험이 풍부한 HR분야 및 기술전략 분야의 전문가를 새롭게 후보군에 편입하는 등 사외이사 후보군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 11월 18일에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보유한 여성 사외이사 후보를 다수 후보군에 신규 편입하였으며, 2021년 12월 16일 제7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특정 정치성향이 확인되거나 의심이 되는 후보는 위원회에서 별도 후보군 제외에 대해 추가 심의할 것과 그룹사 사외이사 경력자 후보에 대한 자격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1일 개최한 제6차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1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된 김조설 이사를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타기업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등 당사 후보군 관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군을 추가로 제외 또는 별도후보군에 신규 편입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11월과 12월에 개최한 위원회에서는 직전 상시후보군 대비 상대적으로 후보 감소폭이 컸던 '경영·경제' 분야의 후보군을 강화하고, '글로벌'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후보를 추가로 총원함으로써 8대 전문분야에 걸친 다양한 후보군을 총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5차례에 걸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결의하였으며 급변하는 외부 환경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현장 경험 보유 전문가와 리스크관리 전문가를 후보에 대폭 총원하였습니다.

우선 이사회가 이사회 구성(안) 결의를 통해 새로이 선임할 사외이사의 수와 전문분야 등을 정하면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상시적으로 관리 중인 후보군(Long list) 중에서 이사회 결의 내용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과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인사를 선별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총론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기존의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을 준용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사외이사는 국적, 성별, 연령, 경험, 배경, 추천 경로 및 현임 이사와의 조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신한금융의 비전, 성장경로와 기업문화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회사 성장에 기여할 인사를 선임), 경영자문의 실효성(業의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업종별 비교우위 요소를 접목하기 위해 경영관리 경험 인사를 균형 있게 선임)의 3가지 심의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성' 및 '다양성' 상세 기준을 마련하여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시 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문성' 관련 예시로 금융 분야는 금융회사에서 경영진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법인에서 재무 관련 업무를 경영진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금융 관련 정부/공공기관/감독기관/유관단체 및 협회에서 금융, 재무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정책입안, 관리,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보유한 자에 한해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성' 기준으로 양성 기회 평등의 원칙을 반영하여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중 최소 20% 이상은 여성 후보군으로 마련해야 하며,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오랜 경륜에 기반한 효과적인 자문 기능 견비를 위해 대표이사 연령을 기준으로 ±15세 수준의 다양한 연령대의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회장후보추천위원회(당사 이사회)에서 수립한 '이사의 독립성'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시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사 독립성 가이드라인'과 앞서 기재한 '이사회 다양성 가이드라인'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위해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의 의미와 후보 추천 경로(사감추위, 사감추위 위원, 주주 추천, 외부자문기관 추천)를 명확히 정의하고 ① 정기적인 외부자문기관 의뢰 통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접수 및 검증, ② 신한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특수성 반영, ③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안정성 유지, ④ 그룹 경영전략과 연계한 후보군 관리, ⑤ Gender 다양성 강화 위한 여성 후보자 및 전문분야별 실무 경험 보유자 우대, ⑥ 사외이사 선임원칙 및 자격요건 고려하여 후보군 지속 모니터링의 6가지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명시된 요건 외에 그리고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수립한 자체 심의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준법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법률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 후보 추천 절차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후보추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와 관련된 주요 규정 및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 추천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0조 제1항, 내부규범 제24조 제1항)
 -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 내부규범 제24조 제3항)
 -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의 우수성 입증 필요하며, 후보 추천서에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검토보고서 첨부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0조 제3항 및 제7항, 내부규범 제24조 제4항)
 - 사외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 추천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0조 제2항, 내부규범 제24조 제2항)
 - 상기 사항이 검증된 자 중에서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인선한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확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0조 제4항)
 - 상기 사항과 관련한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활동과 사외이사 후보의 검증결과 및 추천내용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부의하여 심의결의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0조 제5항)
 -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안내한다.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0조 제8항, 내부규범 제25조)
1. 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4. 사외이사 후보자와 회사 및 자회사등,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5. 관련법령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0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7.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8. 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이러한 내부 규정에 더해 2018년 1월 15일 개최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우선 신규 사외이사 선임 시 기존의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예비후보 추천-최종후보 추천의 3단계 추천 절차를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결선 후보군(Short list)-예비후보 추천-최종후보 추천의 4단계 절차로 확장하여 보다 심층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사외이사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유한 사외이사 후보 검증 강화를 위해 전체 후보자(Long list)에 대해 외부자문기관 평판 조사를 실시하여 검증 자료를 사전에 마련하고, 이사회가 다양성 핵심원칙 및 교체대상 사외이사 인원을 고려하여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면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Board Skill Matrix 검증을 통해 이사회 결의를 충족하는 신규 선임할 사외이사 수와 전문 분야를 선정하고, 각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해당 전문분야 Long list를 대상으로 검증자료를 통해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인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요건 부합여부를 평가한 후, 무기명 투표를 통한 다득표 順 또는 위원간 논의 및 호선을 통해 최종후보의 최소 3배수에서 최대 5배수로 Short list를 선정합니다. 이후 Short list를 대상으로 다시금 Long list 평판 조차 외부자문기관이 아닌 별도 외부자문기관 평판 조차를 추가로 실시하여 보다 면밀한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선임원칙 및 자격요건 부합여부를 심층 검증하고 무기명 투표를 통한 다득표 順 또는 위원간 논의 및 호선을 통해 예비후보를 선정합니다. 끝으로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선임 수락의사 확인, 결격요건 해당 여부를 정밀 검증한 후 최종후보로 추천하여 주주총회를 거쳐 사외이사로 선임하게 됩니다.

2023년에는 한층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 운영을 위해 11월 9일 개최한 제8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인선자문단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은 ①사외이사 신규 선임 후보 추천 프로세스에서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을 결선 후보군(Short-list)으로 압축하기 전, 자문위원 간 총의를 모아 별도 압축한 자문단 후보군을 위원회에 제안하고 ②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후보의 재선임 추천 프로세스에서 재선임 추천 여부 의견을 동 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③또한, 익년도 이후 사외이사 선임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선자문단 제도 도입을 통해 기존의 4단계에서 5단계로 추천 절차가 추가되면서 외부의 시각으로 후보군을 한번 더 검증하게 되어, 당사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를 한 단계 고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2023년 11월 9일 개최한 제8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2024년 사외이사 후보 선임 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 시작 전 논의 해왔던 내용을 2023년부터는 별도 결의로 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방향성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 사외이사 후보 선임 원칙」은 ①젠더 다양성을 확보한다. ②이사회회의의 집합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후보를 추천한다. ③이사회 전문성의 재임경력(tenure) 및 법적 임기 만료를 고려하여 후보 추천을 한다, 이며,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Board Skill Matrix를 점검하고 그 간 논의를 반영하여 수립되었습니다. 후보 선임 원칙이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위원 후보 추천 시에는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 후보를 대상으로 감사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과 감사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업무수행 평가 방식

당사는 2022년 12월 ~ 2023년 1월 중,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자(평가주체)가 본인, 다른 사외이사, 직원(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 이루어진 다면평가 방식이며, 평가항목은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의 4가지 대항목 별 3개의 하위 설문 형태로 진행되고 별도의 주관식 설문으로 심층적인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진행 및 결과 취합 등 전 과정은 평가의 공정성, 평가자 익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평가기관'이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평가 시 우편방식 평가와 온라인 평가를 병행하여 편의를 증대하였습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당사는 다양한 전문가로 사외이사를 구성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주주, 외부자문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사외이사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2023년 중 총 9차례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3년 제1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3.2.8 (수)

[안건통지일 : 2023.2.1(수)]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여부
	최재봉	박안순	허용학	윤재원	김조설	
1. 이사 성명	최재봉	박안순	허용학	윤재원	김조설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프로세스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2022년도 사외이사 평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국내 금융지주회사 및 대기업 사외이사 보상 수준 검토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가.2023년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프로세스 보고 : 2023년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일정 및 절차를 안내하고 위원 전원의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보고-나.2022년도 사외이사 평가 결과 보고 : 2022년 중 사외이사 활동내역을 기반으로 한 평가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보고-다.국내 금융지주회사 및 대기업 사외이사 보상 수준 검토 보고 :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의 영입을 위한 이사회의 건전한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타금융지주회사 또는 대기업의 사외이사 보상 수준 조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결의-가.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 2023년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상시후보군(Long list)을 확정하였습니다.

(나) 2023년 제2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3.2.22 (수)

[안건통지일 : 2023.2.13(월)]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여부
	최재봉	박안순	허용학	윤재원	김조설	
1. 이사 성명	최재봉	박안순	허용학	윤재원	김조설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 감사위원 후보 자격요건 및 추천 프로세스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찬성 (본인 추천 안건 의결권 제외)	찬성	찬성	찬성 (본인 추천 안건 의결권 제외)	찬성	가결

보고-가.2023년 감사위원 후보의 자격요건 및 추천 프로세스 보고 : 2023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분리선임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위원 전원의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결의-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 중 사외이사를 표시한 허용학 이사를 제외한 후보들에 대한 위원회의 추천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2023년 제3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3.2.28 (화)

[안건통지일 : 2023.2.21(화)]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재봉	박안순	허용학	윤재원	김조설	곽수근	배훈	성재호	이용국	이윤재	진현덕	
1. 이사 성명	최재봉	박안순	허용학	윤재원	김조설	곽수근	배훈	성재호	이용국	이윤재	진현덕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본인 추천 안건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찬성 (본인 추천 안건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본인 추천 안건 의결권 제한)	찬성 (본인 추천 안건 의결권 제한)	찬성 (본인 추천 안건 의결권 제한)	찬성 (본인 추천 안건 의결권 제한)	찬성 (본인 추천 안건 의결권 제한)	찬성 (본인 추천 안건 의결권 제한)	가결
다.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본인 추천 안건 의결권 제한)	찬성 (본인 추천 안건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2023년 3월 23일 개최될 제22기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할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추천하였습니다.

결의-나.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제2회 사감추위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 제22기 정기주주총회에 부의할 재선임 사외이사 후보를 확정하였습니다.

결의-다.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 2023년 제22기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할 감사위원 후보에 대해 추천하였습니다.

(라) 2023년 제4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3.3.23 (목)

[안건통지일 : 생략 (위원 전원 동의하여 당일 긴급소집 및 개최)]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최재봉	김조설	윤재원	이용국	진현덕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동일자에 개최한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새로운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작년 한 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며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양질의 사외이사 후보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제언을 했던 최재봉 이사를 작년에 이어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마) 2023년 제5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3.5.11 (목)

[안건통지일 : 2023.5.4(목)]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최재봉	김조설	윤재원	이용국	진현덕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 및 2023년도 운영 일정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가.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 및 2023년도 운영 일정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주요 역할을 안내하고 2023년도 운영 일정에 대해 위원 전원의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결의-가.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 제1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확정한 사외이사 후보군 중, 당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심의기준의 충족 여부를 다시 점검하여 제2차 상시 후보군을 확정하고, 동일자에 개최한 제2회 정기이사회에 후보군 관리내역을 보고하였습니다.

(바) 2023년 제6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3.8.10 (목)

[안건통지일 : 2023.8.3(목)]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최재봉	김조설	윤재원	이용국	진현덕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개선 방향성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가.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개선 방향 : 실질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성과 창출 및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외이사 후보 선정 프로세스 신설에 대해 위원 전원의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결의-가.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 제5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논의를 반영하여 금융회사 현업에 실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금융분야 전문가와 여성 금융인 출신 후보를 후보군에 보강하는 등 제3차 상시 후보군을 확정하고, 동일자에 개최한 제3회 정기이사회에 후보군 관리내역을 보고하였습니다.

(사) 2023년 제7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3.10.6 (금)

[안건통지일 : 2023.9.27(수)]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최재봉	김조설	윤재원	이용국	진현덕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인선자문단 운영(안)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가.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인선자문단 운영(안):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객관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인선자문단의 신설운영 방안에 대해 위원 전원의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결의-가.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 제6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확정된 후보에 여성 또는 경영인 출신 후보를 추가하여 제4차 상시 후보군을 확정하고, 동일자에 개최한 제7회 임시이사회에 후보군 관리내역을 보고하였습니다.

(아) 2023년 제8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3.11.9 (목)

[안건통지일 : 2023.11.2(목)]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최재봉	김조설	윤재원	이용국	진현덕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2024년 사외이사 후보 선임 원칙 수립의 건	수정결의	수정결의	수정결의	수정결의	수정결의	가결
나.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인선자문단 운영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가.2024년 사외이사 후보 선임 원칙 수립의 건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프로세스의 투명성,객관성과 이사회에의 집합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4년 사외이사 후보 선임 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결의-나.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인선자문단 운영의 건 : 제7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던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인선자문단」을 신설하여 운영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자) 2023년 제9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3.12.19 (화)

[안건통지일 : 2023.12.12(목)]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여부	
	최재봉	김조설	윤재원	이용국	진현덕		
1. 이사 성명	최재봉	김조설	윤재원	이용국	진현덕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찬성	가결

결의-가.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 제7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확정된 후보군에 금융회사의 경영실무 경험이 있는 후보를 보완하여 상시적인 후보군을 재정비하여 제5차 상시 후보군을 확정하고 동일자에 개최한 제10회 임시이사회에 후보군 관리내역을 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일정 및 진행 절차에 대해 사전 안내하였습니다.

(3) 평가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 (이사회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의거 연1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평가목적, 주제, 기준, 방법은 본 연차보고서 2.이사회-라.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평가-(1)이사회 평가 상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평가 결과 위원회의 운영 및 역할 수행 정도는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

1. 이윤재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 ① 출생연도 : 1950년
- ② 출신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美 스탠포드대 경영대학원 석사(MBA)

나. 후보자 경력

- 前 코레이(KorEI) 대표
- 前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 前 대통령 재정경제비서관 (관리관)
- 前 대통령 정책1비서관
- 前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
- 前 재정경제원 은행보험국장
- 前 경제기획원 부총리 비서실장
- 前 경제기획원 대외조정실 국장(통상 담당)
- 前 경제기획원 과장(경제기획국 및 예산실)
- 제11회 행정고시 합격

다. 당사 사외이사 경력

- ① 근무기간 : 2019.3.27~현재(2023년 2월 후보 추천에 따라 2022년 말 기준, 이하 동일)
- ② 근무기간 중 출석률 :
 - 이사회 총52회 중 52회 참석 (참석률: 100%)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13회 중 13회 참석 (참석률: 100%)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총16회 중 16회 참석 (참석률: 100%)
 - 감사위원회 총41회 중 41회 참석(참석률: 100%)
 - ESG전략위원회 총14회 중 14회 참석 (참석률: 100%)
 -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총 18회 중 18회 참석 (참석률: 100%)

라. 후보제안자¹⁾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1) 인적사항	허용학(위원장) : 現 홍콩 First Bridge Strategy Ltd. CEO 윤재원 : 現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용국 :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최경록 : 現 (주)CYS 대표이사 최재봉 : 現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2) 후보자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추천 이유	후보자는 오랜기간 금융·재무 관련 정부기관에서의 공직생활과 더불어 국내 우수 기업의 사외이사 재직 경험을 토대로 민·관을 아우르는 폭 넓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탁월하여 경영진의 의사 결정이 특정 관점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의견을 제시하는 등 그룹의 경영과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고도의 윤리의식과 금융·경제·재무 등의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해주었으며, 모든 안건에 세심한 준비를 통해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내 상충되는 의견을 균형 있게 조정하였으며, 전문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뚜렷한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사회 간담회를 활성화하는 등 이사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운영 또한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후보자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일정에 전체 출석하고 교육 전반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였으며 투자자와의 미팅에도 적극 참여하여 당사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내역 및 ESG, 지배구조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등 이사회 의장 및 사외이사로서 충실하게 활동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외이사및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의 총의를 모아 재선임 추천하였습니다.

마.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임원과 관계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 및 추가 검증기준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전문성)	충족	경제·금융·경영 전문가, 지배구조법상 회계/재무 전문가 (경제·금융 담당 정부기관 고위공무원, 전문경영인)
나)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직무공정성)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후보자 겸직사실 없어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 3호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유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하였으며 관련 법상 자격요건 충족하고, 선임 이후 겸직사실 변동 없으며, 이사회 등 출석률 감안 시 충실성 입증함
마) 사추위 추가 검증기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충족	정부기관 근무, 민간회사 임원 경험 보유
바) 사추위 추가 검증기준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충족	전문경영인 및 사외이사 경험 풍부하여 기업문화 이해도 높음
사) 사추위 추가 검증기준 (경영자문의 실효성)	충족	풍부한 경제·금융 정책 수행 경험 및 사외이사 경험 보유하여 효과적 경영자문 가능

사. 사외이사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제출)
2) 적극적 요건 충족	적극적 요건 충족함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
3) 현재 겸직 업무	겸직사항 없음

아.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10명 찬성으로 가결 - 위원장 최재봉 : 찬성 - 위원 곽수근 : 찬성 - 위원 김조설 : 찬성 - 위원 박안순 : 찬성 - 위원 배 훈 : 찬성 - 위원 성재호 : 찬성 - 위원 윤재원 : 찬성 - 위원 이용국 : 찬성 - 위원 이윤재 : 의결권 제한 (내규에 의거,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안건에서는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 - 위원 진현덕 : 찬성 - 위원 허용학 : 찬성

1) 최초 선임시 후보제안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IMM PE)가 추천하고 舊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심의 후 최종 후보 추천 / 연임시 후보제안자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2. 성 재 호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출생연도 : 1960년 ② 출신학교 : 성균관대학교 법학 학사/석사/박사

나. 후보자 경력

- 現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원장 -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現 세계국제법협회 한국회장 - 前 성균관대학교 기획조정처/입학처/학생처 처장 - 前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소장 - 前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前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자문위원회 위원장 - 前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 前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 前 국제법평론회 회장 - 前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前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다. 당사 사외이사 경력

① 근무기간 : 2019.3.27~현재 ② 근무기간 중 출석률: - 이사회 총52회 중 52회 참석 (참석률: 100%)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총15회 중 15회 참석 (참석률: 100%)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총23회 중 23회 참석 (참석률: 100%) - 감사위원회 총51회 중 50회 참석(참석률: 98%) - 이사회운영위원회 총5회 중 5회 참석 (참석률: 100%) - 보수위원회 총8회 중 8회 참석 (참석률: 100%) -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총 10회 중 10회 참석 (참석률: 100%) - 위험관리위원회 총 7회 중 7회 참석 (참석률: 100%)
--

라. 후보제안자¹⁾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1) 인적사항	허용학(위원장) : 現 홍콩 First Bridge Strategy Ltd. CEO 윤재원 : 現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용국 :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경록 : 現 (주)CYS 대표이사 최재봉 : 現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2) 후보자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추천 이유	<p>후보자는 국제법 전공 교수로서 법률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사 객관적인 시각과 균형 감각을 견지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그룹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체계 유지 및 투명한 경영 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평소 사교적이고 온화한 인품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당사의 크고 작은 경영 전략에 있어서 유효한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전반적인 주요 계약사항 및 규정의 제개정에 있어서도 법률 전문가로서 예리하게 이슈 사항을 점검하고 논리적인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외 주력 자회사인 신한카드 사외이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그룹의 비전과 성장 경로,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창업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투자자와의 미팅에도 적극 참여하여 당사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내역 및 ESG, 지배구조에 대해 전달하는 등 그룹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핵심 사안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충실하게 활동한 것으로 평가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속해서 그룹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및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의 총의를 모아 재선임 추천하였습니다.</p>
----------	--

마.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 및 추가 검증기준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전문성)	충족	법률 전문가 (법학 교수)
나)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직무공정성)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후보자 재직 중인 성균관대학교와 당사 등 거래관계 적정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 3호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양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하였으며 관련 법상 자격요건 충족하고, 선임 이후 겸직사실 변동 없으며, 이사회 등 출석률 감안 시 충실성 입증함
마) 사추위 추가 검증기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충족	법학 교수 경력과 다양한 학회활동 및 정부기관 자문위원 경험등 보유
바) 사추위 추가 검증기준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충족	신한금융그룹 자회사 사외이사 재직 경험 보유, 타사 사외이사 경험 풍부하여 기업문화 이해도 높음
사) 사추위 추가 검증기준 (경영자문의 실효성)	충족	법학 교수, 사외이사 경력 보유하여 효과적 경영자문 가능

사. 사외이사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제출)
2) 적극적 요건 충족	적극적 요건 충족함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
3) 현재 겸직 업무	겸직사항 없음

아.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p>재적위원 11명 중 10명 찬성으로 가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최재봉 : 찬성 - 위원 박수근 : 찬성 - 위원 김조설 : 찬성 - 위원 박안순 : 찬성 - 위원 배 훈 : 찬성 - 위원 성재호 : 의결권 제한 (내규에 의거,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안건에서는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 - 위원 윤재원 : 찬성 - 위원 이용국 : 찬성 - 위원 이윤재 : 찬성 - 위원 진현덕 : 찬성 - 위원 허용학 : 찬성

1) 최초 선임시 후보제안자: 舊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무기명 투표 결과 반영하여 후보 추천 / 연임시 후보제안자: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3. 진 현덕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 ① 출생연도 : 1955년
- ② 출신학교 : 日 추오대학 법학과 - 日 게이오기주쿠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나. 후보자 경력

- 現 (주)페도라 대표이사
- 現 사쿠신가쿠인대학교 경영학부 객원교수
- 現 우츠노미야대학대학원 공학부 객원교수
- 現 공익사단법인 한국교육재단 평의원
- 前 토치기현 한국청년상공회의소 회장

다. 당사 사외이사 경력

- ① 근무기간 : 2020.3.26~현재
- ② 근무기간 중 출석률:
 - 이사회 총39회 중 37회 참석 (참석률: 94.8%)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총8회 중 8회 참석 (참석률: 100%)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총16회 중 16회 참석 (참석률: 100%)

라. 후보제안자¹⁾: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1) 인적사항	최재봉(위원장) : 現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김조설 : 現 오사카상업대학 경제학부 교수 박안순 : 現 대성상사주식회사 회장 윤재원 : 現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허용학 : 現 First Bridge Strategy Ltd. CEO
2) 후보자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추천 이유	후보자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장기간 기업을 운영하며 체득한 통찰력, 문제해결 능력과 경영학 교수로서 정립한 경영학 이론을 바탕으로 그룹의 주요 안건과 관련하여 글로벌 기업의 경영 전략 및 최신 경영 우수 사례들을 이사회에 공유하는 등 그룹의 효과적인 경영 및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단기적 수익과 목표에 매몰되지 않고 확고한 기업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금융업의 틀을 깨는 미래 지향적인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그룹의 중장기 전략을 위해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이사회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재직함과 동시에 교육재단 활동을 병행하는 등 개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소명의식이 투철하여 특정 이해 집단에 구애됨 없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COVID-19로 인해 국가간 이동 제한 등으로 회의 참석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대면 참석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경영자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자·연구자로서 체득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이사회에 아낌없이 공유하는 등 이사회 논의에 깊이를 더해준 것으로 평가되어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 위원회의 총의를 모아 재선임 추천하였습니다.

마.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 및 추가 검증기준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전문성)	충족	경영·글로벌 전문가 (전문경영인, 경영학 교수, 해외기업)
나)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직무공정성)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가능, 후보자가 재직 중인 기업과 당사 등과의 거래관계 없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 3호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유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가능
마) 사추위 추가 검증기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충족	주주 추천, 경영학 교수 및 일반기업 경영 경험 보유
바) 사추위 추가 검증기준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충족	전문경영인으로서 기업문화 이해도 높을 것으로 기대
사) 사추위 추가 검증기준 (경영자문의 실효성)	충족	경영학 교수 및 일반기업 경영 경험 보유하여 효과적 경영자문 가능할 것으로 기대

사. 사외이사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제출)
2) 적극적 요건 충족	적극적 요건 충족함 (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3) 현재 겸직 업무	겸직사항 없음

아.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적위원 11명 중 10명 찬성으로 가결 - 위원장 최재봉 : 찬성 - 위원곽수근 : 찬성 - 위원 김조설 : 찬성 - 위원 박안순 : 찬성 - 위원 배 훈 : 찬성 - 위원 성재호 : 찬성 - 위원 윤재원 : 찬성 - 위원 이용국 : 찬성 - 위원 이운재 : 찬성 - 위원 진현덕 : 의결권 제한 (내규에 의거,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안건에서는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 - 위원 허용학 : 찬성
--

1) 최초 선임시 후보제안자 : 舊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무기명 투표 결과 반영하여 후보 추천 / 연임시 후보제안자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4. 배 훈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출생연도 : 1953년
② 출신학교 : 日 교토대학교 경제학부 - 日 고베대학교 MBA - 日 교토대학교 법과연구과 박사 과정

나. 후보자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일본 소재, 이하 경력 동일) - 前 재일한국인변호사협회 공동대표 / 이사 - 日 공인회계사보 / 변호사
--

다. 당사 사외이사 경력

- ① 근무기간 : 2021.3.25~현재
- ② 근무기간 중 출석률:
 - 이사회 총24회 중 24회 참석 (참석률: 100%)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총2회 중 2회 참석 (참석률: 100%)
 - 감사위원회의 총10회 중 10회 참석(참석률: 100%)
 - 보수위원회 총6회 중 6회 참석 (참석률: 100%)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총7회 중 7회 참석 (참석률: 100%)

라. 후보제안자¹⁾: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1) 인적사항	최재봉(위원장) : 現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김조설 : 現 오사카상업대학 경제학부 교수 박안순 : 現 대상상사주식회사 회장 윤재원 : 現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허용학 : 現 First Bridge Strategy Ltd. CEO
2) 후보자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추천 이유	후보자는 재일한국인 변호사로 한일관계의 기업 법무 자문을 특기로 하고 있으며, 또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이수한 일본 공인회계사로서 기업의 채권회수, 회생 등 다방면에 걸친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 법률·회계·글로벌 분야 전문가입니다. 후보자는 법률 및 회계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토대로 경영진 감시·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평소 변호사로 재직하며 체득한 합리적인 판단력을 바탕으로 그룹의 주요 경영사안에 대한 법적 쟁점과 세부 조항에 대한 검토 의견을 개진하고, 다양한 해외 기업의 지배구조 및 금융정책 사례들을 이사회 내 공유하는 등 금융의 건전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그룹 경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매사 탁월한 균형감각으로 일방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사외이사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되었으며, 아울러 COVID-19로 인해 국가간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체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출석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면 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되었기에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총의를 모아 재선임 추천 하였습니다.

마.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을 제5조 제1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을 제6조 제1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 및 추가 검증기준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전문성)	충족	법률·회계·글로벌 전문가 (日 변호사, 공인회계사보)
나)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직무공정성)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가능 후보자가 재직 중인 기업과 당사 등과의 거래관계 없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 3호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유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가능
마) 사추위 추가 검증기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충족	주주 추천, 日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보 경력 보유
바) 사추위 추가 검증기준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충족	법학/경영학에 조예가 깊고 기업 법률 자문에 전문성 보유하여 기업문화 이해도 높을 것으로 기대
사) 사추위 추가 검증기준 (경영자문의 실효성)	충족	경영학 석사 학위, 기업 법률 자문에 전문성 보유하여 효과적 경영자문 가능할 것으로 기대

사. 사외이사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제출)
2) 적극적 요건 충족	적극적 요건 충족함(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3) 현재 겸직 업무	겸직사항 없음

아.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10명 찬성으로 가결 - 위원장 최재봉 : 찬성 - 위원 곽수근 : 찬성 - 위원 김조설 : 찬성 - 위원 박안순 : 찬성 - 위원 배 훈 : 의결권 제한 (내규에 의거,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안건에서는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 - 위원 성재호 : 찬성 - 위원 윤재원 : 찬성 - 위원 이용국 : 찬성 - 위원 이윤재 : 찬성 - 위원 진현덕 : 찬성 - 위원 허용학 : 찬성

1) 최초 선임시 후보제안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간 논의로 총의를 모아 후보 추천 / 연임시 후보제안자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5. 곽수근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출생연도 : 1953년 ② 출신학교 : 서울대학교 경영학 - 美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경영학 박사
--

나. 후보자 경력

- 現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 現 포스코 기업시민자문위원회 위원장 - 現 상장사협의회 지배구조자문위 위원장 - 前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경영대학장 / 경영전문대학원장 - 前 롯데지주(주) 사외이사/감사위원장 - 前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장 - 前 한국경영학회 회장 - 前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다. 당사 사외이사 경력

① 근무기간 : 2021.3.25~현재 ② 근무기간 중 출석률: - 이사회 총24회 중 24회 참석 (참석률: 100%)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총2회 중 2회 참석 (참석률: 100%) - 감사위원회 총22회 중 21회 참석(참석률: 95.5%) - ESG전략위원회 총8회 중 8회 참석 (참석률: 100%)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총7회 중 7회 참석 (참석률: 100%) -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총 6회 중 5회 참석 (참석률: 83.3%)
--

라. 후보제안자¹⁾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1) 인적사항	최재봉(위원장) : 現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김조설 : 現 오사카상업대학 경제학부 교수 박안순 : 現 대성상사주식회사 회장 윤재원 : 現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허용학 : 現 First Bridge Strategy Ltd. CEO
2) 후보자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추천 이유	<p>후보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부터 회계 및 경영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체 주주들의 의사를 공정하게 대변하여 당사의 사외이사 직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사유로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받았습니다. 후보자는 오랜 기간 회계학 교수로 재직하고 다방면의 학회, 공공기관 자문위원 활동 경험을 보유하고, 관련 분야에서 축적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계학 뿐만 아니라 금융·경영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이끌어내어 화합을 도모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당사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그룹의 재무 및 감사관련 업무 논의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ESG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룹의 ESG 세부 전략 방향성 수립에 그치지 않고, 해외투자자와의 미팅에도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경영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등 회사의 건전경영과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핵심 사안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회사와 투자자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충실하게 활동한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총의를 모아 재선임 추천하였습니다.</p>
----------	--

마.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을 제5조 제1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을 제6조 제1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 및 추가 검증기준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전문성)	충족	회계·경영 전문가, 지배구조법상 회계/재무 전문가 (회계 전공 경영학 명예교수)
나)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직무공정성)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가능 후보자 겸직사실 없어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 3호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유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가능
마) 사추위 추가 검증기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충족	주주 추천, 회계전공 경영학 교수 및 타사 사외이사 경험 보유
바) 사추위 추가 검증기준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충족	경영학 교수, 지배구조 자문위원 경력, 타사 사외이사 경험 풍부하여 기업문화 이해도 높을 것으로 기대
사) 사추위 추가 검증기준 (경영자문의 실효성)	충족	경영학 교수 및 타사 사외이사 경험 보유하여 효과적 경영자문 가능할 것으로 기대

사. 사외이사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제출)
2) 적극적 요건 충족	적극적 요건 충족함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
3) 현재 겸직 업무	겸직사항 없음

아.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p>재적위원 11명 중 10명 찬성으로 가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최재봉 : 찬성 - 위원 곽수근 : 의결권 제한 (내규에 의거,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안건에서는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 - 위원 김조설 : 찬성 - 위원 박안순 : 찬성 - 위원 배 훈 : 찬성 - 위원 성재호 : 찬성 - 위원 윤재원 : 찬성 - 위원 이용국 : 찬성 - 위원 이윤재 : 찬성 - 위원 진현덕 : 찬성 - 위원 허용학 : 찬성

1) 최초 선임 시 후보 제안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IMM PE)가 추천하고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심의 후 최종 후보 추천 / 연임시 후보제안자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6. 이 용 국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 ① 출생연도 : 1964년
- ② 출신학교 : 美 프린스턴대학교 국제관계학 - 美 하버드로스쿨 법학전문 석사

나. 후보자 경력

-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現 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現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선임고문변호사
-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 前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서울사무소 대표 / 홍콩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 前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 이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 국제교류특별회 위원
- 美 뉴욕주 변호사 / 홍콩 변호사

다. 당사 사외이사 경력

- ① 근무기간 : 2021.3.25~현재
- ② 근무기간 중 출석률:
 - 이사회 총24회 중 24회 참석 (참석률: 100%)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총8회 중 8회 참석 (참석률: 100%)
 - 위험관리위원회 총 25회 중 25회 참석 (참석률: 100%)
 - 보수위원회 총6회 중 6회 참석(참석률: 100%)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총7회 중 7회 참석 (참석률: 100%)

라. 후보제안자¹⁾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1) 인적사항	최재봉(위원장) : 現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김조설 : 現 오사카상업대학 경제학부 교수 박안순 : 現 대성상사주식회사 회장 윤재원 : 現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허용학 : 現 First Bridge Strategy Ltd. CEO
2) 후보자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추천 이유	후보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부터 법률 및 금융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체 주주들의 의사를 공정하게 대변하여 당사의 사외이사 직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사유로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받았습니다. 후보자는 오랜 기간 글로벌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재직하여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논의 사안에 신중하게 접근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견지하는 등 회사의 건전 경영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주요 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현황과 고객 자산의 투자 비중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거나, 그룹 재무 지향점과 관련하여 위험가중자산 확대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그룹 위험관리 및 건전경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전체 일정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참여 전반에 매우 적극적이고 의안에 대해 사전 검토를 충실히 수행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책임감 있게 활동한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총의를 모아 재선임 추천하였습니다.

마.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 및 추가 검증기준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전문성)	충족	법률·금융·글로벌 전문가 (국제기업금융 전문 변호사, 법학 교수)
나)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직무공정성)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가능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학교와 당사 등과의 거래관계는 사외이사 당사자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낮음
다)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 3호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유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가능
마) 사추위 추가 검증기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충족	주주 추천, 국제 변호사, 법학 교수 경험 보유
바) 사추위 추가 검증기준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충족	국제기업 법률 자문 경험 풍부하여 기업문화 이해도 높을 것으로 기대
사) 사추위 추가 검증기준 (경영자문의 실효성)	충족	풍부한 국제기업금융 법률 자문 경험 보유하여 효과적 경영자문 가능할 것으로 기대

사. 사외이사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제출)
2) 적극적 요건 충족	적극적 요건 충족함 (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3) 현재 겸직 업무	겸직사항 없음

아.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적위원 11명 중 10명 찬성으로 가결 - 위원장 최재봉 : 찬성 - 위원 곽수근 : 찬성 - 위원 김조설 : 찬성 - 위원 박안순 : 찬성 - 위원 배 훈 : 찬성 - 위원 성재호 : 찬성 - 위원 윤재원 : 찬성 - 위원 이용국 : 의결권 제한 (내규에 의거,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안건에서는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 - 위원 이운재 : 찬성 - 위원 진현덕 : 찬성 - 위원 허용학 : 찬성

1) 최초 선임 시 후보 제안자 : 주주간 계약에 의거, Affinity Equity Partners가 추천하고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심의 후 최종 후보 추천 / 연임시 후보제안자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7. 최재봉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출생연도 : 1965년
② 출신학교 :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 학사/석사 - 캐나다 워털루대학교 기계공학 석사/박사

나. 후보자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 現 성균관대학교 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 - 現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디지털 혁신협의회 자문위원 - 現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기 심의위원 - 前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자문위원 - 前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前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 ICT국제화사업추진위원

다. 당사 사외이사 경력

- ① 근무기간 : 2021.3.25~현재
- ② 근무기간 중 출석률:
 - 이사회 총24회 중 24회 참석 (참석률: 100%)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12회 중 12회 참석 (참석률: 100%)
 - 위험관리위원회 총 25회 중 25회 참석 (참석률: 100%)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총7회 중 7회 참석 (참석률: 100%)
 - ESG전략위원회 총4회 중 4회 참석 (참석률: 100%)

라. 후보제안자¹⁾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1) 인적사항	최재봉(위원장) : 現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김조설 : 現 오사카상업대학 경제학부 교수 박안순 : 現 대성상사주식회사 회장 윤재원 : 現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허용학 : 現 First Bridge Strategy Ltd. CEO
2) 후보자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추천 이유	후보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부터 정보기술 관련 전문성을 통해 주주들의 의사를 공정하게 대변하여 당사의 사외이사 직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사유로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공학 분야의 교수이자 국내 디지털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ICT 관련 산학협력 활동 및 정부 주도 혁신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정보기술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IT 환경 속에서 그룹이 나아가야 할 디지털 전략 방향성 및 비전을 제시하는 등 효과적인 경영 자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메타버스 생태계, MZ세대 트렌드 등과 관련한 풍부한 식견을 토대로 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일상적인 접점을 확대하는 전략을 경영진과 함께 모색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사회에서 개진함으로써 그룹의 혁신 경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전체 일정에 참석함은 물론 의안에 대해 사전 검토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충실하게 활동한 것으로 평가되었기에 사외이사및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총의를 모아 재선임 추천하였습니다.

마.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 및 추가 검증기준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전문성)	충족	정보기술 전문가 (ICT 분야 기계공학 교수)
나)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직무공정성)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가능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성균관대학교와 당사 등과의 거래관계 적정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3호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유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가능
마) 사추위 추가 검증기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충족	주주 추천, 정보기술 분야 교수 경험 보유
바) 사추위 추가 검증기준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충족	정보기술 분야 산학협력 경험 풍부하고 타사 사외이사 경험 보유하여 기업문화 이해도 높을 것으로 기대
사) 사추위 추가 검증기준 (경영자문의 실효성)	충족	풍부한 산학협력 경험 및 사외이사 경험 보유하여 효과적 경영자문 가능할 것으로 기대

사. 사외이사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제출)
2) 적극적 요건 충족	적극적 요건 충족함(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3) 현재 겸직 업무	겸직사항 없음

아.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 재적위원 11명 중 10명 찬성으로 가결
 - 위원장 최재봉 : 의결권 제한 (내규에 의거,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안건에서는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
 - 위원 곽수근 : 찬성
 - 위원 김조설 : 찬성
 - 위원 박안순 : 찬성
 - 위원 배 훈 : 찬성
 - 위원 성재호 : 찬성
 - 위원 윤재원 : 찬성
 - 위원 이용국 : 찬성
 - 위원 이운재 : 찬성
 - 위원 진현덕 : 찬성
 - 위원 허용학 : 찬성

1) 최초 선임 시 후보 제안자 : 주주간 계약에 의거, EQT Private Capital Asia(舊 Baring Private Equity Asia)가 추천하고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심의 후 최종 후보 추천 / 연임시 후보제안자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

1. 윤재원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 ① 출생연도 : 1970년
 ② 출신학교 :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석사/박사(회계학 전공)

나. 후보자 경력

- 現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現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원장
- 現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 現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 現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
- 現 한국회계학회 다양성(D&I) 위원장/부회장
- 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前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前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

다. 당사 사외이사 경력

- ① 근무기간 : 2020.3.26~현재
 ② 근무기간 중 출석률:
 - 이사회 총39회 중 39회 참석 (참석률: 100%)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21회 중 20회 참석 (참석률: 95.2%)
 - 감사위원회 총35회 중 35회 참석 (참석률: 100%)
 - 보수위원회 총 5회 중 5회 참석 (참석률: 100%)
 - ESG전략위원회 총14회 중 14회 참석 (참석률: 100%)

라. 후보제안자¹⁾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1) 인적사항	최재봉(위원장) : 現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김조설 : 現 오사카상업대학 경제학부 교수 박안순 : 現 대성상사주식회사 회장 윤재원 : 現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허용학 : 現 First Bridge Strategy Ltd. CEO
2) 후보자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추천 이유	<p>감사위원회는 회계 전문성이 중요한 위원회일 뿐만 아니라 상법 및 지배 구조법에서 정한 회계·재무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회계학을 전공하고 현재 홍익대학교에서 관련 강의를 수행하는 교수이자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회계 분야에 대한 충분한 식견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회 및 여러 세무·회계 관련 학회와 위원회의 위원직을 활발히 수행하는 등 뛰어난 경력과 학식을 갖추고 있어 감사위원회 업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을 보유한 후보자입니다. 또한 후보자는 지난 2년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재무 보고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하는 등 경영진 업무를 감시·감독·견제하는 감사위원으로서의 역량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여성 특유의 부드러운 리더십과 투철한 책임감으로 그룹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시스템의 선진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각종 회계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회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도모하였기에 금년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p>
----------	---

마.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 및 추가 검증기준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전문성)	충족	회계·경영 전문가, 지배구조법상 회계/재무 전문가 (美 공인회계사, 회계 전공 경영학 교수)
나)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직무공정성)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가능 후보자가 재직 중인 홍익대학교와 당사 등과의 거래관계 적정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 3호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유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총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가능
마) 사추위 추가 검증기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충족	여성, 美 공인회계사, 미국 국적, 교수 경력과 다양한 학회 활동 및 정부기관 자문위원 경험 등 보유
바) 사추위 추가 검증기준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충족	경영학 교수로서 기업문화 이해도 높을 것으로 기대
사) 사추위 추가 검증기준 (경영자문의 실효성)	충족	경영학 교수, 정부기관 자문위원 경력 보유하여 효과적 경영자문 가능할 것으로 기대

사. 사외이사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제출)
2) 적극적 요건 충족	적극적 요건 충족함(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3) 현재 겸직 업무	겸직사항 없음

아.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p>재적위원 11명 중 10명 찬성으로 가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최재봉 : 찬성 - 위원곽수근 : 찬성 - 위원김조설 : 찬성 - 위원박안순 : 찬성 - 위원배 훈 : 찬성 - 위원성재호 : 찬성 - 위원윤재원 : 의결권 제한 (내규에 의거,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안건에서는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 - 위원이용국 : 찬성 - 위원이윤재 : 찬성 - 위원진현덕 : 찬성 - 위원허용학 : 찬성

1) 최초 선임시 후보 제안자 : 舊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무기명 투표 결과 반영하여 후보 추천 / 연임시 후보제안자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 관련 사항

(1) 개요

2023년 2월 28일 개최한 제3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2021년 3월 25일 제2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임기 2년으로 최초 선임 된 광수근 이사(후보자)를 감사업무의 연속성과 회계/재무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기 1년의 감사위원 후보로 재선임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업무 특성상, 고도의 회계/법률분야의 전문성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에서 법률가로서 활동 중인 동시에 회계사보 자격을 보유함으로써 회계 및 재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배훈 이사(후보자)를 임기 1년의 감사위원 후보로 재선임 추천하였습니다.

1. 광수근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 ① 출생연도 : 1953
- ② 출신학교 : 서울대학교 경영학 - 美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경영학 박사

(나) 후보자 경력

- 現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 現 포스코 기업시민자문위원회 위원장
- 現 상장사협의회 지배구조자문위 위원장
- 前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경영대학장 / 경영전문대학원장
- 前 롯데지주(주) 사외이사/감사위원장
- 前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장
- 前 한국경영학회 회장
- 前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다) 당사 감사위원 경력

- ① 근무기간 : 2021.3.25~현재
- ② 근무기간 중 출석률:
- 감사위원회 총 22회 중 21회 참석 (참석률: 95.5%)

(라) 후보제안자 : 윤재원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 인적사항	現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 후보자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추천 이유	회계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2년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였고 경영진에 대한 감독·견제하는 감사위원으로서의 역량이 입증되고 또 축적된 점을 고려하였으며, 감사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유지를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 추천함.

(마)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 감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 바, 사외이사로서의 자격 요건 충족

(사) 감사위원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확인서 제출)
2) 자격 요건 충족	요건 충족함(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3) 현재 겸직 업무	겸직사항 없음

(아)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감사위원 후보 추천 절차 개시 시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11명 중 10명 찬성으로 가결
(감사위원 후보 본인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함)

2. 배훈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 ① 출생연도 : 1953
- ② 출신학교 : 日 교토대학교 경제학부 - 日 고베대학교 MBA - 日 교토대학교 법과연구과 박사 과정 수학

(나) 후보자 경력

- 現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일본 소재, 이하 경력 동일)
- 前 재일한국인변호사협회 공동대표 / 이사
- 日 공인회계사보 / 변호사

(다) 당사 감사위원 경력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제안자 : 윤재원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 인적사항	現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 후보자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추천 이유	후보자는 오랜 기간 일본에서 법률가로서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사보 자격을 보유하는 등 회계/재무적인 식견까지 고루 갖추고 있는 등 다양한 경력과 학식을 갖춘 후보로 감사위원회 업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함. 일본에 거주함에도 지난 1년 모든 감사위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며 감사위원으로서의 역량을 증명한 점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 추천함.

(마)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 감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 바, 사외이사로서의 자격 요건 충족

(사) 감사위원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확인서 제출)
2) 자격 요건 충족	요건 충족함(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3) 현재 겸직 업무	겸직사항 없음

(아)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감사위원 후보 추천 절차 개시 시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11명 중 10명 찬성으로 가결
(감사위원 후보 본인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함)

아.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후보군 발굴·관리의 첫째 원칙은 외부법령 및 내부규범의 자격요건입니다.

전문 분야별(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정보기술, 글로벌, 소비자보호) 후보군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범위 내 취득 가능한 공개정보의 모니터링을 통해 후보군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부,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을 체크하여 특이사항 발견시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원칙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의 준수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실무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선정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사회의 역량을 배가시켜 줄 여러가지 다양성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사회는 Board Skill Matrix 검증과 교체 대상 사외이사 인원을 고려하여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고,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를 충족하는 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5일 개최한 제2회 임시이사회에서는 이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검증을 실시하며 현임 사외이사들을 대상으로 세부지표인 ①전문성(필수전문성, 세부전문성, 역량), ②다양성(국적/주요활동국가, 성별, 연령, 경험/배경), ③최초 추천경로를 분석하여 신규 선임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세번째 원칙은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수립한 후보군 관리기준입니다.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체계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위해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의 의미와 후보 추천 경로(사감추위, 사감추위 위원, 주주 추천, 외부자문기관 추천)를 명확히 정의하고 ① 정기적인 외부자문기관 의뢰 통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접수 및 검증, ② 신한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특수성 반영, ③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안정성 유지, ④ 그룹 경영전략과 연계한 후보군 관리, ⑤ Gender 다양성 강화 위한 여성 후보자 및 전문분야별 실무 경험 보유자 우대, ⑥ 사외이사 선임원칙 및 자격요건 고려하여 후보군 지속 모니터링의 6가지 관리기준을 수립하여 후보군 관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관리 원칙 준수를 위해 정례적으로 외부자문기관에 의뢰하여 적정수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고 있으며, 주주추천공모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기간을 연중 상시운영으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심의기준에 반영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다양성과 관련한 내부 기준을 수립하여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이해관계자에게 당사의 사외이사 선임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당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회사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이사회 후보군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활동 역시 특정한 직업군이나 전문성에 편중되지 않은 이사회를 구성하려는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24일 제2회 임시이사회 결의로 제정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규정하고 매년 2회 이상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부서인 이사회사무국은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원칙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연 2회 이상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내역을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부의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결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12일 제2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동 내용을 결의하고, 아래 네가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에 관해 전문성 분야별 후보군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의 경우 이사회사무국의 평판조회 등 모니터링 과정 상 특이사항 발견시 후보군 유지 및 제외
- 사외이사 소극적 자격요건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범위 내에서 취득 가능한 정보를 통해 후보군 상시 모니터링
-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후보 추천경로 및 후보의 전문분야를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게 구성
- 신한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특성을 반영한 후보군의 관리

2018년 1월 31일 개최한 제2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상기 후보군 관리원칙을 보완하여 아래 네가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 정기적인 외부자문기관 의뢰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받고, 7대 선임원칙에 부합하는 전·현직 지주사 및 자회사 사외이사는 최초 추천경로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적시하여 후보군에 반영하고, 주주 추천 등 기타 추천경로를 통한 후보군 확대
- 신한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특수성을 반영하여, 그룹 창업정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재일동포 주주대표 사외이사 후보 포함, 전략적 제휴에 의한 MOU 준수를 위한 BNP파리바 추천 사외이사 후보 포함, 이사회외의 전문성·독립성·안정성 유지를 위한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 그룹 경영전략과 연계한 디지털(정보기술), 글로벌 전문가 후보군을 지속 확대하고, 경영전략 수정 시 연계한 전문분야 후보군 발굴
- 사외이사 선임원칙 및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특이사항 발견시 후보 제외

이 원칙에 따라 기존 후보군을 신규 선임관점에서 리뷰하고 동일자에 개척한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를 통해 외부자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군을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2019년 중에는 8월 23일 개최한 제5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12월 19일 개최한 제7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군 관리 원칙을 추가로 보완하여 아래 여섯가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기준을 정립하였습니다.

- 정기적인 외부자문기관 의뢰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고 또한 검증을 진행하며, 주주추천공모제 등 다른 사외이사 후보 추천경로 활성화 병행
- 신한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특수성을 반영하여 창립이념과 그룹의 차별적 성장경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외이사 후보자를 포함
- 이사회외의 전문성, 독립성, 안정성 유지 위해 재임 중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를 후보군에 포함
- 그룹 경영전략과 연계한 후보군 지속 관리 (예시. 디지털, 글로벌, 자본시장 등)
- Gender 다양성 강화 위해 여성 후보자를 확대하는 한편, 이사회 전문성 강화 위해 전문분야별 실무 경험 보유자 우대
- 사외이사 선임원칙 및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후보 제외

2021년 중에는 11월 18일 개최한 제6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와 12월 16일 개최한 제7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각각 다양한 전문성을 보유한 '여성 사외이사 후보'를 후보군에 다수 편입하고,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한 관리기준 중 후보군 모니터링 기준을 정리하여 후보군 제외 및 별도 후보군 관리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상기 관리기준에 의거하여 후보군 검증 및 관리, 주주추천공모제 운영을 통해 2023년 12월 19일 개최한 제9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총164명의사외이사후보군을확정하였습니다.

(3) 2023년 후보군 현황

(가) 2023년 1차 사외이사 후보군 결의일자 : 2023.2.8 제1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분야	후보군 수	비중	비고
금융	20	14.2%	
경영	20	14.2%	
경제	19	13.5%	
법률	14	9.9%	
회계	13	9.2%	
정보기술	31	22.0%	
글로벌	14	9.9%	
소비자보호	10	7.1%	
합계	141	100%	

* 동일인이 복수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 대표 분야만 계산 (이하 동일)

추천경로	후보군 수	비중	비고
사감추위	33	23.4%	
외부자문	106	75.2%	
주주	2	1.4%	주주추천공모제
합계	141	100%	

(나) 2023년 2차 사외이사 후보군 결의일자: 2023.5.11 제5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분야	후보군 수	비중	비고
금융	21	14.7%	
경영	20	14.0%	
경제	21	14.7%	
법률	13	9.1%	
회계	13	9.1%	
정보기술	32	22.3%	
글로벌	14	9.8%	
소비자보호	9	6.3%	
합계	143	1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비중	비고
사감추위	31	23.4%	
외부자문	110	75.2%	
주주	2	1.4%	
합계	143	100%	

(다) 2023년 3차 사외이사 후보군 결의일자: 2023.8.10 제6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분야	후보군 수	비중	비고
금융	27	18.0%	
경영	20	13.3%	
경제	21	14.0%	
법률	13	8.7%	
회계	13	8.7%	
정보기술	33	22.0%	
글로벌	14	9.3%	
소비자보호	9	6.0%	
합계	150	1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비중	비고
사감추위	32	21.4%	
외부자문	116	77.3%	
주주	2	1.3%	
합계	150	100%	

(라) 2023년 4차 사외이사 후보군 결의일자 : 2023.10.6 제7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분야	후보군 수	비중	비고
금융	32	20.6%	
경영	20	12.9%	
경제	21	13.6%	
법률	13	8.4%	
회계	13	8.4%	
정보기술	33	21.3%	
글로벌	14	9.0%	
소비자보호	9	5.8%	
합계	155	1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비중	비고
사감추위	32	20.6%	
외부자문	121	78.1%	
주주	2	1.3%	
합계	155	100%	

(마) 2023년 5차 사외이사 후보군 결의일자 : 2023.12.19 제9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분야	후보군 수	비중	비고
금융	41	25.0%	
경영	20	12.2%	
경제	21	12.8%	
법률	13	7.9%	
회계	13	7.9%	
정보기술	33	20.1%	
글로벌	14	8.5%	
소비자보호	9	5.6%	
합계	164	1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비중	비고
사감추위	32	19.5%	
외부자문	130	79.3%	
주주	2	1.2%	
합계	164	100%	

(4) 2023년 중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가) 사외이사 지원부서 설치현황

- 부서명 : 이사회사무국
- 조직 : 이사회 직속 지원부서
- 인원구성 : 사무국장 1명(총괄), 팀원 2명

(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업무 보고 및 지원내용

일자	보고 및 지원내용
2022.12.26~2023.1.6	2022년도 사외이사 평가 진행
2023.2.8	2023년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프로세스 보고 2022년도 사외이사 평가 결과 보고 국내 금융지주회사 및 대기업 사외이사 보상 수준 검토 2023년 1차 상시적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 정비 보고 및 압축 후보
2023.2.22	2023년 감사위원 후보 자격요건 및 추천 프로세스 보고
2023.2.28	후보자 자격요건 검증결과 보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추천내역 공시
2023.3.23	사외이사 법인 등기 지원
2023.3.25 ~5.10	2023년 2차 상시적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 모니터링 및 추가 후보군 탐색(외부자문기관 의뢰)
2023.5.11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 및 2023년도 운영 일정 보고 2023년 2차 상시적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 정비 보고
2023.8.10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 및 2023년도 운영 일정 보고 2023년 2차 상시적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 정비 보고
2023.8.11~10.5	2023년 4차 상시적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 모니터링 및 추가 후보군 탐색(외부자문기관 의뢰)
2023.10.6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인선자문단 운영(안) 보고 2023년 4차 상시적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 정비 보고
2023.11.9	2024년 사외이사 후보 선임 원칙 수립의 건 보고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인선자문단 운영의 건 보고
2023.11.10~12.18	2023년 5차 상시적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 모니터링 및 추가 후보군 탐색(외부자문기관 의뢰)
2023.12.19	2023년 5차 상시적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 정비 보고

2023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
Remuneration System



5.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87
나. 사외이사 활동내역	102
다. 사외이사 보수	105
라. 사외이사 교육·연수	108
마. 사외이사 평가	113
바.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117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18
아.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119
자. 기부금 등 지원내역	119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120



5.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당사는 외부법령 외 2014년 12월 24일 시행된 모범규준의 사외이사의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 일체를 2015년 2월 24일 개최한 제2회 임시이사회 결의를 통해 내규화하고, 2016년 8월 1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내 제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거한 사외이사별 외부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외이사 이윤재

(가) 소극적 자격요건

이윤재 이사는 상법 상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법상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임원 및 사외이사 결격요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당사 외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를 겸직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당사의 내규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역시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① 전문성

이윤재 이사는 재정경제원 은행보험국장과 경제정책국장, 대통령 재정경제비서관을 역임하는 등 장기간 경제 및 금융 관련 분야에서 공무를 수행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금융업 전반에 걸친 지식과 업무 이해도가 탁월하고, 민/관을 아우르는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수집력과 의사에 대한 분석력이 뛰어나며 이사회 의장으로서 균형 잡힌 의견을 제시하여 그룹의 경영과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정책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직무의 공정성이 돋보이고 금융, 재무, 경제 전문성에 기반한 예리한 분석력으로 경영 다분야에 대한 토의 및 평가를 유도하여 충실한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등 회사의 건전 경영에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② 직무공정성

이윤재 이사는 최초 선임 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부터 경제 및 경영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체 주주들의 의사를 공정하게 대변하여 당사의 사외이사 직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사유로 추천됐으며, 당사 및 자회사와의 거래관계가 없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사외이사로서 충실히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회사와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거래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③ 윤리책임성

이윤재 이사는 고위 공직자 시절 내부평판조치에서도 훌륭한 인품과 더불어 소통을 중시하고 포용력이 넘치는 성품으로 신망이 두텁다는 인사평이 확인되었으며, 이사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3년 연속 맡아 강한 책임감으로 이사회를 이끌어 가는 등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성실히 보여주었습니다.

④ 충실성

이윤재 이사는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이사회 간담회, 이사회 워크숍 및 교육 등에 100% 출석하였으며 의안 사전 검토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연간 401시간을 할애하는 등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직접적인 안건의 검토와 회의의 참여 외에도 이사진 간의 의견 조율 및 논의가 필요한 현안의 발굴은 물론, 금융감독기관이나 지배구조 평가기관 등과의 간담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사외이사 평가 중 충실성 항목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타회사에 추가로 겸직한 사실이 없어 선임 전 후로 겸직상황에 대한 변동된 내용이 없습니다.

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이윤재 이사는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국가 금융·경제정책을 수행한 경력이 있으며, 다양한 기업에서의 사외이사 경력도 풍부하여 경영자문 역할 및 경영진의 경영활동 감시·감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⑥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이윤재 이사는 다양한 기업에서의 사외이사직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평소 기업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여, 신한금융그룹의 창업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⑦ 경영자문의 실효성

이윤재 이사는 경제·금융 분야의 관료직 경력 외에도, 경영컨설팅 회사인 KorEI의 대표이사직을 역임한 경영 전문가로 당사에 효과적인 경영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영 제7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임원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영 제8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및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2항	충족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1호)	충족	경제·금융·경영 전문가, 지배구조법상 회계/재무 전문가 (금융·경제 담당 정부기관 고위공무원, 전문경영인)
나.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른 회사 겸직사실 없어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윤리책임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3호)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	충족	이사회 등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하였고, 관련 법상 자격요건 충족함. 선임 이후 겸직사실 변동 없으며, 이사회 등 출석을 감안 시 충실성 입증함
마. 다양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정부기관 근무, 민간회사 임원 경험 보유
바. 적합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전문경영인 및 사외이사 경험 풍부하여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음
사. 실효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풍부한 경제·금융 정책 수행 경험, 경영컨설팅 회사 대표이사 경력 및 다양한 기업에서의 사외이사 경험 보유하여 효과적으로 경영자문 수행

(2) 사외이사 성재호

(가) 소극적 자격요건

성재호 이사는 상법 상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법상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임원 및 사외이사 결격요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당사 외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를 겸직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당사의 내규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역시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① 전문성

성재호 이사는 국제법 전공 교수로서 법학 분야의 이론과 실무적 경험이 풍부하고, 금융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깊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룹 경영 현안에 대해 법률적 해석 및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그룹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② 직무공정성

성재호 이사는 당사 사외이사 재임기간 중 독립적 위치에서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회사와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거래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③ 윤리책임성

성재호 이사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법률관련 협회장을 역임한 경험을 기반으로 중도와 균형을 견지에 입각해 당사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체계 유지에 기여하는 등 투철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④ 충실성

성재호 이사는 총 4회의 감사위원회와 총 7회의 위험관리위원회, 총 8회의 보수위원회, 총 4회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으며, 총 14회의 이사회 중 13회에 출석하고 총 6회의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중 5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의안 사전 검토 등을 포함한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연간 476시간을 할애하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타회사에 추가로 겸직한 사실이 없어 선임 전 후로 겸직상황에 대한 변동된 내용이 없습니다.

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성재호 이사는 폭넓은 법률 지식과 경험을 겸비하였으며, 법률분야 전문가로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에 입각하여 경영자문 역할 및 경영진의 경영활동 감시·감독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⑥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성재호 이사는 당사 외 신한카드 사외이사 경력을 보유하여 신한금융그룹의 비전과 성장경로, 기업문화를 깊게 이해하고 있으며 창업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⑦ 경영자문의 실효성

성재호 이사는 국제법 분야에서 국내에서 손꼽히는 석학으로서 그룹의 크고 작은 글로벌 전략에 있어서 유효한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영 제7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임원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영 제8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및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2항	충족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1호)	충족	법률 전문가 (법학 교수)
나.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른 회사 겸직사실 없어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윤리책임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3호)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	충족	이사회 등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하였고, 관련 법상 자격요건 충족함. 선임 이후 겸직사실 변동 없으며, 이사회 등 출석을 감안 시 충실성 입증함
마. 다양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저연령, 법학 교수 경력과 다양한 학회활동 및 정부기관 자문위원 경력 보유
바. 적합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신한금융 자회사 사외이사 재직 및 타사 사외이사 경험 풍부하여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음
사. 실효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법학 교수, 사외이사 경력 보유하여 효과적인 경영자문 가능

(3) 사외이사 윤재원

(가) 소극적 자격요건

윤재원 이사는 상법 상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법상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임원 및 사외이사 결격요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당사 외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를 겸직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당사의 내규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역시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① 전문성

윤재원 이사는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 전공 교수로서, 미국 공인회계사이자 국내의 손 꼽히는 회계·세무 분야 석학입니다. 다양한 학회 활동은 물론 정부기관 자문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회계 분야의 이론과 실무가 조화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효과적인 경영자문은 물론 경영진 감시·감독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그룹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② 직무공정성

윤재원 이사는 당사 사외이사 재임기간 중 독립적 위치에서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윤재원 이사가 재직 중인 홍익대학교는 당사 및 신한금융그룹 자회사와 일상적인 금융거래의 거래사실이 없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으며, 윤재원 이사 본인 역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회사와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거래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③ 윤리책임성

윤재원 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한 책임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인품과 명성에 걸맞는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평가 중 윤리책임성 항목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④ 충실성

윤재원 이사는 이사회와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전략위원회 등 이사회내위원회를 비롯하여 이사회 간담회,

이사회 워크숍 및 교육 등을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의안 사전 검토 등을 포함한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연간 464시간을 할애하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타회사에 추가로 겸직한 사실이 없어 선임 전 후로 겸직상황에 대한 변동된 내용이 없습니다.

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윤재원 이사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여성 경영학 교수이며, 다양한 학회 활동 및 정부기관 자문위원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전문가의 시각에서 경영자문 역할 및 경영진의 경영활동 감사·감독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사회 논의 시 날카로운 시각으로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이사회가 보다 폭넓은 견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⑥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윤재원 이사는 경영학 교수로서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깊게 이해하고 있으며, 신한금융그룹 창업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⑦ 경영자문의 실효성

윤재원 이사는 경영학 교수이고, 다양한 학회 활동 및 정부기관 자문위원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유일한 회계전문가의 시각에서 경영자문 역할 및 경영진의 경영활동 감사·감독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영 제7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임원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영 제8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및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2항	충족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1호)	충족	회계·경영 전문가(美 공인회계사, 회계 전공 경영학 교수)
나.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후보자가 재직 중인 홍익대학교와 당사 등과의 거래관계 적정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윤리책임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3호)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양
라. 충실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	충족	이사회 등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하였고, 관련 법상 자격요건 충족함. 선임 이후 겸직사실 변동 없으며, 이사회 등 출석을 감안 시 충실성 입증함
마. 다양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여성, 저연령, 美 공인회계사, 미국 국적, 교수 경력과 다양한 학회 활동 및 정부기관 자문위원 경험 등 보유
바. 적합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경영학 교수로서 기업문화 이해도 높음
사. 실효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경영학 교수, 정부기관 자문위원 경력 보유하여 효과적 경영자문 가능

(4) 사외이사 진현덕

(가) 소극적 자격요건

진현덕 이사는 상법 상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법상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임원 및 사외이사 결격요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당사 외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를 겸직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당사의 내규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역시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① 전문성

진현덕 이사는 재일동포 사회에서 성공한 기업가로서 성공적인 사업 영위와 더불어 경영학 교수로 재직 중인 경험을 통해 경영에 대한 이론과 실무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경영 분야 전문가입니다. 경영 분야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 오랜 기간 건설하게 기업을 경영해 온 경륜을 바탕으로 경영현장에서 체득한 실무지식과 통찰력, 그리고 경영학 교수로서의 학술적 경영이론 등 각종 노하우를 아낌없이 조언해 주었습니다.

② 직무공정성

진현덕 이사의 최근 2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소속한 법인과 당사 및 자회사와의 거래관계가 없어 독립성에 문제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회사와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거래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③ 윤리책임성

진현덕 이사는 내부평판조회 결과, 주변의 신망이 두텁고 안정적인 기업경영은 물론 교육발전 공헌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여 우수한 세평이 확인되는 등 인품과 명성에 걸맞는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충실성

진현덕 이사는 국외 거주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비롯하여 사외이사및감사위원회후보추천위원회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내위원회, 그리고 이사회 간담회, 이사회 워크숍 및 교육 등을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의안 사전 검토 등을 포함한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연간 363시간을 할애하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타회사에 추가로 겸직한 사실이 없어 선임 전후로 겸직상황에 대한 변동된 내용이 없습니다.

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진현덕 이사는 일본에서 장기간 경영활동을 수행한 전문 경영인이며, 경영학 교수로 재직할 이력을 보유한 경영 분야 전문가입니다. 아울러 교육사업에도 오랜 기간 참여하였고, 또한 재일동포의 상호경제협력을 위한 여러 민간단체에서 임원으로 재임하며 체득한 교육, 경제, 국제교류 등의 경험 및 통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경영자문 역할 및 경영진의 경영활동 감시·감독 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⑥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진현덕 이사는 당사의 비전과 성장경로, 기업문화를 깊게 이해하고 있으며 창업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⑦ 경영자문의 실효성

진현덕 이사는 장기간 전문 경영인으로 활동한 경험과 더불어, 경영학 교수로 체득한 경영 이론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경영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영 제7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임원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영 제8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및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2항	충족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1호)	충족	경영·글로벌 전문가(전문경영인, 경영학 교수, 해외기업 임원)
나.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후보자가 재직 중인 기업과 당사 등과의 거래관계 없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윤리책임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3호)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유
라. 충실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	충족	이사회 등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하였고, 관련 법상 자격요건 충족함. 선임 이후 겸직사실 변동 없으며, 이사회 등 출석을 감안 시 충실성 입증함
마. 다양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주주 추천, 경영학 교수 및 일반기업 경영 경험 보유
바. 적합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전문경영인으로서 기업문화 이해도 높음
사. 실효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경영학 교수 및 일반기업 경영 경험 보유하여 효과적 경영자문 가능

(5) 사외이사 관수근

(가) 소극적 자격요건

관수근 이사는 상법 상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법상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임원 및 사외이사 결격요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당사 외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를 겸직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당사의 내규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역시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① 전문성

관수근 이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전공 교수로 20년 이상 재임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계·재무 분야 석학입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직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 현안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보유하고 있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정책에 대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경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불어 ESG와 관련된 활동 역시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경제계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당사의 ESG전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효과적인 ESG 전략을 위해 전문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등 그룹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② 직무공정성

곽수근 이사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인 IMM PE로부터 경제 및 경영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체 주주들의 의사를 공정하게 대변하여 당사의 사외이사 직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사유로 추천됐으며, 당사 사외이사 재임기간 중 독립적 위치에서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음은 물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회사와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거래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③ 윤리책임성

곽수근 이사는 ESG전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신한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등 투철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에 기반한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④ 충실성

곽수근 이사는 총 14회 감사위원회, 총 4회의 ESG전략위원회, 6회의 보수위원회, 총 4회의 자회사최고경영자후추천위원회 등 모든 위원회와 모든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이사회 간담회, 이사회 워크숍 및 교육 등에도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의안 사전 검토 등을 포함한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연간 481시간을 할애하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다년간의 타사 감사위원으로서의 경험과 회계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 감사업무 전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타회사에 추가로 겸직된 사실이 없어 선임 전 후로 겸직상황에 대한 변동된 내용이 없습니다.

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곽수근 이사는 회계 전공 경영학 교수 출신이자 여러 학회 활동 및 금융당국 자문위원 활동,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경영 전문가의 시각에서 경영자문 역할 및 경영진의 경영활동 감시·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⑥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곽수근 이사는 경영학 교수 출신이자 다양한 기업에서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깊게 이해하고 있으며, 신한금융그룹 창업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⑦ 경영자문의 실효성

곽수근 이사는 경영학 교수, 학회 및 금융당국 자문위원, 다양한 기업에서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경영자문 역할 및 경영진의 경영활동 감시·감독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주식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상장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영 제7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임원 자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영 제8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및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2항	충족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1호)	충족	회계·경영 전문가(회계 전공 경영학 교수)
나.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른 회사 겸직사실 없어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윤리책임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3호)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유
라. 충실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	충족	이사회 등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하였고, 관련 법상 자격요건 충족함. 선임 이후 겸직사실 변동 없으며, 이사회 등 출석률 감안 시 충실성 입증함
마. 다양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주주추천, 회계 전공 교수 경력과 여러 학회 활동 및 금융당국 자문위원, 다양한 기업에서의 사외이사 경험 등 보유
바. 적합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경영학 교수, 지배구조 자문위원 경력, 타사 사외이사 경험 풍부하여 기업문화 이해도 높음
사. 실효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회계 전공 교수, 금융당국 자문위원 경력 및 다양한 기업에서의 사외이사 경험 보유하여 효과적 경영자문 수행

(6) 사외이사 배후

(가) 소극적 자격요건

배후 이사는 상법 상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법상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임원 및 사외이사 결격요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당사 외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를 겸직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당사의 내규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역시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① 전문성

배후 이사는 일본 변호사법인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또한 일본 공인회계사보로 등록되어 있는 법률·회계 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한국변호사협회와도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는 등, 오랜 기간 한·일 경제 관계의 민간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며 체득한 기업 경영 현안에 대한 해안을 바탕으로 당사 이사회에서도 일본의 경영 현안과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제공하는 한편, 그룹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아낌없이 조언해 주었습니다.

② 직무공정성

배후 이사의 최근 2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소속한 법인과 당사 및 자회사와의 거래관계가 없어 독립성에 문제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회사와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거래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③ 윤리책임성

배후 이사는 평판조회 결과, 재일동포 사회에서 신망이 두텁고 우수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일한국인변호사협회에서도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인품과 명성에 걸맞는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충실성

배후 이사는 국외 거주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내 위원회는 물론 이사회 간담회, 이사회 워크숍 및 교육 등에 100% 출석하였으며 의안 사전 검토 등을 포함한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연간 450시간을 할애하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타회사에 추가로 겸직한 사실이 없어 선임 전·후로 겸직상황에 대한 변동된 내용이 없습니다.

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배훈 이사는 일본에서 장기간 기업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 변호사협회와도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하는 등, 한국과 일본 양국의 기업 관련 법률에 해박한 법률·회계 전문가로서, 한·일 양국의 기업 경영 이슈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경영자문 역할 및 경영진의 경영활동 감시·감독 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⑥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배훈 이사는 기업 법무 자문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깊게 이해하고 있으며, 당사 창업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⑦ 경영자문의 실효성

배훈 이사는 장기간 기업 법무 자문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주식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상장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영 제7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임원 자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영 제8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및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2항	충족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1호)	충족	법률·회계·글로벌 전문가 (외국 변호사, 외국 공인회계사보)
나.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후보자가 재직 중인 변호사법인과 당사 등과의 거래관계 없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윤리책임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3호)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유
라. 충실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	충족	이사회 등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하였고, 관련 법상 자격요건 충족함. 선임 이후 겸직사실 변동 없으며, 이사회 등 출석을 감안 시 충실성 입증함
마. 다양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와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주주 추천, 외국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보
바. 적합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와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기업 법무자문 전문 변호사로 기업문화 이해도 높음
사. 실효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와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경영학 석사 학위를 보유한 기업 법무자문 전문 변호사로 효과적 경영자문 수행

(7) 사외이사 이용국

(가) 소극적 자격요건

이용국 이사는 상법 상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법상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임원 및 사외이사 결격요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당사 외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를 겸직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당사의 내규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역시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① 전문성

이용국 이사는 오랜 기간 글로벌 대형 법무법인인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에서 변호사로 재직하며, 국내 대형 상장회사들의 증권 발행, M&A, 증시 상장 등을 주선한 이력을 보유한 법률-금융-글로벌 전문가입니다. 해당 분야 전문성과 국내외 자본시장 및 법무 네트워크를 통해, 그룹이 추진 중인 M&A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해박한 식견과 통찰력을 제공하는 등 이사회의 합리적인 논의 과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② 직무공정성

이용국 이사는 전략적 투자자인 Affinity Equity Partners로부터 법률 및 금융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체 주주들의 의사를 공정하게 대변하여 당사의 사외이사 직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사유로 추천됐으며, 당사 사외이사 재임기간 중 독립적 위치에서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음은 물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회사와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거래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③ 윤리책임성

이용국 이사는 중도와 균형의 견지에 입각해 당사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체계 유지에 기여하였고, 특히 법률 취약 계층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거래 법률 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투철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④ 충실성

이용국 이사는 이사회를 비롯하여 위험관리위원회, ESG전략위원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내위원회와 이사회 간담회, 이사회 워크숍 및 교육 등에 100% 출석하였으며, 의안 사전 검토 등을 포함한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연간 461시간을 할애하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타회사에 추가로 겸직한 사실이 없어 선임 전 후로 겸직상황에 대한 변동된 내용이 없습니다.

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이용국 이사는 국제-기업금융 전문 변호사이자 현재 서울대학교 및 한동대학교 법학 겸임교수로재직하고 있어 법률 및 금융분야에 해박할뿐만 아니라, 특히 글로벌 대형 법무법인에서 재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력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경영자문 역할 및 경영진의 경영활동 감시·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⑥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이용국 이사는 대형 상장회사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이력을 토대로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깊게 이해하고 있으며, 신한금융그룹 창업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⑦ 경영자문의 실효성

이용국 이사는 국제-기업금융 관련 법률 자문을 주된 전문성으로 보유하고 있어 그룹의 자본시장/자산운용 부문 경쟁력 강화에 대한 효과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영 제7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임원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영 제8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및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2항	충족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1호)	충족	법률·금융·글로벌 전문가(국제·기업금융 전문 변호사, 법학 교수)
나.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학교와 당사 등과의 거래관계 적정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윤리책임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3호)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유
라. 충실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	충족	이사회 등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하였고, 관련 법상 자격요건 충족함. 선임 이후 겸직사실 변동 없으며, 이사회 등 출석률 감안 시 충실성 입증함
마. 다양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주주 추천, 저연령, 국제 변호사, 법학 교수 경험 보유
바. 적합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국내외 대형기업 법률 자문 경험 풍부하여 기업문화 이해도 높음
사. 실효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풍부한 국제·기업금융 법률 자문 경험 보유하여 효과적 경영자문 수행

(8) 사외이사 최재봉

(가) 소극적 자격요건

최재봉 이사는 상법 상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법상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임원 및 사외이사 결격요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당사 외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를 겸직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당사의 내규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역시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① 전문성

최재봉 이사는 오랜 기간 기계공학 교수로 재직하며 ICT 관련 산학협력 활동 및 정부 주도 혁신사업에 활발히 참여한 이력을 보유하고, 웨어러블 / 사물인터넷 / 빅데이터 분석 / AI / 스마트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 전 분야에 걸쳐 전문성을 보유한 정보기술(IT) 분야 전문가입니다. 현재 금융의 디지털화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활동을 이어가는 등 그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사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시각과 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아낌없이 조언해 주었습니다.

② 직무공정성

최재봉 이사는 전략적 투자자인 EQT Private Capital Asia(舊 Baring Private Equity Asia)로부터 정보기술(IT)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체 주주들의 의사를 공정하게 대변하며 그룹의 미래 성장을 위한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사외이사 직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사유로 추천됐으며, 당사 사외이사 재임기간 중 독립적 위치에서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음은 물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회사와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거래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③ 윤리책임성

최재봉 이사는 주주 추천 사외이사로서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명성에 걸맞는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평가 중 윤리책임성 항목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④ 충실성

최재봉 이사는 총 14회의 이사회에 모두 참석하였으며, 총 25회의 위험관리위원회와 총 9회의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총 4회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는 3회 참석하였으며, 이사회 간담회, 이사회 워크숍 및 교육 등은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의안 사전 검토 등을 포함한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연간 429시간을 할애하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최재봉 이사는 디지털·ICT 관련 산학협력 활동 및 정부 주도 혁신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자문 역할 및 경영진의 경영활동 감시·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⑥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최재봉 이사는 정보기술(IT) 분야 산학협력 경험이 풍부하고 타사 사외이사 경험을 보유하여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깊게 이해하고 있으며, 신한금융그룹 창업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⑦ 경영자문의 실효성

최재봉 이사는 풍부한 산학협력 경험 및 사외이사 경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경영자문 역할 및 경영진의 경영활동 감시·감독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영 제7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임원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영 제8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및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2항	충족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1호)	충족	정보기술(IT) 전문가 (IT분야 기계공학 교수)
나.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성균관대학교와 당사 등과의 거래관계 적정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윤리책임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3호)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유
라. 충실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	충족	이사회 등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하였고, 관련 법상 자격요건 충족함. 선임 이후 겸직사실 변동 없으며, 이사회 등 출석을 감안 시 충실성 입증함
마. 다양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주주 추천, 저연령, 정보기술(IT) 분야 교수 경험 보유
바. 적합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정보기술(IT) 분야 산학협력 경험 풍부하고 타사 사외이사 경험 보유하여 기업문화 이해도 높음
사. 실효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풍부한 산학협력 경험 및 사외이사 경력 보유하여 효과적 경영자문 수행

(9) 사외이사 김조설

(가) 소극적 자격요건

김조설 이사는 상법 상 사외이사 결격요건, 상법상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임원 및 사외이사 결격요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당사 외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를 겸직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당사의 내규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 역시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① 전문성

김조설 이사는 오랜 기간 경제학부 교수로 재임 중인 여성 경제학자입니다. 동북아시아 경제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평소 '인권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활동 경력이 풍부하며, 일본의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인권 심의 및 사회 보장'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그룹의 주요 사업전략은 물론 최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ESG 전략의 수립과 실천과 관련해 심도 깊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② 직무공정성

김조설 이사의 최근 2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소속한 학교법인과 당사 및 자회사와의 거래관계가 없어 독립성에 문제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회사와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거래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③ 윤리책임성

김조설 이사는 재일동포 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교육 활동과 인권 및 사회보장 관련 활동을 이어나가는 등 명성에 걸맞는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평가 중 윤리책임성 항목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④ 충실성

김조설 이사는국의 거주 문제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사회는 물론 ESG전략위원회, 보수위원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내위원회와 이사회 간담회, 이사회 워크숍 및 교육 등에 100% 출석하였으며, 의안 사전 검토 등을 포함한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연간 411시간을 할애하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타회사에 추가로 겸직할 사실이 없어 선임 전 후로 겸직상황에 대한 변동된 내용이 없습니다.

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김조설 이사는 장기간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였고 또한 인권 및 사회보장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경영자문 역할 및 경영진의 경영활동 감시·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각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논의가 보다 깊고 풍부해질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⑥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김조설 이사는 당사의 비전과 성장경로, 기업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창업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⑦ 경영자문의 실효성

김조설 이사는 오랜 기간 경제학자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경영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주식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상장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영 제7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임원 자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영 제8조제1항, 제3항(금융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법령 위반사항 및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라.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2항	충족	다른 회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1호)	충족	경제·글로벌 전문가 (해외 대학 경제학 교수, 글로벌학회 임원)
나.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2호)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학교와 당사 등과의 거래관계 적정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낮음
다. 윤리책임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3호)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유
라. 충실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제1항제4호)	충족	이사회 등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하였고, 관련 법상 자격요건 충족함. 선임 이후 겸직사실 변동 없으며, 이사회 등 출석을 감안 시 충실성 입증함
마. 다양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여성, 경제학 교수, 다양한 학회 활동 경험 등 보유
바. 적합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인권 및 사회보장 관련 활동 경험 풍부하여 기업문화 이해도 높음
사. 실효성 (2018.1.15 개최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호 결의사항)	충족	경제학자로서 식견이 탁월하고, 풍부한 학회 및 자문 활동 경험을 보유하여 효과적 경영자문 수행

나.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사외이사 이윤재

이윤재 이사는 2023년 중 개최된 이사회와 보수위원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출석률 100%)

연중 개최된 이사회, 이사회워크숍 등에서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할 배당금 수준의 적정성 검토,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검토, 이사회내위원회 운영안 점검, 분기배당 실시 규모 및 시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따른 영향 검토 및 제언,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그룹 경영계획 적정성 논의, 의결권 자문기관 및 주요 투자자 대상 소통 방안 제언, 그룹 ESG 경영 방향성 논의 및 제언,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적정성 검토, 그룹 전략방향과 연계한 조직개편 방안 논의 및 방향성 제언, 2024년 그룹 경영계획 수립 논의, 그룹 경영진 선임의 적정성 확인 등의 활동을 통해 이사회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의장으로서 다양한 이사들의 견해를 종합하고 조율하여 이사회가 풍부한 논의를 통해 최선의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중재하는 한편, 한국ESG기준원과의 인터뷰 및 금융당국의 이사회 의장 미팅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사회를 대표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이사회 의장으로서 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보수위원회에서는 경영진의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와 관련하여 개선 의견을 개진하고 지속 점검 및 피드백을 제안하는 등 위원회 활동에서도 사외이사로서 적극적이고 충실한 모습으로 귀감이 되어 주었습니다.

2023년 중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서는 총 401시간(이사회 등 안건 사전설명, 의안 및 의사록 검토시간, 이사회워크숍 / 이사회 간담회 / 연수시간 포함, 이하 동일)을 할애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성재호

성재호 이사는 2023년 중 총 14회의 이사회 중 13회에 참석하였고, 총 7회의 위험관리위원회, 8회의 보수위원회, 4회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총 1회의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모두 참석하였으며 총 6회의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는 5회 참석하였습니다. (출석률 96%)

연중 개최된 이사회, 이사회워크숍 등에서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할 배당금 수준의 적정성 검토,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검토, 이사회내위원회 운영안 점검, 분기배당 실시 규모 및 시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따른 영향 검토 및 제언,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그룹 경영계획 적정성 논의, 의결권 자문기관 및 주요 투자자 대상 소통 방안 제언, 그룹 ESG 경영 방향성 논의 및 제언,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적정성 검토, 그룹 전략방향과 연계한 조직개편 방안 논의 및 방향성 제언, 2024년 그룹 경영계획 수립 논의, 그룹 경영진 선임의 적정성 확인 등의 활동을 통해 이사회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성재호 이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안건은 물론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현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사전검토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조율하고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막중한 절차를 충실히 운영하는 등 그룹 경영 및 지배구조 안정성을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하였습니다. 더욱이 2023년 1월 변양호 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정족수가 미달된 보수위원회의 위원 역할을 추가로 맡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언과 제안을 통해 보수위원회가 경영진 평가 및 보수체계를 심도 깊게 점검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023년 중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할애한 시간은 총 476시간입니다.

(3) 사외이사 윤재원

윤재원 이사는 2023년 중 개최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ESG전략위원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출석률 100%)

연중 개최된 이사회, 이사회워크숍 등에서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할 배당금 수준의 적정성 검토,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검토, 이사회내위원회 운영안 점검, 분기배당 실시 규모 및 시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따른 영향 검토 및 제언,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그룹 경영계획 적정성 논의, 의결권 자문기관 및 주요 투자자 대상 소통 방안 제언, 그룹 ESG 경영 방향성 논의 및 제언,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적정성 검토, 그룹 전략방향과 연계한 조직개편 방안 논의 및 방향성 제언, 2024년 그룹 경영계획 수립 논의, 그룹 경영진 선임의 적정성 확인

등의 활동을 통해 이사회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윤재원 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위원회 활동을 적시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룹의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영진의 활동을 감시·감독하고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한국ESG기준원 등 외부 기관과의 인터뷰에도 감사위원장이자 ESG전략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사외이사의 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윤재원 이사는 2023년 중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총 464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4) 사외이사 진현덕

진현덕 이사는 2023년 중 개최된 이사회와 사외이사및감사위원회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출석률 100%)

연중 개최된 이사회, 이사회워크숍 등에서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할 배당금 수준의 적정성 검토,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검토, 이사회내위원회 운영안 점검, 분기배당 실시 규모 및 시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따른 영향 검토 및 제언,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그룹 경영계획 적정성 논의, 의결권 자문기관 및 주요 투자자 대상 소통 방안 제언, 그룹 ESG 경영 방향성 논의 및 제언,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적정성 검토, 그룹 전략방향과 연계한 조직개편 방안 논의 및 방향성 제언, 2024년 그룹 경영계획 수립 논의, 그룹 경영진 선임의 적정성 확인 등의 활동을 통해 이사회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진현덕 이사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보유한 해안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와 경영 현안에 대한 사려 깊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진현덕 이사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모든 이사회와 이사회내위원회에 참석함으로써 사외이사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열의는 물론, 단순히 활동시간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사외이사로서의 열정과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진현덕 이사는 2023년 중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총 363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5) 사외이사 광수근

광수근 이사는 2023년 개최된 모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ESG전략위원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출석률 100%)

연중 개최된 이사회, 이사회워크숍 등에서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할 배당금 수준의 적정성 검토,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검토, 이사회내위원회 운영안 점검, 분기배당 실시 규모 및 시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따른 영향 검토 및 제언,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그룹 경영계획 적정성 논의, 의결권 자문기관 및 주요 투자자 대상 소통 방안 제언, 그룹 ESG 경영 방향성 논의 및 제언,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적정성 검토, 그룹 전략방향과 연계한 조직개편 방안 논의 및 방향성 제언, 2024년 그룹 경영계획 수립 논의, 그룹 경영진 선임의 적정성 확인 등의 활동을 통해 이사회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광수근 이사는 ESG전략위원장으로 최신 ESG 트렌드를 공유하고 ESG 추진 전략을 다듬을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주었으며,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에서도 회계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분석과 제언을 통해 경영진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광수근 이사는 2023년 중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총 481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6) 사외이사 배훈

배훈 이사는 2023년 중 개최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출석률 100%)

연중 개최된 이사회, 이사회워크숍 등에서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할 배당금 수준의 적정성 검토,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검토, 이사회내위원회 운영안 점검, 분기배당 실시 규모 및 시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따른 영향 검토 및 제언,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그룹 경영계획 적정성 논의, 의결권 자문기관 및 주요 투자자 대상 소통 방안 제언, 그룹 ESG 경영 방향성 논의 및 제언,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적정성 검토, 그룹 전략방향과 연계한 조직개편 방안 논의 및 방향성 제언, 2024년 그룹 경영계획 수립 논의, 그룹 경영진 선임의 적정성 확인 등의 활동을 통해 이사회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배훈 이사는 오랜 기간 변호사로서 법무자문을 수행하며 체득한 법률 전문성을 토대로 주요 경영 현안에 수반될 수 있는 법적 이슈사항에 대해 조언하는 등 그룹 내부통제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모든

이사회와 이사회내위원회에 참석함으로써 사외이사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열의는 물론, 단순히 활동시간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사외이사로서의 열정과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배훈 이사는 2023년 중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총 450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7) 사외이사 이용국

이용국 이사는 2023년 중 개최된 이사회와 위험관리위원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ESG전략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출석률 100%)

연중 개최된 이사회, 이사회워크숍 등에서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할 배당금 수준의 적정성 검토,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검토, 이사회내위원회 운영안 점검, 분기배당 실시 규모 및 시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따른 영향 검토 및 제언,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그룹 경영계획 적정성 논의, 의결권 자문기관 및 주요 투자자 대상 소통 방안 제언, 그룹 ESG 경영 방향성 논의 및 제언,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적정성 검토, 그룹 전략방향과 연계한 조직개편 방안 논의 및 방향성 제언, 2024년 그룹 경영계획 수립 논의, 그룹 경영진 선임의 적정성 확인 등의 활동을 통해 이사회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국 이사는 오랜 기간 글로벌 대형 로펌에서 국제.기업금융 법무 자문을 수행한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토대로 주요 논의 안건에 대해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접목한 다양한 조언을 제공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이용국 이사는 2023년 중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총 461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8) 사외이사 최재봉

최재봉 이사는 2023년 중 개최된 총 15회의 이사회와 총 9회의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9회의 위험관리위원회에는 모두 참석하였으며, 총 4회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중에는 3회 참석하였습니다. (출석률 97%)

연중 개최된 이사회, 이사회워크숍 등에서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할 배당금 수준의 적정성 검토,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검토, 이사회내위원회 운영안 점검, 분기배당 실시 규모 및 시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따른 영향 검토 및 제언,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그룹 경영계획 적정성 논의, 의결권 자문기관 및 주요 투자자 대상 소통 방안 제언, 그룹 ESG 경영 방향성 논의 및 제언,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적정성 검토, 그룹 전략방향과 연계한 조직개편 방안 논의 및 방향성 제언, 2024년 그룹 경영계획 수립 논의, 그룹 경영진 선임의 적정성 확인 등의 활동을 통해 이사회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최재봉 이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통달한 석학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그룹의 디지털 전략 및 이를 바탕으로한 고객기반 확대 방향성에 대해 조언하는 등 그룹의 디지털 성장을 위한 탁월한 통찰력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최재봉 이사는 2023년 중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총 429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9) 사외이사 김조설

김조설 이사는 2023년 중 개최된 이사회 및 보수위원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ESG전략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출석률 100%)

연중 개최된 이사회, 이사회워크숍 등에서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할 배당금 수준의 적정성 검토,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검토, 이사회내위원회 운영안 점검, 분기배당 실시 규모 및 시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따른 영향 검토 및 제언,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그룹 경영계획 적정성 논의, 의결권 자문기관 및 주요 투자자 대상 소통 방안 제언, 그룹 ESG 경영 방향성 논의 및 제언,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적정성 검토, 그룹 전략방향과 연계한 조직개편 방안 논의 및 방향성 제언, 2024년 그룹 경영계획 수립 논의, 그룹 경영진 선임의 적정성 확인 등의 활동을 통해 이사회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모든 이사회와 이사회내위원회에 참석함으로써 사외이사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열의는 물론, 단순히 활동시간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사외이사로서의 열정과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조설 이사는 2023년 중 안건 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총 411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보수

당사는 2016년 3월 24일 개최한 제3회 임시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보수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사외이사의 역할에 걸맞는 강한 의무감 및 책임감으로 이사회 활동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2016년 4월부터 기본수당을 월 1백만원 축소하고 이사회내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실적에 연계한 보상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019년 3월 27일 개최한 제3회 임시이사회에서는 그룹 규모의 성장 및 사업포트폴리오 확대와 더불어 늘어난 사외이사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고려하여 기본수당을 월 0.5백만원 인상하였고, 2021년 2월 5일 개최한 제1회 임시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 역할에 대한 대내외 기대가 높아지고 사외이사의 이사회에 대한 시간과 노력 투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점과 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의 참석에 수반되는 필요성 경비인 참석수당을 폐지하고 월 0.5백만원을 기본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23년 사외이사별 보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기준으로 기본급은 월 4.0백만원, 기타수당에 있어 회의 수당은 이사회 1회당 1백만원 및 소위원회 1회당 0.5백만원, 기타수당에 있어 직책수당은 의장 월 1백만원 및 위원장 월 0.5백만원을 지급합니다. 해당 보수 이외에 국외 거주 사외이사의 교통 및 숙박 등 필요 경비는 실비 지급하며, 직책수당의 경우 직책 중복수행 시 중복 지급 없이 최고금액만 지급합니다.)

(1) 사외이사 이윤재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87.5백만	
기본급	48백만	
상여금	-	
기타 수당	39.5백만	회의수당 및 직책수당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무	
건강검진 지원	2회	종합검진(본인, 배우자)
차량제공	무	
사무실제공	무	
기타 편익제공	무	

(2) 사외이사 성재호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85.5백만	
기본급	48백만	
상여금	-	
기타 수당	37.5백만	회의수당 및 직책수당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무	
건강검진 지원	2회	종합검진(본인, 배우자)
차량제공	무	
사무실제공	무	
기타 편익제공	무	

(3) 사외이사 윤재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86.5백만	
기본급	48백만	
상여금	-	
기타 수당	38.5백만	회의수당 및 직책수당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무	
건강검진 지원	1회	종합검진
차량제공	무	
사무실제공	무	
기타 편익제공	무	

(4) 사외이사 진현덕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72.5백만	
기본급	48백만	
상여금	-	
기타 수당	24.5백만	회의수당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무	
건강검진 지원	무	
차량제공	무	
사무실제공	무	
기타 편익제공	무	

(5) 사외이사곽수근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88백만	
기본급	48백만	
상여금	-	
기타 수당	40백만	회의수당 및 직책수당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무	
건강검진 지원	2회	종합검진(본인, 배우자)
차량제공	무	
사무실제공	무	
기타 편익제공	무	

(6) 사외이사 배운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80.5백만	
기본급	48백만	
상여금	-	
기타 수당	32.5백만	회의수당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무	
건강검진 지원	무	
차량제공	무	
사무실제공	무	
기타 편익제공	무	

(7) 사외이사 이용국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85백만	
기본급	48백만	
상여금	-	
기타 수당	37백만	회의수당 및 직책수당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무	
건강검진 지원	2회	종합검진(본인, 배우자)
차량제공	무	
사무실제공	무	
기타 편익제공	무	

(8) 사외이사 최재봉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87.5백만	
기본급	48백만	
상여금	-	
기타 수당	39.5백만	회의수당 및 직책수당 (전년도 오류 미지급 직책수당 정산분을 포함함)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무	
건강검진 지원	무	
차량제공	무	
사무실제공	무	
기타 편익제공	무	

(9) 사외이사 김조설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76백만	
기본급	48백만	
상여금	-	
기타 수당	28백만	회의수당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무	
건강검진 지원	무	
차량제공	무	
사무실제공	무	
기타 편익제공	무	

라. 사외이사 교육·연수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와 금융환경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별 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교육·연수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성명	이운재	성재호	진현덕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봉	김조설
최초 선임 일자	19. 3. 27	19. 3. 27	20. 3. 26	20. 3. 26	21. 3. 25	21. 3. 25	21. 3. 25	21. 3. 25	22. 3. 24
2019-1.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 2019.4.8 (3시간, 신임사외이사 오리엔테이션) - 내용 : 2019년 사업계획 및 재무계획, 사외이사 관련 주요 사항 안내, 지분공시 및 공정공시 연수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2019-2.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 2019.5.14 (2.5시간, 외부세미나) - 내용 : 新외부감사법 도입 원년, 감사위원회의 과제와 역할수행방안(삼정KPMG 주관)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비대상)	참석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2019-3.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 2019.10.10 (2시간, 이사회워크숍) - 내용 : "외부(투자자)시각에서 보는 2020년 한국경제 전망과 신한금융그룹" (강사 : 모건스탠리 석준 상무)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2019-4.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 2019.10.11 (3시간, 이사회워크숍) - 내용 : 거시환경 및 업권별 전망 및 Q&A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2019-5.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 2019.10.31 (1시간, 감사위원회 내부교육) - 내용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모범규준 교육 (정인회계법인 위설향 상무)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2020-1.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 2020.1.21 (1시간, 준법교육 연수) - 내용 : 사외이사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비대상)	(비대상)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사외이사 성명	이윤재	성재호	진현덕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봉	김조설
최초 선임 일자	19. 3. 27	19. 3. 27	20. 3. 26	20. 3. 26	21. 3. 25	21. 3. 25	21. 3. 25	21. 3. 25	22. 3. 24
2020-2.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0.4.23 (3시간, 신입사외이사 오리엔테이션) - 내용: 2020년 사업계획 및 재무계획, 사외이사 관련 주요 사항 안내, 지분공시 및 공정공시 연수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비대상)	(비대상)	참석	참석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2020-3.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0.5.20 (1시간, 감사팀) - 내용: 감사위원 대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비대상)	참석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2020-4.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0.7.24 (3시간, 외부세미나) - 내용: 제6회 삼정KPMG Audit Committee Institute(삼정KPMG 주관)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비대상)	참석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2020-5.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0.09.02 (4시간,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워크숍) - 내용: 기후변화(TCFD) 트렌드(UNEP FI 한국대표 임대웅) 글로벌 ESG 트렌드 및 이해관계자와의 대응전략(MORROW SODALI)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비대상)	(비대상)	참석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2020-6.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0.10.06 (3시간, 이사회워크숍) - 내용: 2021년 경제전망 발표(미래전략연구소 이견혁 소장) 주가흐름 및 Valuation 제고 방안(크레디트스위스)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2020-7.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0.11.12 (1시간, ESG 연수) - 내용: 지속가능경영과 ESG의 전략적 활용(고려대 경영대학 이재혁 교수)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2020-8.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0.11.12 (1시간, 위험관리위원회 내부교육) - 내용: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에이블컨설팅 이창주 대표)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취임전)
2021-1.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1.4.20 (4시간, 신입사외이사 오리엔테이션) - 내용: 2021년 사업계획 및 재무계획, 사외이사 관련 주요 사항 안내, 지분공시 및 공정공시 연수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취임전)
2021-2.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1.5.13 (1시간, 서분회계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 내용: 연결내부회계제도 도입 및 시사점, 감사위원회의 역할 등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비대상)	참석	참석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취임전)
2021-3.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1.5.14 (2시간, 이사회 간담회1) - 내용: 이사회 운영방식의 개선-확충 문제 등에 관한 논의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취임전)
2021-4. 교육 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1.7.22 (3시간,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 내용: 동영상 드라마를 통한 감사위원회 활동 사례 연구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비대상)	참석	참석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취임전)

사외이사 성명	이윤재	성재호	진현덕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봉	김조설
최초 선임 일자	19. 3. 27	19. 3. 27	20. 3. 26	20. 3. 26	21. 3. 25	21. 3. 25	21. 3. 25	21. 3. 25	22. 3. 24
2021-5.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1.8.12 (1시간, 안전회계법인 IFRS 교육) - 내용: IFRS 17 이해 및 도입 영향 등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비대상)	참석	참석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취임전)
2021-6.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1.8.13 (2시간, 이사회 간담회2) - 내용: 투자자 대상 레터 발송 등에 관한 논의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취임전)
2021-7.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1.10.05 (2시간, 이사회 간담회3) - 내용: 그룹 디지털 전략 리뷰 및 개선 방향 등에 관한 논의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취임전)
2021-8.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1.10.05 (9시간, 이사회워크숍) - 내용: 2022년도 경제/금융시장 전망 및 핵심경영아젠다 논의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취임전)
2021-9.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1.11.18 (1시간, 자금세탁방지 교육) - 내용: 국내자금세탁방지제도 현황 및 가상자산 관련 교육 (able 컨설팅 이창주)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취임전)
2021-10.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1.11.18 (1시간, 위험관리위원회 교육) - 내용: 기후변화 리스크관리를 위한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 측정 및 관리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참석	참석	(취임전)
2021-11.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1.11.18 (2시간, 이사회 간담회4) - 내용: 투자자 미팅 결과보고, 윤리준법 경영 강화 등에 관한 논의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취임전)
2021-12.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1.12.9 (1시간, 위험관리위원회 교육) - 내용: 바젤3 유동성리스크의 이해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참석	참석	(취임전)
2021-13.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1.12.16 (2시간, 이사회 간담회5) - 내용: 신한금융그룹 운영 개선과제 및 디지털 관련 현안에 관한 논의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취임전)
2022-1.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2.03.02 (2시간, 이사회 간담회1) - 내용: 신한금융그룹에 대한 시장 애널리스트 평가 청취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비대상)
2022-2.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2.4.21 (3시간, 신입사외이사 오리엔테이션) - 내용: 2022년 사업계획 및 재무계획, 사외이사 관련 주요 사항 안내, 지분공시 및 공정공시 연수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참석

사외이사 성명	이윤재	성재호	진현덕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봉	김조설
최초 선임 일자	19. 3. 27	19. 3. 27	20. 3. 26	20. 3. 26	21. 3. 25	21. 3. 25	21. 3. 25	21. 3. 25	22. 3. 24
2022-3.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2.5.12 (1시간, 위험관리위원회 교육) - 내용: ESG 및 기후리스크 관련 현황 및 그룹 대응 방향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참석	참석	(비대상)
2022-4.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2.5.13 (4시간, 상반기 이사회워크숍) - 내용: ESG경영_기획에서 실행으로 /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시대의 도래 / 그룹 자산운용 전략방향성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022-5.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2.8.12 (1시간, 외부교육) - 내용: 한영회계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비대상)	참석	(비대상)	참석	참석	참석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2-6.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2.09.05 (2시간, 외부교육) - 내용: SB)은행 고객/영업 현황 보고 및 일본 현지화 전략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022-7.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2.09.22 (4시간, 외부교육) - 내용: 삼정KPMG Audit Committee 교육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비대상)	불참	(비대상)	참석	참석	참석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2-8.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2.10.6 (3시간, 하반기 이사회워크숍) - 내용: 2023년 경제 금융시장 전망 및 경영계획, 재무계획, 리스크관리 방향성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점검 / 자본시장 육성 방향성 / 인오가닉 성장 및 포트폴리오 방향성 확인 / 재무 및 리스크관리에 관한 질의응답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022-9.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2.10.6 (1시간, 이사회간담회2) - 내용: 그룹 경영 현안 논의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022-10.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2.11.10 (1시간, 준법교육 연수) - 내용: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에이블컨설팅 이창주 대표)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022-11.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2.11.10 (1시간, 위험관리위원회 교육) - 내용: 운영리스크 관리의 이해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참석	참석	(비대상)
2023-1.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3.04.27 (1시간, 이사회간담회1) - 내용: 이사회 운영 개선, 2023년 이사회워크숍에 대한 의견 수렴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023-2.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3.05.11 (0.5시간, 준법 교육연수) - 내용: 내부통제 교육(법무법인 율촌 김시목 변호사)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사외이사 성명	이윤재	성재호	진현덕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봉	김조설
최초 선임 일자	19. 3. 27	19. 3. 27	20. 3. 26	20. 3. 26	21. 3. 25	21. 3. 25	21. 3. 25	21. 3. 25	22. 3. 24
2023-3.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3.05.11 (3시간, 이사회워크숍1) - 내용: 그룹 신사업부문 추진현황, 그룹 CEO 경영 방향성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023-4.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3.08.09 (1시간, 감사위원회 교육) -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프로세스 및 핵심감사대상 운영현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참석	참석	참석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5.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3.08.10 (3.5시간, 이사회워크숍2) - 내용: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그룹 DT Journey, 그룹 내부통제 강화 방안, 신한의 경쟁력 현황 및 중장기 과제, 그룹CEO 경영방향성 Follow-up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023-6.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3.09.07 (3.3시간, 외부 교육) - 내용: 신한 베트남 (은행, 카드, 라이프, 투자증권, DS) 업무보고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023-7.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3.09.07 (1시간, 이사회간담회2) - 내용: 차기 이사회, 이사회워크숍 등의 논의 과제 점검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023-8.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3.10.06 (1시간, 위험관리위원회 교육) - 내용: 기후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및 활용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비대상)	참석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참석	참석	(비대상)
2023-9.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3.10.06 (3.5시간, 이사회워크숍3) - 내용: 2024년도 그룹 경영계획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023-10.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3.11.09 (1시간, 위험관리위원회 교육) - 내용: 자본비율 규제 변화에 대한 이해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비대상)	참석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참석	참석	(비대상)
2023-11.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3.11.09 (1시간, 이사회간담회3) - 내용: 지배구조 Best Practice 마련 TF 경과보고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023-12.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3.11.09 (1시간, 준법 교육연수) - 내용: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요, 국내 AML/CFT 규제동향, 국내외 금융회사 등 제재 사항 등 (에이블컨설팅 최대진 이사)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023-13.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일시: 2023.12.19 (1시간, 이사회간담회4) - 내용: 향후 이사회 구성에 대한 논의								
사외이사별 참석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마.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당사 사외이사 최초 임기를 2년, 이후 연임시 1년으로 하고 있으며, 재선임을 위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경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외이사 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4조 제4항,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0 제3항 및 제7항). 현재 이사회에서 결의한 평가방법에 의거,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5년도 제2회 임시이사회(2015. 2.24)에서 지배구조 관련 제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모범규준에 명시된 사외이사 내부평가기준에 대한 외부기관 자문 및 사외이사 외부평가 도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① 평가 주체:

당사 이사회는 전년도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익년 초에 실시하였으나, 2023년부터 사외이사 후보추천 인선자문단을 도입함에 따라 인선자문단이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에 대한 추천 자문 의견을 논의할 때 평가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해년도 12월에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② 평가 기준:

당사 이사회는 2010년 3월 24일개최된 제2회 임시이사회에서 '사외이사제도 운영관련 평가방법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 사외이사 내부평가 제도를 최초로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4월 7일 개최된 제4회 임시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평가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 평가방법을 일부 수정하였고, 또한 2015년 2월 24일 제2회 임시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평가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 이전 모범규준의 사외이사 적극적 자격요건인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의 네 가지 항목과 12개 세부평가지표를 재구성함으로써 모범규준의 취지에 부합한 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개최한 제11회 임시이사회에서는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평가 기준 보완의 건'을 결의하고, 확장된 업무 범위 및 수준을 반영하여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노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보완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9일 개최한 제4회 정기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평가 기준과 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평가 시기는 새로이 도입한 인선자문단의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추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11월 중순에서 12월 사이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기존 30%를 반영하던 자기 평가 비중을 삭제하고 동료 평가(peer 평가) 비중을 60%에서 90%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다만, 평가 비중의 변경은 2024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사외이사 평가'는 2023년 11월 중에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는 인선자문단의 2024년 1월 회의에 참고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인선자문단의 자문 의견과 평가결과를 사외이사의 재선임 고려 차원에서 2024.2.8 개최한 제1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③ 평가 절차:

사외이사 평가는 우편 및 온라인을 통한 설문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④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당사 이사회는 평가주체, 기준, 방법 등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의 전과정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사외이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5년도 제2회 임시이사회(2015.2.24)에서 지배구조 관련 제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사외이사 내부평가기준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① 총론

2023년 사외이사 평가는 자기평가(본인 평가), 이사회평가(본인을 제외한 사외이사 전원에 대한 평가), 직원평가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2023년말 재임하고 있는 총 9명 사외이사 전원이 사외이사 직무에 대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기대 수준 부합 이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4년 1월 진행된 인선자문단 회의에서도 2024년 3월 제23기 정기주주총회 기준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 8명 모두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선임 의견을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전달하였으며, 2024년 2월 개최된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전원이 재선임 추천되었습니다.

평가 항목(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별 평균값 역시 사외이사 직무에 대한 기대 수준 이상의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②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 이윤재

- ㄱ. 전문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 ㄴ. 직무공정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 ㄷ. 윤리책임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 ㄹ. 충실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 ㅁ. 총평

이윤재 이사는 오랜 기간 금융 관련 공직수행 경험과 다양한 기업에서 다년간 사외이사 경험을 통해 체득한 폭넓은 지식과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 미래 방향성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은 물론, 경영진에게 실효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며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사회 의장으로서 책임감과 문제해결 능력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출에 기여하였으며, 높은 윤리의식과 공정성으로 동료 이사들로부터 신뢰를 받았습니다. 성실성을 바탕으로 업무에 높은 관심과 열정을 보이며, 경영진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앞장서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평가되었습니다.

- 성재호

- ㄱ. 전문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 ㄴ. 직무공정성 : 사외이사로서 기대수준 이상의 강점을 보임
- ㄷ. 윤리책임성 : 사외이사로서 기대수준 이상의 강점을 보임
- ㄹ. 충실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 ㅁ. 총평

성재호 이사는 국제법 전공 교수로서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이슈를 법률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쟁점을 보완하며,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폭넓은 식견을 겸비하여 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공유하였습니다. 당사 외 주력 자회사인 신한카드 사외이사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신한금융그룹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명감과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경영의 관리·감독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그룹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뛰어난 친화력과 소통 능력으로 사외이사 간 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균형 있는 업무 처리와 실무 직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핵심 사안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며 사외이사로서 충실하게 활동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윤재원

- ㄱ. 전문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 ㄴ. 직무공정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 ㄷ. 윤리책임성 : 사외이사로서 기대수준 이상의 강점을 보임
- ㄹ. 충실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 ㅁ. 총평

윤재원 이사는 회계·세무 분야의 전문가로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그룹 전반의 재무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을 검토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회사가 당면하고 있는 회계적 이슈와 현안에 대해 시의적절한 의견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그룹의 건전경영과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윤재원 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적합한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도적인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서 활발한 의견 개진으로 안건 논의에 깊이를 더하였습니다. ESG 이슈, 특히 다양성 과제에 대한 지식과 열의가 높고, 새로운 ESG 트렌드를 학습하여 공유하며, 그룹 임직원의 다양성과 양성평등, 복지 등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언하여 신한 문화의 혁신과 개선을 선도하는 등 그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윤재원 이사는 금년도 이사회와 본인이 소속된 이사회내위원회 일정에 모두 참여하고 다양한 교육연수에 참석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진현덕

- ㄱ. 전문성 : 사외이사로서 기대수준 이상의 강점을 보임
- ㄴ. 직무공정성 : 사외이사로서 기대수준 이상의 강점을 보임
- ㄷ. 윤리책임성 : 사외이사로서 기대수준 이상의 강점을 보임
- ㄹ. 충실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 ㅁ. 총평

진현덕 이사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다양한 일본 기업의 경영과 지배구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회사의 재무분석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 및 방침을 검증하여 회사와 그룹의 건전경영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신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룹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영진에게 지속적으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본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일정에 참여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새로운 관점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논의를 활발히 이끄는 등 사외이사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곽수근

- ㄱ. 전문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 ㄴ. 직무공정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 ㄷ. 윤리책임성 : 사외이사로서 기대수준 이상의 강점을 보임
- ㄹ. 충실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 ㅁ. 총평

곽수근 이사는 회계/경영 분야의 국내 최고권위 학자로 회계, 감사 및 내부통제 등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경영진에게 정책적·전략적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그룹의 건전경영과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ESG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ESG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감사위원으로서 내부통제, 내부회계관리, 컴플라이언스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과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충실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질의하고, 숨겨진 문제를 가시화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사회 논의의 활성화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곽수근 이사는 뛰어난 친화력과 소통 능력으로 동료 사외이사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이사회외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였고 교육과 연수 전반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회사와 투자자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충실하게 활동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배훈

- ㄱ. 전문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 ㄴ. 직무공정성 : 사외이사로서 기대수준 이상의 강점을 보임
- ㄷ. 윤리책임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 ㄹ. 충실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 ㅁ. 총평

배훈 이사는 한일 관계의 기업 법무 자문을 특기로 하고 있는 재일한국인 변호사이자 경영학 석사 학위를 이수한 일본의 공인회계사보로서 기업의 채권회수, 회생 등 다방면에 걸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당사가 마주하고 있는 주요 현안과 경영 위험에 관하여 일본의 사례, 법률, 규범 등의 정보를 자세히 공유하였습니다.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부정사건과 스캔들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고, 금융 선진국의 규제와 동향 및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등 그룹의 건전경영과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일본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사회와 이사회내위원회 일정에 참여하고, 동료 사외이사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사외이사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이용국

- ㄱ. 전문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 ㄴ. 직무공정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 ㄷ. 윤리책임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 ㄹ. 충실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 ㅁ. 총평

이용국 이사는 글로벌 대형 로펌의 자본시장 전문 국제변호사로 활동하며 국제금융, 증권발행 업무 및 기업 M&A 분야에 정통하고, 매사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하며, 글로벌 동향과 금융 환경의 변화를 세심하게 파악하여 이사회에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ESG, 디지털 전환, 규제 동향, 경영 위험요인 등 국내 및 해외 금융업 분야의 주요 현안과 변화에 대해 꾸준히 파악하고 학습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슈에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이사회 의 논의를 더욱 활성화하였습니다. 이용국 이사는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깊이 있는 전문성과 높은 윤리의식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감은 물론, 주주 및 전체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과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모든 이사회와 이사회내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는 등 사외이사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최재봉

- ㄱ. 전문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 ㄴ. 직무공정성 : 사외이사로서 기대수준 이상의 강점을 보임
- ㄷ. 윤리책임성 : 사외이사로서 기대수준 이상의 강점을 보임
- ㄹ. 충실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 ㅁ. 총평

최재봉 이사는 오랜 기간 공학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며, ICT 관련 산학협력 활동 및 정부 주도 혁신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정보기술 관련 분야에서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었으며, IT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금융업에 미칠 영향을 통찰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대비를 지원하며, 그룹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려는 열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그룹의 디지털 전환과 전략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트렌드를 반영한 MZ세대 대상 고객 확대 전략에 대한 시의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와 위원회에 공유하며, 다양한 업무 범위에 디지털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언하였습니다. 또한 동료 사외이사들과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이사회와 위원회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 김조설

- ㄱ. 전문성 : 사외이사로서 기대수준 이상의 강점을 보임
- ㄴ. 직무공정성 : 사외이사로서 기대수준 이상의 강점을 보임
- ㄷ. 윤리책임성 : 사외이사로서 기대수준 이상의 강점을 보임
- ㄹ. 충실성 : 사외이사로서 최고 수준의 강점을 보임
- ㅁ. 총평

김조설 이사는 경제학 전공 교수로서 거시경제와 노동경제 분야에 뛰어난 학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회 복지, 소비자 보호, 다양성 증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ESG경영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그룹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이슈들을 주주의 관점에서 원천적으로 검토하고, 그룹 경영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조설 이사는 일본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모두 참여하는 열정과 성실성을 보여주었으며, 존중 의식을 가지고 동료 이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한결 같은 모습으로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평가되었습니다.

(3) 외부평가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해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5년 제2회 임시이사회(2015. 2.24)에서 외부평가에 대한 근거를 내부규정에 반영하였고, 아울러 동 이사회는 사외이사 평가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사외이사 내부평가기준에 대한 외부기관 자문' 및 '사외이사 외부평가'는 향후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입을 검토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바.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당사는 회사와 아래의 14개의 자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SI, 신한벤처투자)

보험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보상하는 손해

(가) 임원의 배상책임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임원의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주주나 제3자(종업원, 소비자, 경쟁업체 등)가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당 임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보상. 부당행위(Wrongful Act)란 임원으로서의 의무위반, 태만, 과실, 누락, 허위진술,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진술을 행하였거나 또는 행하였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임원으로서 배상청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함 (담보범위는 약관 및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Company Reimbursement): 상기 배상청구에 대하여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의 배상책임을 회사가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보상

(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가) 임원의 의도적인 사기행위, 의무해태 또는 고의적인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 (나) 대주주 및 지배주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다)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함으로 취한 이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라) 부정직행위로서 고의적인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 (마)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바) 불법으로 사적인 이익 또는 혜택을 획득한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사)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 (자) 전문직업 수행으로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3) 보험기간 : 2023.4월~2024.3월

(4) 보상한도 : 그룹 총 보상한도 500억원

(5) 담보지역 : 북미지역 포함 전세계

다만, 당사 및 자회사 사외이사의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사외이사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외이사의 자기부담액을 배상책임액의 20%(최대 1억원)로 하는 것을 규정화하였습니다. (당사의 경우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9조제6항에 동 내용 적시)

상기한 내용을 임원책임배상보험에 아래와 같은 특약을 삽입하여 임원책임배상 보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약사항]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른 특약 신설 : 피보험회사 사외이사일 경우 자기부담액을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액의 20%로 한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당사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의장(현 이윤재 의장)이 사외이사를 대표하고 있어 별도의 선임사외이사는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당사는 사외이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이사회 직속 지원부서인 이사회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사무국장의 관할 하에 책임자급 직원 2명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시된 역할에 따라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① 이사회등의 회의 소집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지원
- ② 이사회등의 회의내용 기록 유지
- ③ 이사회등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지원
- ④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 및 자회사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 ⑤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 ⑥ 이사 연수프로그램의 개발/소개 및 실무지원
- ⑦ 신규 선임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수 실시
- ⑧ 이사회 및 이사의 각종 법규준수를 위한 지원
- ⑨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 및 제30조 이사회(이사회내위원회 포함) 및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 ⑩ 기타 이사회등의 지시사항 처리

또한 일부 이사회내위원회는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내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는 감사팀(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팀(위험관리위원회), ESG기획팀(ESG전략위원회), 신한리더십센터(보수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입니다.

아.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당사 및 자회사는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 통상의 금융거래를 위한 일반적 약관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를 제외하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없습니다.

자. 기부금 등 지원내역

사외이사명	기부 받은 비영리법인 등		기부한 금융회사	기부내역	
	법인 등의 명칭	사외이사와의 관계		기 간	금 액
윤 재 원	학교법인 홍익대학교	재직법인 (경영대학 교수)	신한은행 ¹⁾	2021.1	14억원
				2022.1	14억원
				2022.12	32백만원
				2023.1	14억원
	한국회계기준원	소속 단체 (비상임위원)	신한금융지주 ²⁾	2023.11	2억원
이 용 국	(재)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재직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신한은행 ³⁾	2022.6	5백만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신한은행 ⁴⁾	2021.12	8억원

- 주 1) 홍익대학교 주거래은행 협약에 따른 출연금 지급 → 영업목적 기부금으로 공시대상에서는 제외
 - 협약기간 10년('18.1~'28.1), 총 출연금 150억원 (정기발전기금 120억원 + 만리포수련원 임차료 30억원)
 - 정기발전기금 지급 방식 : '18년 2억 / '19년~'26년 매년 11억 / '27년 10억 / 20억원은 별도 요청시 ('18.1월 14.3억원, '22년 12월 32백만원 旣 지급)
 - 만리포수련원 임차료 '18년~'28년 매년 3억원씩 지급 : 통상적인 임차료 수준으로 재산상 이익제공 대상은 아님
- 2) 한국회계기준원의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재단) 지원을 위한 기부 건으로, 국내 기업 환경 등을 IFRS에 적극 반영하고, 한국에 맞는 ISSB 공시기준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지급한 기부금 (23년부터 4년간 총 8억원 기부 예정)
- 3) 신한은행 서울대학교지점에서 영업점 기부금 제도(신한은행 사회공헌부 운영)를 통해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해외 방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서울대학교 이음장학사업에 지급한 기부금
- 4) 주거래은행 협약 신규 체결에 의한 출연금 지급

당사는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비영리법인에 과거부터 정기적으로 기부금 또는 주거래은행 협약에 따른 출연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외이사의 비영리법인 임원 선임 전·후, 그리고 당사 사외이사 선임 전·후로 기부금 금액과 납입 시기에 변동이 없고,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 내역을 보고하여 이해상충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위원회	직위	경력
성재호	2019.3.27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57개월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위원장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9~현재) ·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2021~현재)
이윤재	2019.3.27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57개월	보수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 의장	·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국장(1996~1998) · 대통령비서실 재정경제비서관(1998~1999) · KorEI 대표(2001~2010)
윤재원	2020.3.26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45개월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전략위원회	감사위원회 위원장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2004~현재) · 한국세무학회 부회장(2017~현재) · 한국회계기준원 비상임위원(2023~현재)
진현덕	2020.3.26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45개월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 (주)페도라 대표이사(1986~현재) · 우츠노미야대학 공학연구과 객원교수 (2014~현재) · 사쿠신가쿠인대학 경영학부 객원교수 (2014~현재)
곽수근	2021.3.25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33개월	감사위원회 ESG전략위원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ESG전략위원회 위원장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2018~현재) · 포스코 기업시민자문위원회 위원장 (2019~현재)
배훈	2021.3.25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33개월	감사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	·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2003~현재) · 재일한국인 변호사협회(LAZAK) 공동대표이사(2002~2012)
이용국	2021.3.25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33개월	위험관리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ESG전략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23~현재) ·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선임고문변호사(2023~현재)
최재봉	2021.3.25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33개월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2009~현재) · 성균관대학교 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 (2023~현재)
김조설	2022.3.24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21개월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ESG전략위원회	-	· 신수대학 경제학부 교수(2001~2020) · 오사카상업대학 경제학부 교수(2020~현재) · 동북아시아학회 상임이사 겸 회장(2023~현재)
박안순 (퇴임)	2017.3.23	2023.3.23	72개월	-	-	· 일본 대성상사주식회사 회장(2010~현재) ·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의장 (2018~현재)
허용학 (퇴임)	2019.3.27	2023.3.23	48개월	-	-	· HKMA 대체투자부문 CIO(2008~2014) · First Bridge Strategy Ltd. CEO(2015~현재)
변양호 (사임)	2019.3.27	2023.1.12 (사임)	45개월	-	-	· 금융정보분석원 원장(2004~2005) · VIG파트너스 고문(2016~현재)
박철 (퇴임)	2015.3.25	2021.3.25	72개월	-	-	· 한국은행 부총재(2000~2003) · 리딩투자증권 대표이사 회장(2007~2013)
히라카와 유키 (퇴임)	2015.3.25	2021.3.25	72개월	-	-	· 히라카와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1994~2012) · (유)프리메르코리아 대표이사(2014~현재)
김화남 (퇴임)	2018.3.22	2020.3.26	24개월	-	-	· 제주여자학원 이사장(1995~현재) · 김해상사㈜ 대표이사(1996~현재)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위원회	직위	경력
필립 에이브릴 (퇴임)	2015.3.25	2020.3.26	60개월	-	-	· BNP Paribas 증권 일본 대표 (2011~2019) · BNP Paribas 증권 일본 이사 (2019~현재)
이만우 (퇴임)	2014.3.26	2020.3.26	72개월	-	-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988~2020) · 한·미 공인회계사 · KBS객원해설위원 (2006~현재)
이성량 (퇴임)	2016.3.24	2019.3.27	36개월	-	-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원장 (2015~2018) ·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2007~현재)
박병대 (퇴임)	2018.3.22	2019.3.26	12개월	-	-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17.6~2018.12) · 대법원 대법관(2011.6~2017.5)
주재성 (퇴임)	2017.3.23	2018.12.26	19개월	-	-	· 김앤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 (2016.3~2018.12)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2013~2015)
이상경 (퇴임)	2012.3.29	2018.3.22	72개월	-	-	· 헌법재판소 재판관(2004~2005) ·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변호사(2009~2010) · 법무법인 원전 대표변호사(2010~2014) · 이상경법률사무소 변호사(2014~)
이정일 (퇴임)	2016.3.24	2018.3.22	24개월	-	-	· 재일한국상공회의소 부회장(1995) · 평천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1985~현재)
이혼야 (퇴임)	2016.3.24	2018.3.22	24개월	-	-	· 재일한국상공회의소 상임이사(2014) · 주식회사 마루신 대표이사(前)

2023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
Remuneration System



6.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

가.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 내부규정	123
나.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23
다. 대표이사 회장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24
라. 대표이사 회장 자격충족 여부	125
마.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관리현황	125
바.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125
사. 대표이사 회장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126



6.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

가.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경영승계의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하기 위하여 2011년 8월 25일 이사회에서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現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24일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상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2015년 2월 26일 이사회에서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 과정 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2021년 2월 5일 이사회에서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의 명칭을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의 주요 내용은 대표이사 회장의 자격요건,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종료 사유와 시기,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관리방법, 비상승계계획 등입니다.

나.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당사는 2011년 CEO 승계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회내위원회로 설치하여 그룹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상시 관리함으로써, 안정적 경영승계를 통하여 그룹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회장의 임기만료 시기가 다가오면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승계절차를 개시하여 후보군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함으로써 임기만료 최소 2개월 전에 후보추천에 관한 업무를 종료하며, 이사회는 추천받은 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해 그 적정성을 심의하여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확정합니다. 최종 선정된 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될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승계 준비를 진행함으로써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대표이사 회장 자격요건

대표이사 회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하는 임원의 자격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법 및 시행령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일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7조는 대표이사 회장의 신규 선임 연령을 만 67세 미만으로 하고 있으며, 만 67세 이상인 대표이사 회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재임기간이 만 70세를 넘지 못하도록 연령을 제한하여, 대표이사 회장의 재임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규정 제9조는 도덕성·신한가치 구현능력·업무전문성·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8조에 따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자격요건, 법률요건 및 승계시점의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서의 연령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을 선정하고, 후보군 선발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자회사 CEO 등을 그룹의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으로 선정하여 미래의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양성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탐색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경영승계절차 개시 사유 및 시기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9조에 따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대표이사 회장의 임기가 도래하기 최소 2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에 관한 업무를 종료합니다.

(라) 최종후보자 추천절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자격요건, 법률요건 및 승계시점의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서의 연령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을 선정하고, 승계시점의 그룹 CEO로서 요구되는 전략적 역할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을 심의합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9조에 따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마) 경영승계절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6조에 따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위원회 결의로 추천하면, 이사회는 추천받은 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해 그 적정성을 심의 결의하여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확정합니다. 이사회가 확정된 대표이사 회장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 후보인 이사로 선임되고, 후속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바) 후보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 회장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여 미래의 CEO 후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에 대한 통찰력, 그룹 관점 의사결정, 전략실행/추진력, 리더십/인재육성, 대내외 영향력/CEO 브랜드 등 다양한 개발 프로그램을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육성 후보군의 경영성과 및 개발활동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심의·평가하고, 후보군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2) 비상승계계획

당사는 그룹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규 및 그룹 경영승계계획에 비상승계계획을 포함하여 대표이사 유고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회장이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 상 이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9조는 승계계획 상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가속승계 프로세스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또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9조에 따라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대표이사 회장 대행자 및 회사 운영계획, 대표이사 회장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회장 유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정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비상승계 상황에 따라 승계 절차 진행 방식을 결정하여 차기 그룹 CEO 후보자를 심의 및 추천합니다. 이렇게 추천된 후보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선임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당사는 이사회는 대표이사 회장 유고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비상승계계획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유고 시 대표이사 회장 직무대행 선정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지주회사 주요업무와의 연관성, 직무대행 수행 적합도에 따라 사전에 직무대행 선정 순서를 정함으로써 비상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대표이사 회장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대표이사 회장 자격충족 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관리현황**(1)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관련 지침**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8조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서의 자격요건, 법률요건 및 승계시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을 선정하고, 후보자 선발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군 선발 및 구성, 후보군에 대한 평가 및 자격검증, 후보군 및 최종 후보자 추천을 비롯한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당사는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통한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주요 자회사 CEO 등을 그룹의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으로 선정하여 미래의 그룹 CEO 후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2023년 2월 주요 자회사 CEO 등 9명을 후보군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후보군 육성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관리는 당사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육성후보군의 경영성과와 개발활동을 심의 및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9조에 따라 필요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 추천을 통해 그룹 CEO 후보군을 폭넓게 확보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와 관련된 실무 지원은 지주회사 신한리더십센터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구분	후보군 수	추천 경로
내부	9명	2023년도 제1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육성후보군 9명을 선정함

바.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계획 점검 내역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8조에 따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이 제안한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연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제4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그룹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그룹 경영승계계획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및 이를 반영한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내외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룹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절차가 연간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이 그룹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이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통한 경영의 연속성 확보 및 그룹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사. 대표이사 회장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당사는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한리더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리더십센터는 팀장과 팀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승계 계획 운영 등 경영리더 육성 및 관리, 경영진 성과 보상 및 평가, 그룹 인사정책 방향 수립 및 실행, 그룹 기업문화 방향성 수립 및 전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7조에 따라 상시적인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지원,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그 밖에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8조에 따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그룹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대표이사 후보자 선발·자격요건 충족여부 등을 검증한 결과를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함에 있어 실무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회장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 부서명 : 신한리더십센터

- 직원수 : 총 10명

- 운영 내역

일자	운영내역	비고
2023.2.28	2022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심의 관련 실무 지원 2023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 관련 실무 지원	제1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2023.3.23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관련 실무 지원	제2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2023.5.10	2022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성과평가 보고 관련 실무 지원 2023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개발활동 계획 수립 관련 실무 지원	제3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2023.7.27	그룹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및 이사회 보고 실무 지원	제4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2023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
Remuneration System



7. 감사위원회

가. 역할	128
나. 구성	132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33
라. 감사보조조직 등	143



7. 감사위원회

가. 역할

(1) 총괄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3조)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운영하되, 총위원의 2/3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52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합니다.
-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으로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감사위원회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2조 제5항 및 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감독

①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 이사회등의 안건에 대하여 감사업무규정에 따라 감사팀으로 하여금 사전감사를 실시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팀은 이사회등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감사를 실시하고, 사전감사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 제412조, 감사위원회규정 제4조, 제19조),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2조, 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

감사위원회는 내규의 제정 및 개폐와 부문장 이상의 결재를 요하는 계약 체결 및 계약 내용의 변경, 예산의 전용, 채권의 포기 등 경영진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감사업무규정에 따라 감사팀으로 하여금 사전감사를 실시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 경영진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 203건의 사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정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미국 Sabanes Oxley Act' 등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요청 권한, 외부감사인과의 각종 계약에 대한 사전승인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美 Sarbanes Oxley Act 제202조, 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

감사위원회는 2022년도 중 독립성, 감사품질, 감사시간, 감사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사의 FY2023~2025 외부감사인을 삼정회계법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매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10일 제8회 감사위원회는 FY2022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의 감사인력, 감사시간 등의 감사품질과 감사보수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회사 및 자회사 내부감사부서 및 회계팀 등의 감사품질 Survey 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26일 제15회 감사위원회는 FY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초도감사를 진행중인 삼정회계법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하였습니다.

2023년 중 당사와 삼정회계법인과 감사 업무 및 미국 상장 관련 감사 업무, 비감사 업무 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감사 업무

내용	연간 보수(부가세 제외)
분반기,연간 재무제표검토 및 감사	1,187백만원
신한저축은행 연결목적 국제회계기준 감사	133백만원
계	1,320백만원

② 미국 상장 관련 감사 업무(SEC 20-F Filing)

내용	연간 보수(부가세 제외)
미국 상장 관련 감사 및 재무보고내부통제 감사	2,323백만원

③ 비감사 업무

내용	보수(부가세 제외)
Comfort Letter 발행 업무	100백만원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를 위하여 삼정회계법인 및 제휴 회계법인인 KPMG와 체결하는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감사 및 비감사 계약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포함한 그룹사와 외부감사인간의 비감사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승인 시에는 계약 대상 업무의 美 Sarbanes Oxley Act 제201조,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직무제한)의 준수 여부, 독립성 훼손 가능성, 계약 사유와 계약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3년 중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감사계약 19건과 회사와 신한은행의 확인서한 작성계약 등 비감사계약 5건을 승인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그룹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결과,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2023년 8월 9일 제10회 감사위원회와 2023년 12월 26일 제15회 감사위원회에서는 경영진의 참석을 배제한 외부감사인과의 Private Session을 실시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2023년 5월 10일 제8회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과 1분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를, 2023년 8월 9일 제10회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상반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를 보고하였고, 2023년 11월 8일 제12회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3분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를, 2023년 12월 26일 제15회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평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2023년말 기준으로 회사는 별도의 상임감사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상무

직급의 경영진을 내부감사책임자로 임명하고 감사위원회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13조)

(라) 재무제표 검토 등

① 감사위원회의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에 이사로부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47조의 4, 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

감사위원회는 2023년 3월 6일 제4회 감사위원회에서 FY2022 감사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1. 감사방법의 개요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결과를 보고 받고 그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내부감사부서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대조, 실사, 입회, 조회, 그 밖의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 및 주요 자회사의 회계부서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주요 계정의 증감, 중요한 회계 처리 사항을 보고받고 검토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의 의견과 감사절차를 확인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2. 재무상태표·연결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4. 영업보고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②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 등 (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 제12조, 제17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분(반기) 검토 및 감사 결과와 외부감사인이 검토한 회사의 중요한 회계정책 및 방침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2023년 3월 6일 제4회 감사위원회에서 2022년 외부감사 결과(한국기준)를, 2023년 4월 20일 제6회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의 PCAOB 감사결과(미국기준)를 보고하였으며, 감사의견을 적정의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함)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마)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의 평가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받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이 적정한지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 제15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2023년 2월 28일 제3회 감사위원회에서 2022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와 관련하여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팀을 통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가 적정한지를 독립적으로 점검하고 2023년 2월 28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2023년 2월 28일 제3회 감사위원회에서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바)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감사위원회는 연간 감사계획을 결의하고, 감사팀이 실시한 감사결과를 주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 제15조)

2022년 12월 26일 제15회 감사위원회는 2023년 연간 감사계획을 결의하였고, 2023년 4월 27일에 1분기 감사업무 활동을, 8월 9일에 2분기 감사업무 활동을, 11월 8일에 3분기 감사업무 활동을, 2024년 2월 8일에 4분기 감사업무 활동을 감사팀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매년 연간 감사업무 추진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에 대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13조, 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

2023년 3월 6일 제4회 감사위원회는 제22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감사위원장은 2023년 3월 23일 제2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제출된 의안 및 서류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아) 내부감사책임자의 임면 동의 및 업무성과평가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및 업무성과평가를 통하여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

2023년 12월 7일 제13회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책임자의 2023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결의하였고 2023년 12월 19일 제14회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책임자 임면(신규 선임)에 대한 동의를 결의하였습니다.

(자) 회사 및 자회사의 보고사항 검토

감사위원회는 회사 및 자회사의 금융사고, 전산장애, 감독기관 검사 결과 등과 주요 회계현안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6조)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책임자로부터 신한은행 등 자회사의 금융사고 및 전산장애, 금융감독원 검사결과를, 신한라이프로부터 2023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 1117호(보험계약) 도입 현황 및 K-ICS외부검증 도입 준비 현황을, 회계본부로부터 과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보험계약 회계처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검토하였습니다.

(차)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평가

감사위원회는 연 1회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

2023년 5월 10일 제8회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평가한 결과, 회사는 적합한 내부통제체계와 조직을 갖추고 적절한 통제수단과 소통을 통해 내부통제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9개 자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자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자체 평가하였습니다.

(카)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검토

감사위원회는 연 1회 회사의 공시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

2023년 4월 20일 제6회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검토 결과, 연간 공시계획 수립 등 회사의 공시정책은 공시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수립 및 집행되었으며, 허위공시 또는 공시누락 등의 중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타) 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검토

감사위원회는 연 1회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 제15조)

감사위원회는 감사팀을 통하여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 독립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2년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2023년 2월 28일 이사회에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파) 준법감시인으로부터의 보고사항 검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의 보고내용을 심의합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 제16조).

감사위원회는 그룹 준법감시인으로부터 2023년 2월 8일 제1회 감사위원회와 2023년 7월 27일 제9회 감사위원회에서 2022년 활동결과와 2023년 활동계획, 2023년 상반기 활동결과를 각각 보고받고 심의하였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합니다(정관 제51조, 감사위원회규정 제7조).

2023년 3월 23일 주주총회에서 윤재원 이사는 임기 1년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재추천되어 분리선임되었으며, 곽수근 이사, 배훈 이사는 임기 1년의 사외이사로 재추천되어 선임되었으며, 감사위원으로 재추천되어 선임되었습니다. 윤재원 이사는 2023년 3월 23일 제5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23년말 현재 감사위원회는 회계·재무전문가와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재원 감사위원과 곽수근 감사위원은 회계학 교수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에 해당합니다.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요건>

1.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2) 구성원

<2023.3월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비고
윤재원	사외	위원장	2022.3.24	2023.3.23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회계학 박사)
배 훈	사외	위원	2022.3.24	2023.3.23	법률 전문가
성재호	사외	위원	2022.3.24	2023.3.23	법률 전문가
곽수근	사외	위원	2021.3.25	2023.3.23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회계학 박사)

<2023.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비고
윤재원	사외	위원장	2023.3.23	2024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회계학 박사)
배 훈	사외	위원	2023.3.23	2024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	법률 전문가
곽수근	사외	위원	2023.3.23	2024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회계학 박사)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3년에는 총 15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결의사항 22건, 보고 및 심의사항 47건 등 총 69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보조조직인 감사팀을 직접 지휘하여 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자회사의 감사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회사 및 자회사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운영,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공시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그룹 준법감시인 활동계획 및 활동결과,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등을 보고받고 심의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분(반)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매분기 직접 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충분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회사 경영진의 배척이 없는 외부감사인과의 Private Session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결산감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주요 자회사 회계팀장 및 외부감사인과의 대면회의를 통해 주요 계정의 증감 내용, 외부감사 절차, 외부 감사 과정의 중요 이슈 사항 등을 보고받았으며, 2023년도에는 새로 시행된 주요 회계기준인 IFRS17 관련 주요 회계정책과 재무적 영향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2023년 중 감사위원회는 예방적감사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그룹 내부거래 모니터링과 회계부문 감사 강화, 새로운 위험 영역에 대한 감사 강화, Data에 기반한 감사체계 구축, IT부문에 대한 독립적 감사 수행, 일선 사업부서의 내부통제 강화 등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감사팀은 예방적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한 고위험 영역에 대한 감사, 내부통제 중점 점검, 그룹 연결 내부거래 모니터링, 소규모 자회사에 대한 회계부문 중점 점검을 수행하고, IT감사인력을 총원하여 ICT 및 정보보호 부문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그룹 회계감사 실무자 협의체를 신설하여 그룹 감사부서 간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2선 및 3선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위험평가체계 마련,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점검, 소규모 자회사 등에 대한 컨설팅 중심 점검활동, 주요 자회사의 외부감사인 활동에 대한 중간평가 확대, 자회사에 대한 IT감사 실시 등을 요청하였으며, 그룹 IT감사 실무자 협의체를 신설하여 IT부문 감사 기법과 사례를 공유하는 등 그룹 감사부서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3년도 제1회 감사위원회: 2023.2.8 (수)

[안건통지일: 2023.2.1(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윤재원	곽수근	배훈	성재호	
1. 사외이사 성명	윤재원	곽수근	배훈	성재호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 시행 주요 회계기준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그룹 준법감사인 2022년도 활동 내용 및 2023년도 업무 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2022년도 4분기 감사활동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감사업무 관련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2023년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 기준 보고	특이의견 없음				
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검토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사.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감사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3년 내부감사책임자 업무성과 목표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인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감사계약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미국상장기준 감사계약 및 신한펀드파트너스 등 4개 자회사 등이 회사의 외부감사인과 체결하는 감사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결의안건인 2023년도 내부감사책임자 업무성과 목표 설정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내부통제 중심 감사 강화, 감사위원회 지원 충실화, 감사업무 효율화 및 팀원 역량 강화 추진의 4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목표별 세부추진과제에 대해 정량적 측정지표와 정성적인 기대달성수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결산 내부거래 모니터링 등 회계감사 강화를 통해 회계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선 사업부서의 내부통제 역할 등을 점검하여 그룹 내 공통 기준을 마련, 내부적으로는 감사 Data 관리를 통해 Data에 기반한 감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보고안건인 2023년 시행 주요 회계기준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신한라이프로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 도입에 따른 주요 회계정책 및 재무적 영향, 경영관리 방향 등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그룹 준법감사인 2022년도 활동 내용 및 2023년도 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사인으로부터 2022년도의 그룹 내부통제 활동 효과성 제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지원 강화, 자금세탁방지 및 법률지원 고도화 그리고 윤리준법 문화 RE:Boot를 위한 그룹 윤리강령 개정 등의 추진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2023년에는 그룹 삼선(三線) 방어체계 강화 및 운영 고도화, 내부통제·AML 선제적 모니터링 체계 도입, 지주사 내부통제 강화 및 법무 Risk 체계적 관리, 윤리준법 문화 확산 및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등의 중점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2022년도 4분기 감사활동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2022년 4분기 중 실시한 신한라이프 종합감사, 신한자산신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등 부문감사 7건 수행 보고와 분기 중 감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2건의 감사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2023년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 기준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세부 평가기준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보고안건인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검토 결과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미국 PCAOB 기준의 최종 독립성 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고 커뮤니케이션하였습니다.

보고안건인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2022.11.1 ~ 2023.1.31 기간 중 개최된 자회사 감사위원회의 개최현황 및 회계관련 주요 의사록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나) 2023년도 제2회 감사위원회: 2023.2.23 (목)

[안건통지일: 2023.2.16(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윤재원	곽수근	배훈	성재호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내부감사부서의 2022년 회계감사 중간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외부감사인의 2022년 핵심감사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보고안건인 내부감사부서의 2022년 회계감사 중간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결산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기말평가 관련 진행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외부감사인의 2022년도 핵심감사사항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2022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평가, 신한투자증권의 자체평가 대상 수준3 분류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등 핵심감사사항 선정 결과와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세부 감사절차를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회사 및 주요 자회사(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의 재무제표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해당 자회사 회계팀장과 삼일회계법인의 자회사별 담당 회계사로부터 주요 계정의 증감 내용, 그룹 감사업무 현황, 주요 자회사 이슈사항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다) 2023년도 제3회 감사위원회: 2023.2.28 (화)

[안건통지일: 2023.2.21(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윤재원	곽수근	배훈	성재호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2년도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재무제표 및 주식 변동 내역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감사위원회 활동 평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바. 2022년도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4. 결의안건					
가.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감사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자회사 등의 비감사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인 2022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2022년말 현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의안건인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등 내부감시장치 운영 현황 점검 결과, 2022년말 현재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의안건인 감사위원회규정 개정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자회사 감사 결과에 따른 제재 기능 일원화를 위해 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경영진 제재 조치요구를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결의안건인 자회사 등의 비감사계약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신한은행과 회사의 외부감사인과의 확인서한(Comfort Letter) 작성 비감사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보고안건인 2022년도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로부터 2022년말 현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재무제표 및 주식 변동 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결산 승인 후 재무제표 및 주식 변동 내역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감사업무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지주회사에 대한 12개 부문감사, 신한라이프 등 3개 자회사에 대한 종합감사, 복합점포 내부통제 적정성 등 8개 영역에 대한 자회사 부문감사 추진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정책과 절차, 통제활동 등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감사위원회 활동 평가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2022년 감사위원회 운영 활동에 대한 감사위원의 평가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2022년도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라) 2023년도 제4회 감사위원회: 2023.3.6 (월)

[안건통지일: 2023.2.27(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윤재원	곽수근	배훈	성재호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2년도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제22기 결산감사 결과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수정가결
나. 제22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에 대한 의견진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3년도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 기준(안)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인 제22기 결산감사 결과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제2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거나 자산, 부채 및 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오류 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감사보고서 표현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결의하였습니다.

결의안건인 제22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에 대한 의견진술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제22기 정기주주총회의 부의안건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의안건인 2023년도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 기준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2023년도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 기준을 결의하였습니다.

보고안건인 2022년도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22년의 재무제표 감사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마) 2023년도 제5회 감사위원회: 2023.3.23 (목)

[안건통지일: 2023.3.16(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윤재원	곽수근	배 훈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권한 위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인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권한 위임의 건과 관련하여 윤재원 감사위원을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규정 제13조 (권한 위임 등)에 따른 권한 위임 사항을 윤재원 감사위원장에게 위임 결의하였습니다.

(바) 2023년도 제6회 감사위원회: 2023.4.20 (목)

[안건통지일: 2023.4.13(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윤재원	곽수근	배 훈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2년도 외부감사인의 PCAOB 기준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공시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검토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자회사 등의 감사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인 자회사 등의 감사계약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신한베트남은행 등 4개 자회사 등이 회사의 외부감사인과 체결하는 감사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보고안건인 2022년도 PCAOB 기준 감사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비상장 기준 공시용 재무제표 및 재무보고 내부통제의 감사결과(적정의견)를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공시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검토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2022년 공시정책 수립 및 공시 집행 절차 등의 적정성 검토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2023.2.1 ~ 2023.3.31 기간 중 개최된 자회사 감사위원회의 개최현황 및 회계관련 주요 의사록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사) 2023년도 제7회 감사위원회: 2023.4.27 (목)

[안건통지일: 2023.4.20(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윤재원	곽수근	배 훈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2023년도 1분기 감사활동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보고안건인 2023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2023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일정, 범위, 교육 계획 등의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2023년도 1분기 감사활동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2023년 1분기 중 실시한 공시감사 등 6건의 부문감사 수행 및 분기 중 감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신한라이프 종합감사 결과 등 7건의 감사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아) 2023년도 제8회 감사위원회: 2023.5.10 (수)

[안건통지일: 2023.5.3(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윤재원	곽수근	배 훈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 외부감사인인 감사 업무 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2023년 1분기 외부감사인인 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2022년 외부감사인인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감사위원회 역할 및 2023년도 운영 일정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감사 및 비감사 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인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감사 및 비감사계약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외부감사인과 체결하는 확인서한(Comfort Letter)작성 비감사계약과 신한컴보디아은행이 회사의 외부감사인과 체결하는 감사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보고안건인 2023년 외부감사인인 감사 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2023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계획, 유의한 위험 및 핵심감사사항 등의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2023년 1분기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신한은행과 신한카드의 총당금 적립사항, IFRS17도입으로 인한 보험계약 회계처리 이슈 등의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2022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2022년도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 만족도 평가 결과와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인력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2022년 회사 및 9개 자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감사위원회 역할 및 2023년도 운영 일정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주요 역할 및 2023년도 연간 예상 일정을 보고받았습니다.

(자) 2023년도 제9회 감사위원회: 2023.7.27 (목)

[안건통지일: 2023.7.20(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윤재원	곽수근	배 훈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그룹연결기준 新보험기준서 적용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2023년도 상반기 그룹준법감시인 활동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자회사 등의 비감사 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인 자회사 등의 비감사 계약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신한은행이 회사의 외부감사인과 체결하는 확인서한(Comfort Letter) 작성 비감사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보고안건인 그룹연결기준 新보험기준서 적용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IFRS17 도입에 따른 그룹연결기준 회계처리 적용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2023년도 상반기 그룹준법감시인 활동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2023년도 상반기 중 그룹사 일선 자체 모니터링 제도 운영 적정성 점검, 고령자 고객 내부통제 적정성 특별 점검, 지주회사 법규준수 점검 등의 내부통제 점검활동, 그룹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활동, 법무업무 수행, 준법감시 교육 활동, 그룹 내부고발제도 운영 현황 등의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차) 2023년도 제10회 감사위원회: 2023.8.9 (수)

[안건통지일: 2023.8.2(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윤재원	곽수근	배 훈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감사업무 관련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2023년 2분기 감사활동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2023년 상반기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보고안건인 감사업무 관련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현지조치사항, 신한은행 금융감독원 수시검사 결과, 그룹 감사업무 관련 IT시스템 현황, 2023년 외부감사인의 인력투입 계획에 대한 검토결과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2023년도 2분기 감사활동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2023년 2분기 중 실시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적정성 평가, 신한캐피탈 부문감사, 신한벤처투자 부문감사 등의 수행 내용과 분기 중 감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3건의 감사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2023.4.1 ~ 2023.6.30 기간 중 개최된 자회사 감사위원회의 개최현황 및 주요 의사록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2023년 상반기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신한은행의 PD변경 적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익스포저 및 총당금 현황, 감독원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등 주요 회계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았습니다.

(카) 2023년도 제11회 감사위원회: 2023.10.6 (금)

[안건통지일: 2023.9.27(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윤재원	곽수근	배 훈	
1. 사외이사 성명	윤재원	곽수근	배 훈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추가 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K-ICS 외부검증 도입 준비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부문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내부감사부서의 2023년 회계감사 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자회사 등의 감사 및 비감사 계약 승인 및 추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인 자회사 등의 감사 및 비감사 계약 승인 및 추인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신한캐나다은행, 신한투자증권 홍콩법인, 신한라이프(K-ICS감사)와 회사의 외부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신한자산운용과 회사 외부감사인과의 GIPS인증 비감사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보고안건인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추가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IFRS 17 도입시 회사의 과거 사업결합 회계처리 재수행 관련 감사업무 추가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K-ICS 외부검증 도입 준비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신한라이프로부터 2023년 시행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따른 외부검증 등 준비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부문감사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 지배구조, 업무프로세스, 의사소통체계 등 감사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내부감사부서의 2023년 회계감사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2023년도 결산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타) 2023년도 제12회 감사위원회: 2023.11.8 (수)

[안건통지일: 2023.11.1 (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윤재원	곽수근	배 훈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평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주요 자회사 내부통제 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감사업무 관련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2023년도 3분기 감사활동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2023년도 3분기 외부감사인인 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바.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자회사 등의 감사 및 비감사 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인 자회사 등의 감사 및 비감사 계약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신한중국유한공사, 멕시코신한은행, 신한은행 마닐라지점과 회사 외부감사인과의 감사계약과 신한자산운용과 회사 외부감사인과의 감사 및 비감사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보고안건인 2023년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평가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2023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중간평가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주요 자회사 내부통제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그룹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주요 자회사 내부통제 체계 진단 내용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감사업무 관련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신한자산운용 외부감사인 지정통지 등의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2023년 3분기 감사활동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2023년 3분기 중 실시한 그룹 내부자본 적정성, 금융상품 관련 내부통제, 제주은행 부문감사, 내부감사협의제도,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신한카드 종합감사 수행과 분기 중 감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4건의 감사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2023년 3분기 외부감사인인 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감사절차 현황, 신용 LGD 미래경기전망 반영 등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2023.7.1 ~ 2023.9.30 기간 중 개최된 자회사 감사위원회의 개최현황 및 회계관련 주요 의사록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파) 2023년도 제13회 감사위원회: 2023.12.7 (목)

[안건통지일: 2023.11.30. (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윤재원	곽수근	배 훈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감사업무 관련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내부감사부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중간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2023년도 내부감사책임자 업무성과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년도 내부감사부서 예산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감사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인 2023년도 내부감사책임자 업무성과평가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2023년도 내부감사책임자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를 결의하였습니다.

결의안건인 2024년도 내부감사부서 예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2024년도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결의안건인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감사계약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2023년도 외부감사 추가계약과 신한라이프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부감사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보고안건인 감사업무 관련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자회사 전산장애 발생 내용과 재발방지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내부감사부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중간평가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2023년도 내부감사부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중간평가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하) 2023년도 제14회 감사위원회: 2023.12.19 (화)

[안건통지일: 2023.12.12(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윤재원	곽수근	배 훈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내부감사책임자 임면 동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인 내부감사책임자 임면 동의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책임자의 신규선임을 결의하였습니다.

(거) 2023년도 제15회 감사위원회: 2023.12.26 (화)

[안건통지일: 2023.12.19(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윤재원	곽수근	배 훈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 외부감사인 감사활동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특이의견 없음			
나. 2023년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평가 결과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자회사 등의 감사 및 비감사 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3년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4년 감사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인 자회사 등의 감사 및 비감사 계약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SBJ은행과 회사 외부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신한은행과 회사 외부감사인과의 확인서한(Comfort Letter) 작성 비감사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결의안건인 2023년도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2023년 자회사 상근감사위원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결의안건인 2024년 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2024년도 연간 감사업무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보고안건인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2023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안건인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평가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근거, 목적, 범위, 주요업무 등 중간평가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3) 평가

감사위원회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9조(이사회내위원회) 제4항에 의거 연 1회 위원회 운영과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향후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고 있으며,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평가목적: 위원회 운영 지원 시 참고자료 활용

(나) 평가주체: 위원 전원에 의한 평가

(다) 평가기준:

- ① 운영평가: 회의 개최빈도의 적정성, 회의시간의 적정성, 안건의 범위와 깊이의 적정성, 회사의 충분한 정보제공 여부
- ② 역할평가: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상 명시된 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한 업무 수행 적정성 평가

(라) 평가방법(절차): 5점 척도 설문 평가, 평가 공정성 및 평가자 익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업체를 통한 평가 실시

2023년도 감사위원회 평가 결과 감사위원회 운영 및 역할 수행은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지배구조법’은 감사위원회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내부감사부서 설치 근거를 내규에 규정하였으며, 감사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내부감사책임자가 내부감사부서를 통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사전문 인력을 충원·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업무규정 제6조)

감사팀은 내부감사책임자 1명, 팀장 1명, 팀원 8명(2023년말 현재)으로, 감사팀원은 재무위험관리자(FRM), 공인회계사(CPA) 등의 책임자 이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자회사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회사의 감사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은 전년도말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회사 및 자회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연 1회 감사업무추진실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주요 보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보고대상	보고 및 지원내용
2023.02.08	감사위원회	2022년도 4분기 감사활동 결과
2023.02.23	감사위원회	내부감사부서의 결산감사 중간 보고
2023.02.28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2023.02.28	감사위원회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2023.02.28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2022년도 연간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3.02.28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결과 보고
2023.03.06	감사위원회	제22기 결산감사 결과의 건
2023.04.20	감사위원회	공시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검토결과 보고
2023.04.27	감사위원회	2023년도 1분기 감사활동 보고
2023.05.10	감사위원회	2022년 외부감사인인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보고
2023.05.10	감사위원회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보고
2023.08.09	감사위원회	2023년 2분기 감사활동 보고
2023.10.06	감사위원회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부문감사 결과 보고
2023.10.06	감사위원회	내부감사부서의 2023년 회계감사 계획 보고
2023.11.08	감사위원회	2023년도 3분기 감사활동 보고
2023.12.07	감사위원회	내부감사부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중간평가 보고
2023.12.26	감사위원회	2023년 외부감사인인 감사활동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보고

2023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
Remuneration System



8. 위험관리위원회

가. 역할	146
나. 구성	147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48



8. 위험관리위원회

가. 역할

(1) 총괄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3조에 따라 2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해야하며, 2023년도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은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그룹의 제반 리스크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그룹리스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사 및 자회사 등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을 제공하고 신한금융그룹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룹 리스크 철학 및 원칙, 리스크관리 조직 및 역할, 그룹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리스크 한도관리 체계 및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12일에 개최된 2009년도 제7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리스크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제반 비즈니스를 수행함에 있어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그룹 리스크 철학을 정하고 조직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항상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원칙은 그룹의 리스크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규정, 관리체계, 의사결정 등을 도출하는 기준을 말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모든 영업활동은 사전 설정된 위험성향 내에서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
- ② 회사는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시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며, 그룹차원의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유한다.
- ③ 경영진의 관여를 제고하는 리스크 관련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한다.
- ④ 영업부문과 독립적인 리스크 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 ⑤ 비즈니스 의사결정시 리스크를 명확히 고려하게 하는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한다.
- ⑥ 선제적이고 실용적인 리스크 관리 기능을 지향한다.
- ⑦ 평상시에도 상황 악화가능성에 대비하는 신중한 시각을 공유한다.

(나) 회사 및 자회사별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는 그룹의 리스크를 자기자본 대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룹 및 자회사별 최소자기자본비율을 설정합니다. 2023년 12월 7일 개최된 2023년도 제9회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그룹과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EZ손해보험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그룹 리스크한도와 자회사별 리스크 총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자회사는 지주회사 위험관리위원회가 설정한 리스크한도 이내에서 자회사별 리스크총한도와 리스크 유형별 한도를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제9회 위험관리위원회는 그룹과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의 리스크한도를 결의하였으며, 해당 자회사별로 당사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리스크한도 이내에서 회사별 리스크 총한도와 유형별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룹의 국제적 대출 및 투자업무 등과 관련된 국가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2015년 12월 10일 개최된 2015년도 제4회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그룹 차원의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 관리 체계를 운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016년도부터 그룹 차원의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를 설정하며, 한도 설정 및 관리를 그룹리스크협의회에 위임하고, 한도 설정 내역과 관리 현황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룹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는 2023년 2월 23일 개최된 2023년도 제2회 그룹리스크협의회에서 2023년도 그룹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를 결의하고, 해당 결의내용을 2023년 4월 27일 개최된 2023년도 제3회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점관리영역에 대한 그룹차원의 편중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점관리영역 그룹익스포저 한도 설정 및 관리를 그룹리스크협의회에 위임하고, 한도 설정 내역과 관리 현황을 매분기 보고 받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개최된 2022년도 제10회 그룹리스크협의회는 2023년도 중점관리영역 그룹 익스포저 한도를 결의하였으며, 해당 결의내용을 2023년 2월 8일 개최된 2023년도 제1회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자회사별 상세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은 자회사에서 설정하고 있으며, 당사 리스크관리팀과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 그룹리스크관리규정과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신한금융그룹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룹리스크관리규정을 제정(2001.12.7)하여 관리하고 필요 시 개정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리스크관리업무 수행 및 위험관리위원회의 리스크관리 업무지원을 위하여 그룹리스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룹리스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을 제·개정합니다. 2023년 4월 27일에 개최된 2023년 제3회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 개정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마) 그 밖에 이사회 및 위험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룹의 리스크관리 주요 지표 및 관리 체계 현황, 그룹의 익스포저 한도 관리 현황, 해외 법인의 리스크관리현황 등을 매 분기 보고 받고 자회사 등과 연결한 주요 리스크 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모니터링 합니다.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이사회 결의사항 중 리스크 검토 필요 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그룹 자체정상화계획운영규정 제정의 건과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7회 위험관리위원회는 그룹 자체정상화계획을 심의하였으며, 2023년도 제9회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3조에 따라 2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2023년도 위험관리위원회는 3인의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이용국 이사는 변호사로서 금융회사의 국내 및 해외 거래소 상장, 해외 금융회사의 국내 채권발행, 금융회사 간 M&A 등 금융과 자본시장 관련 다양한 국내·외 대형 법률자문을 15년간 수행하며 금융에 대한 전문 경험을 보유한 법률·금융 전문가이며, 성재호 이사는 나이스홀딩스, 신한카드 등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감시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보유한 사외이사입니다. 한편 최재봉 이사는 디지털/정보기술 전문가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다양한 위원회 경력과 대기업의 사외이사 경험을 보유하여 위험관리위원회가 다양한 위험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23년 4월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 시 금융회사의 고유 위험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은 일부 부족할 수 있다는 권고에 따라 2024년 이후에는 고유 위험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를 위험관리위원회에 포함시켜 위험 관리 활동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2) 구성원

<2023.3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허용학	사외	위원장	2021.3.25	2023.3.23
이용국	사외	위원	2021.3.25	2023.3.23
최재봉	사외	위원	2021.3.25	2023.3.23

<2023.3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이용국	사외	위원장	2021.3.25	2024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
성재호	사외	위원	2022.3.24	2024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
최재봉	사외	위원	2021.3.25	2024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5조에 따라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9회의 위험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41건이며,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은 모든 회차에 100% 참석하였습니다. 당사 리스크관리팀은 위원들에게 대면 사전설명을 실시하여 안건의 내용을 숙지한 후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험관리위원회의 활동내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위험관리위원회는 그룹리스크협의회 규정의 건 및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와 이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및 비상조달계획을 결의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위험관리위원회는 그룹자체정상화계획운영규정 개정의 건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7회 위험관리위원회는 그룹 자체정상화계획(안) 심의의 건을 검토하고 심의하였으며,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와 이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및 비상조달계획을 결의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9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건을 심의하였으며, 2024년도 최소자기자본비율 설정의 건, 2024년도 리스크한도 설정의 건, 2024년 지주회사 유동성 리스크한도 설정의 건 등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8일 개최된 2022년도 제8회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그룹과 자회사별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결의한 2023년도 그룹과 자회사별 최소자기자본비율 및 리스크한도에 대한 관리 현황을 매 분기 보고 받고 점검하였으며, 중점관리영역에 대한 그룹차원의 편중리스크 관리와 그룹의 국가별 리스크관리를 위해 그룹리스크협의회에 위임한 중점관리영역 그룹 익스포저 한도 및 그룹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 설정 내역과 관리 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자회사 위험관리위원회 결의 및 보고사항, 그룹의 리스크관리 주요 지표 및 관리 체계 현황, 그룹의 익스포저 한도 관리 현황 등을 매분기 보고 받았습니다. 그 밖에 이사회에서의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승인 이전에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금감원 시나리오 기준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그룹 위기관리협의회 개최 결과,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등에 대하여 보고 받고 리스크 관련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3년도 제1회 위험관리위원회: 2023.2.8(수)

[안건통지일: 2023.2.1(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허용학	이용국	최재봉	
1. 위원 성명	허용학	이용국	최재봉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2년 12월말 기준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실시 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금융감독원 시나리오 기준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2023년도 위험조정 성과평가지표 운영(안)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2023년도 그룹 중점관리영역 선정 및 익스포져 한도 설정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발동지표 발동요건 변경 보고	특이의견 없음			
바. 2022년 4분기 정기 보고 사항	특이의견 없음			
사. 그룹 위기관리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2023년도 제1회 위험관리위원회는 2022년 12월말 기준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실시 등 7건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허용학 위원장이 최신 시장·금융 환경을 반영한 위기상황분석 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용국 위원은 중점관리영역 업종별 한도 부여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고, 최재봉 위원은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리스크관리 활용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나) 2023년도 제2회 위험관리위원회: 2023.3.23일(목)

[안건통지일: 2023.3.16(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이용국	성재호	최재봉	
1. 위원 성명	이용국	성재호	최재봉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 안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원안대로 가결

2023년도 제2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이용국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 2023년도 제3회 위험관리위원회: 2023.4.27일(목)

[안건통지일: 2023.4.20(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이용국	성재호	최재봉	
1. 위원 성명	이용국	성재호	최재봉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도 그룹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 설정 결과 및 국가별 위험분석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그룹 위기관리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원안대로 가결
나.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와 이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및 비상조달계획	찬성	찬성	찬성	원안대로 가결

2023년도 제3회 위험관리위원회는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 개정의 건과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와 이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및 비상조달계획을 결의하였으며, 보고사항 2건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와 이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및 비상조달계획에 대해 최재봉 위원은 발전하는 AI 기술 등이 반영된 리스크관리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용국 위원장은 경기대응 완충자본 부과 및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고려한 위기상황분석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라) 2023년도 제4회 위험관리위원회: 2023.5.11일(목)

[안건통지일: 2023.5.4(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이용국	성재호	최재봉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신한카드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 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2023년 1분기 정기 보고 사항	특이의견 없음			
다. 위험관리위원회 역할 및 2023년도 운영 일정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그룹자체정상화계획운영규정 개정의 건	참석	참석	참석	심의 완료
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건	참석	참석	참석	심의 완료

2023년도 제4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 결의사항인 그룹자체정상화계획운영규정 개정의 건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건을 심의하였으며, 보고사항 3건을 보고 받았습니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건에 대해 성재호 위원은 적정 수준 유동성 유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023년 1분기 정기 보고 사항에 대해 이용국 위원장은 연체 여신 규모 감축을 위한 상대각 현황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최재봉 위원은 SG증권 사태로 인한 신한투자증권 영향도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마) 2023년도 제5회 위험관리위원회: 2023.6.19일(월)

[안건통지일: 2023.6.12(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이용국	성재호	최재봉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모의훈련 실시(안)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2023년도 제5회 위험관리위원회는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모의훈련 실시(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용국 위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 모의훈련 결과 보고 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의견 개진하였으며, 그룹사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바) 2023년도 제6회 위험관리위원회: 2023.7.27일(목)

[안건통지일: 2023.7.20(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이용국	성재호	최재봉	
1. 위원 성명	이용국	성재호	최재봉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모의훈련 결과 및 수립 방향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발동지표 발동요건 변경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2023년 6월말 기준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실시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2023년도 계열 및 개별 기업 신용 익스포저 한도 설정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신한은행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 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바. 그룹 운영리스크 손실데이터 정기 적합성 검증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사. 2023년 2분기 정기 보고 사항	특이의견 없음			
아. 그룹 위기관리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2023년도 제6회 위험관리위원회는 2023년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모의훈련 결과 및 수립 방향 보고 등 보고사항 8건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실시 보고에 대해 이용국 위원장은 뱅크런 상항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 개진하였으며, 최재봉 위원은 ESG 관점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대한 고객 안내 및 홍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023년 2분기 정기 보고 사항에 대해 성재호 위원은 카드사의 연체율 상승에 따른 대응 현황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사) 2023년도 제7회 위험관리위원회: 2023.10.6일(금)

[안건통지일: 2023.9.27(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이용국	성재호	최재봉	
1. 위원 성명	이용국	성재호	최재봉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그룹 운영리스크관리 체계 개선 프로젝트 추진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2023년도 그룹자체정상화계획(안) 심의의 건	참석	참석	참석	심의 완료
나.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와 이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및 비상조달계획	찬성	찬성	찬성	원안대로 가결

2023년도 제7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 결의사항인 2023년도 그룹 자체정상화계획(안)에 대해 심의하였고,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및 비상조달계획(안)에 대해 결의하였으며, 보고사항 2건을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기후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교육 연수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와 이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및 비상조달계획에 대해 성재호 위원은 실제 위기상황에서의 비상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국 위원장은 가계 부채 연체 현황에 대해 질의 후 건전성 관리 중요성에 대해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기후리스크 관련 교육 연수 중 이용국 위원장은 기후리스크 시나리오별 장기적인 BIS비율 예상치 산출 방법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아) 2023년도 제8회 위험관리위원회: 2023.11.9일(목)

[안건통지일: 2023.11.2(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이용국	성재호	최재봉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4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방향	특이의견 없음			
나. 2023년 3분기 정기 보고 사항	특이의견 없음			
다. 그룹 위기관리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2023년도 제8회 위험관리위원회는 2024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방향 등 보고사항 3건을 보고 받았으며, 자본 비율 규제 변화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교육 연수를 수행하였습니다.

2023년 3분기 정기 보고 사항에 대해 성재호 위원은 신한카드의 위기상황단계 및 대응 현황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이용국 위원장은 홍콩H지수 기초자산 기반 ELS 상품 현황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자본 비율 규제 변화에 대한 교육 연수 중 이용국 위원장은 다른 국가와 국내 도입이 예상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자) 2023년도 제9회 위험관리위원회: 2023.12.7일(목)

[안건통지일: 2023.11.30(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비고
1. 위원 성명	이용국	성재호	최재봉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정기 적합성 검증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그룹 비소매 신용평가모형 및 PD 정기 적합성 검증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그룹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스템 정기 적합성 검증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건	참석	참석	참석	심의 완료
나. 2024년도 최소자기자본비율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원안대로 가결
다. 2024년도 리스크한도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원안대로 가결
라. 2024년도 지주회사 유동성 리스크한도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원안대로 가결

2023년도 제9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 결의사항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건을 심의하였고, 2024년도 최소자기자본비율 및 리스크한도 등 총3건을 의결하였으며, 보고사항 4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4년 리스크한도 설정의 건에 대해 이용국 위원장은 전략·평판리스크 한도 설정 방법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최재봉 위원은 평판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024년도 지주회사 유동성 리스크한도 설정의 건에 대해 이용국 위원장은 은행권의 LCR 규제비율과 지주사의 유동성 비율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3) 평가

위험관리위원회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9조(이사회내위원회) 제4항에 의거 연 1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16년 12월 28일 개최한 제8회 임시이사회에서 결의하고, 2020년 12월 17일 개최한 제11회 임시이사회에서 보완한 아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2023년12월 중 평가를 진행 및 종료하였으며, 현재 이사회 운영 지원 시 해당 결과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평가 목적, 평가 주체, 평가 기준, 평가 방법(절차)에 관한 내용은 “2.이사회”의 “다.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평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2023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
Remuneration System



9. ESG전략위원회

가. 역할	155
나. 구성	155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56



9. ESG전략위원회 (舊 사회책임경영위원회)

가. 역할

(1) 총괄

당사는 고객, 주주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성장하고, 그룹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2015년 3월 국내 금융사 최초로 ESG전략위원회(舊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ESG전략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며, 기업의 ESG 요소를 비즈니스 전략에 통합·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ESG전략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7조 제2항 및 ESG전략위원회 규정 제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가)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금융회사의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주요 사안을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에서 논의하여, 그룹이 이행할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방향을 설정합니다.

(나) 지속가능경영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기후변화대응을 포함한 친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그룹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기존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의 제정을 심의·결의합니다.

(다) 기타

지속가능경영 관련 업무 이행 현황, 대외평가 대응, 공시 보고서 발간 등의 사안을 점검하고 논의합니다.

나. 구성

(1) 총괄

ESG전략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5인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2023년 3월 23일에 사외이사 4인과 사내이사 1인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구성원

<2023.3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곽수근	사외	위원장	2022.3.24	2023.3.23
김조설	사외	위원	2022.3.24	2023.3.23
변양호	사외	위원	2022.3.24	2023.1.12 (사임)
윤재원	사외	위원	2022.3.24	2023.3.23
조용병	사내	위원	2022.3.24	2023.3.23

<2023.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곽수근	사외	위원장	2023.3.23	2024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
김조설	사외	위원	2023.3.23	2024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
윤재원	사외	위원	2023.3.23	2024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
이용국	사외	위원	2023.3.23	2024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
진옥동	사내	위원	2023.3.23	2024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총괄

2023년에는 ESG전략위원회가 총 4회 개최되었고, 위원 전원이 100% 참석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3년도 제1회 ESG전략위원회 : 2023.3.23(목)

[안건통지일 : 2023.3.16(목)]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곽수근	김조설	윤재원	이용국	진옥동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ESG전략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3년도 제1회 ESG전략위원회는 2023년도 ESG전략위원회 위원장을 곽수근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나) 2023년도 제2회 ESG전략위원회 : 2023.5.11(목)

[안건통지일 : 2023.5.4(목)]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곽수근	김조설	윤재원	이용국	진옥동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ESG전략위원회 운영 계획	특이 의견 없음					
나. 2023년 1분기 ESG 추진 대시보드	특이 의견 없음					
다. 2023년 친환경(E) 중점 추진 사업 현황	특이 의견 없음					
라. 2023년 사회공헌(S) 중점 추진 사업 현황	특이 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RE100 가입 추진(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3년도 제2회 ESG전략위원회의 제1호 안건인 'ESG전략위원회 운영 계획'에서는 ESG전략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의제를 정리하고, 그에 맞추어 2023년 연간 결의 및 보고서안에 대한 일정을 보고하였습니다.

제2호 안건인 '2023년 1분기 ESG 추진 대시보드'에서는 ESG 주요 지표에 대한 정량적 목표 대비 실적 현황과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제3호 안건인 '2023년 친환경(E) 중점 추진 사업 현황'에서는 그룹 데이터센터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조달/사용하는 '신한 디지털 RE100', 내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임직원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신한 아껴요', ESG 공시 의무화 대응을 위한 'ESG Data 플랫폼' 구축, Net-Zero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금융배출량 감축 및 기후리스크 관리 고도화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제4호 안건인 '2023년 사회공헌(S) 중점 추진 사업 현황'에서는 그룹 공동 사업 및 지주/그룹사 단독 긴급지원 사업, 신한금융희망재단/신한장학재단과의 협업 사업과 직원 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결의 안건인 'RE100 가입 추진(案)'은 그룹 Zero Carbon Drive 전략 이행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내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것으로, 글로벌 이니셔티브 'RE100' 가입 및 중장기 목표를 결의하였습니다.

(다) 2023년도 제3회 ESG전략위원회 : 2023.8.10(목)

[안건통지일 : 2023.8.3(목)]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여부
	곽수근	김조설	윤재원	이용국	진옥동	
1. 이사 성명	곽수근	김조설	윤재원	이용국	진옥동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 2분기 ESG 추진 대시보드	특이 의견 없음					
나. ESG 공시 의무화 대응 방안	특이 의견 없음					
다. 2022 ESG 보고서 발간	특이 의견 없음					
라. 2022 ESG Value Index 측정 결과	특이 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2023년도 제3회 ESG전략위원회의 제1호 안건인 '2023년 2분기 ESG 추진 대시보드'에서는 ESG 주요 지표에 대한 정량적 목표 대비 실적 현황과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추진 과제를 보고하였습니다.

제2호 안건인 'ESG 공시 의무화 대응 방안'에서는 신한외 ESG 공시 의무화 대비 현황 및 로드맵, 국내외 동향과 핵심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공시 위반으로 인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갖추고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제3호 안건인 '2022 ESG 보고서 발간'에서는 신한외 ESG 공시 주안점과 2022년 보고서의 차별화 포인트 중심으로 발간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2023년 보고서는 이해관계자 관심 사안과 정량 데이터 중심으로 구성하고, 발간 일정을 앞당겨 대외 커뮤니케이션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4호 안건인 '2022 ESG Value Index 측정 결과'에서는 신한외 사회적가치 계량화 모델인 'ESG Value Index'를 기반으로 2022년 ESG 사업에 대해 측정된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ESG사업의 양적/질적 성장에 따라 향후에는 분석을 보다 세밀화하고, 직원 내재화에 용이하도록 운영 체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라) 2023년도 제4회 ESG전략위원회 : 2023.11.9(목)

[안건통지일 : 2023.11.2(목)]

항목	이사 활동내역					가결여부
	곽수근	김조설	윤재원	이용국	진옥동	
1. 이사 성명	곽수근	김조설	윤재원	이용국	진옥동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 3분기 ESG 추진 대시보드	특이 의견 없음					
나. 2024년 E(환경) 영역 주요 과제 및 추진 방향	특이 의견 없음					
다. 2024년 S(사회) 영역 주요 과제 및 추진 방향	특이 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2023년도 제4회 ESG전략위원회의 제1호 안건인 '2023년 3분기 ESG 추진 대시보드'에서는 ESG 주요 지표에 대한 정량적 목표 대비 실적 현황을 보고하고, 연간 목표 달성 계획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제2호 안건인 '2024년 E(환경) 영역 주요 과제 및 추진 방향'에서는 ESG 공시 의무화 및 측정 표준화 등 ESG 정책 대응 과제와 금융배출량 관리 고도화 방향, 내부배출량 관리를 위한 에너지 전략 및 임직원 캠페인, 친환경금융 확대를 위한 전환금융 활성화 및 녹색분류체계 확대 적용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제3호 안건인 '2024년 S(사회) 영역 주요 과제 및 추진 방향'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스타트업 지원, 임직원 솔선수범 영역을 중점 추진하고, 그룹의 사회공헌사업을 실행하는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사업구조를 개선하여 그룹사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습니다.

(3) 평가

ESG전략위원회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9조(이사회내위원회) 제4항에 의거 연1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평가목적, 주체, 기준, 방법은 본 연차보고서 2.이사회-라.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평가-(1)이사회 평가 상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ESG전략위원회 평가 결과, 위원회 운영 및 역할 수행은 매우 우수한 수준(5등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도 ESG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위험을 방지하고 기회를 발굴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진정성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23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
Remuneration System



10.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	160
나. 구성	160
다.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관련	160
라. 활동내역	162



10.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舊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가. 역할

당사는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설정,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자회사 CEO 리더십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5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3일에 대표이사 회장과 4명의 사외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4조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이 위원장을 담당합니다.

<2023.3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조용병	사내	위원장	2022.3.24	2023.3.23
박안순	사외	위원	2022.3.24	2023.3.23
성재호	사외	위원	2022.3.24	2023.3.23
이운재	사외	위원	2022.3.24	2023.3.23
허용학	사외	위원	2022.3.24	2023.3.23

<2023.3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진옥동	사내	위원장	2023.3.23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성재호	사외	위원	2023.3.23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이운재	사외	위원	2023.3.23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곽수근	사외	위원	2023.3.23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배훈	사외	위원	2023.3.23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일

다.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관련

(1)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舊.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4년 5월 10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24일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상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2015년 2월 26일 이사회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과정 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1일에는 자회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회사 CEO의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가 담당해 온 자회사의 대표이사 아닌 경영진 후보 인선 기준 및 심의 관련 기능을 자회사 이사회가 담당하도록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21년 3월 25일에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이사회내위원회에 편입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당사는 2023년 3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및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규정의 명칭을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및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규정으로 변경하고, 자회사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심의/결의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의 주요 내용은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종료 사유와 시기,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관리방법, 비상승계계획 등입니다.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당사는 안정적 경영승계를 위해 2011년 자회사 CEO 승계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상시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자회사 CEO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과 법률요건 등을 고려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승계시점에 각 자회사 별로 요구되는 전략적 역할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심의합니다.

금융회사인 자회사의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하는 임원의 자격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법 및 시행령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일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까지 후보추천을 완료하며, 충실한 심의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여 승계절차 개시 시점을 결정합니다. 금융회사인 자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내규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자회사의 주주총회에 추천하며,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는 해당 자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됩니다.

또한, 당사는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여 미래의 자회사 CEO 후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에 대한 통찰력, 전사 관점의 의사결정, 전략실행/추진력, 리더십, 대내외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개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육성 후보군의 경영성과 및 개발활동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심의 평가합니다. 후보군에 대한 평가결과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자회사 대표이사가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 상 이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경영승계 계획상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가속승계 프로세스를 통해 자회사 대표이사를 추천하도록 합니다. 또한, 동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대표이사 대행자 및 회사 운영계획,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현황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후보자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안정적 경영승계를 통한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여 미래의 자회사 CEO 후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28일 개최된 제2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적용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부사장 또는 부행장 이상 경영진 전원을 대상으로 총 38명의 육성 후보를 선정하였습니다.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는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소속 회사의 CEO는 육성책임자로서 연중 상시적인 후보군 육성 활동을 실시합니다.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육성후보군별 경영성과, 개발활동에 대한 심의 및 평가 절차를 운영하며, 후보군 관리와 관련된 실무지원은 지주회사 신한리더십센터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현황>

구분	후보수	추천 경로
내부	38명	2023년 2월 28일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육성후보군 선정

(4)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업무 지원부서 현황

당사는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한리더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리더십센터는 팀장과 팀원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승계 계획 운영 등 경영리더 육성 및 관리, 경영진 성과 보상 및 평가, 그룹 인사정책 방향 수립 및 실행, 그룹 기업문화 방향성 수립 및 전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한리더십센터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7조에 따라 상시적인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지원,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그 밖에 대표이사 경영승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리더십센터는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동 위원회가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과 대표이사 후보자 선발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을 검증한 결과를 연1회 이사회에 보고함에 있어 실무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 부서명 : 신한리더십센터

- 직원수 : 총 10명

- 운영 내역

일자	운영내역	비고
2023.2.8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심의 실무 지원	제1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2023.2.28	2022년 자회사 CEO 리더십 평가 실무 지원 2023년 경영진 리더십 평가체계 수립 실무 지원 2023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 실무 지원	제2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2023.5.11	2022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심의 실무 지원 2023년 자회사 CEO 리더십 평가체계 변경 보고 실무 지원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검토 실무 지원	제3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2023.11.9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및 이사회 보고 실무 지원 2023년 자회사 CEO 리더십 평가체계 변경 보고 실무 지원	제4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2023.12.7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 선정 실무 지원 자회사 대표이사 압축후보군 선정 실무 지원	제5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2023.12.19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심의 실무 지원	제6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라.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23년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6회 개최되었으며,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13개로 결의안건은 9개, 보고안건은 4개입니다. 9개의 결의안건은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은 2022년말 40명에서 퇴임 등에 따라 18명이 제외되고, 16명이 신규 선정되어 2023년말 기준 총 38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개최된 제1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한용구 신한은행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함에 따라 비상승계 절차를 가동하여 정상형 신한은행장을 신한은행장 후보로 추천하였으며, 2023년 12월에는 제5회, 제6회 두 차례의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신한투자증권,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등 총 9개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3년도 제1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 2023.2.8 (수)

[안건통지일 : 2023.2.6 (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조용병	박안순	성재호	이운재	허용학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심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3년도 제1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 되었습니다. 한용구 신한은행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함에 따라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비상승계 절차를 가동하였으며, 정상혁 現신한은행장을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나) 2023년도 제2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 2023.2.28 (화)

[안건통지일 : 2023.2.21 (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조용병	박안순	성재호	이운재	허용학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2022년 자회사 CEO 리더십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3년 경영진 리더십 평가체계 수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3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3년도 제2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 되었습니다. 제1호 안건으로 2022년 자회사 CEO리더십 평가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제2호 안건으로 2023년 경영진 리더십 평가체계 수립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3호 안건으로는 2023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의 건이 부의되어,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적용 대상 자회사의 부사장 및 부행장 이상 경영진 전원 38명이 2023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 2023년도 제3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 2023.5.11 (목)

[안건통지일 : 2023.5.4 (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진옥동	성재호	이운재	곽수근	배훈	
1. 이사 성명	진옥동	성재호	이운재	곽수근	배훈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역할 및 2023년도 운영 일정	특이 의견 없음					
나. 2023년 자회사 CEO 리더십 평가체계 변경 보고	특이 의견 없음					
다.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검토	특이 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2022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심의의 건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3년도 제3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4명이 출석하여 성원 되었습니다. 제1호 안건 2022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심의의 건을 통해 전년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에 대한 평가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일정, 내부통제 강화 관점이 강화된 2023년 자회사 CEO리더십 평가체계 변경사항,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라) 2023년도 제4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 2023.11.9 (목)

[안건통지일 : 2023.11.2 (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진옥동	성재호	이운재	곽수근	배훈	
1. 이사 성명	진옥동	성재호	이운재	곽수근	배훈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 자회사 CEO 리더십 평가체계 변경 보고	특이 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3년도 제4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 되었습니다. 제1호 안건으로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및 이를 영한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내외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절차가 연간 적절히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이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회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이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통한 경영의 연속성 확보 및 자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동일자 개최된 2023년도 제4회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관점이 강화된 2023년 자회사 CEO리더십 평가체계 변경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마) 2023년도 제5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 2023.12.7 (목)

[안건통지일 : 2023.11.30 (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진옥동	성재호	이운재	곽수근	배훈	
1. 이사 성명	진옥동	성재호	이운재	곽수근	배훈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 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 선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자회사 대표이사 압축후보군 선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3년도 제5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습니다. 제1호 안건으로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 선정의 건을 부의하여, 2023년 말부터 2024년 3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10개 자회사에 대한 CEO 승계후보군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제2호 안건으로는 자회사 대표이사 압축후보군 선정의 건을 부의하여 제1호 안건 심의 대상이 된 10개 자회사 중 청산이 예정된 신한시를 제외한 9개 회사의 대표이사 압축후보군을 선정하였습니다.

(바) 2023년도 제6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 2023.12.19 (화)

[안건통지일 : 2023.12.12 (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진옥동	성재호	이운재	곽수근	배훈	
1. 이사 성명	진옥동	성재호	이운재	곽수근	배훈	
2.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 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심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3년도 제6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습니다. 제1호 안건으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심의의 건을 부의하여, 2023년도 제5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된 회사별 압축후보군을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 따른 '그룹 공통 자격요건'과 회사별 '전략적 요구역량'을 기준으로 심의하였고, 회사별 대표이사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추천 대상 회사는 신한투자증권,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등 9개사입니다.

(3) 평가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이사회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의거 연1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평가목적, 주체, 기준, 방법은 본 연차보고서 '2.이사회-라.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평가-(1)이사회 평가상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평가 결과 위원회의 운영 및 역할 수행 정도는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3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
Remuneration System



11. 그룹경영회의

가. 역할	167
나. 구성	167
다. 협의절차(운영현황)	167
라. 활동내역	167



11. 그룹경영회의

가. 역할

당사는 그룹경영회의 운영규정 제2조에 따라 그룹의 주요현안을 협의하여 그룹을 대표하는 대표이사 회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룹경영회의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경영회의는 그룹 주요 현안 중 다음의 사항을 협의합니다.

- (1) 그룹의 비전/전략방향 및 경영계획과 관련된 사항
- (2) 그룹 전략 실행을 위해 자회사 간 협조 또는 이해 조정 필요 사안
- (3) 자회사 별 각종 경영현안 중 자회사등 간 공유 및 협의를 필요한 사안
- (4) 자회사 간 공동으로 적용되는 제도 관련 사안
- (5) 그룹 차원의 브랜드 전략 관련 사안
- (6) 기타 대표이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그룹경영회의에 보고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자회사의 각종 사업 중 주요 사항의 추진 및 실행 결과
- (2) 금융시장 동향
- (3) 기타 대표이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나. 구성

그룹경영회의는 그룹경영회의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 및 각 자회사 CE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주회사 부문장, 그룹위험관리책임자(CRO)는 열석하며, 대표이사 회장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열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사업무는 지주회사 전략기획팀 또는 대표이사 회장이 정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담당합니다.

회의의 위원장은 대표이사 회장이며, 대표이사 회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 회장이 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다. 협의절차(운영현황)

그룹경영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매월 개최하나, 필요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의의 일시와 장소는 위원장이 지정하며,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사전에 각 위원 및 열석자에게 통지합니다.

회의의 위원을 포함한 그룹 내 모든 자회사의 대표이사는 간사를 통해 회의의 협의/보고사항 등을 부의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 회장은 협의사항 중 위험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룹리스크협의회가 회의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라. 활동내역

그룹경영회의는 2023년 총 8차례 개최하여 그룹 핵심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은 2023년 ESG 추진계획, 2023년 '신한문화 RE:Boot' 추진계획, Process Innovation 활성화 방안, One Data 활성화 방안, 2023년 CEO 경영방향성, SAQ TF결과보고, 하반기 재무관리 방향성, 하반기 경영성과 달성방안, ESG주요 추진경과, 그룹 앰브랜드 변경, ESG추진위원회, 2024년 그룹 경영계획 등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2023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
Remuneration System



12. 그룹리스크협의회

가. 역할	169
나. 구성	169
다. 협의절차(운영현황)	170
라. 활동내역	170



12. 그룹리스크협의회

가. 역할

당사 그룹리스크협의회는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 제2조에 따라 그룹과 자회사 리스크정책 및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하여 그룹의 제반 리스크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2010년 8월 25일 개최된 2010년도 제4회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고위험영역에 대한 그룹차원의 편중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위험영역 그룹익스포저 한도 설정 및 관리를 그룹리스크협의회에 위임하였으며, 그룹리스크협의회는 매년 고위험영역 그룹 익스포저 한도를 설정하고 관리현황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개최된 2016년도 제1회 그룹리스크협의회는 고위험영역의 명칭을 중점관리영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10일 개최된 2015년도 제4회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그룹의 국제적 대출 및 투자업무 등과 관련된 국가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 설정 및 관리를 그룹리스크협의회에 위임하였으며, 그룹리스크협의회는 매년 국가별 그룹 익스포저 한도를 설정하고 관리현황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그룹리스크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합니다.

- (1) 국가, 중점관리영역, 개별 기업 및 계열 등 익스포저 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 (2)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
- (3) 금융감독원 내부등급법 승인 대상을 제외한 그룹 비소매 신용평가시스템 관련 의사결정 사항
-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룹리스크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 (1) 회사 및 자회사별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 (2)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이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 자금조달계획
- (3) 리스크공시정책에 관한 사항
-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룹리스크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합니다.

- (1) 그룹 및 자회사의 리스크측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2) 그룹 차원의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
- (3) 자회사 자금지원관련 리스크관리 사항
- (4)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3조제4항에 따라 제43조제3항에 대해 위험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으로 그룹경영회의가 요청한 사항
- (5)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나. 구성

그룹리스크협의회는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 제3조에 따라 당사의 위험관리책임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신한은행 기업여신심사 담당 본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룹리스크협의회의 위원장은 당사의 위험관리책임자이며, 위원장은 협의의견에 따라 위험관리책임자가 아닌 자회사의 소관업무담당 최고책임자를 위원으로 지정하여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 그룹리스크협의회 구성>

성명	그룹사	직위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	임기만료일	비고
방동권	신한금융지주회사	위험관리책임자	2020.01.01	2023.12.31	위원장
배종화	신한은행	위험관리책임자	2022.01.01	2023.12.31	
소명필	신한은행	기업여신심사 본부장	2022.01.01	2023.12.31	선임일은 본부장 선임일
송주영	신한카드	위험관리책임자	2018.01.01	2023.12.31	
김병국	신한투자증권	위험관리책임자	2020.01.01	2023.12.31	
조형엽	신한라이프	위험관리책임자	2022.01.01	2023.12.31	
함덕용	신한캐피탈	위험관리책임자	2020.03.20	2024.12.31	
조영식	신한자산운용	위험관리책임자	2022.02.01	2024.1.31	
장우천	제주은행	위험관리책임자	2019.01.01	2023.12.31	
강혁	신한저축은행	위험관리책임자	2019.03.28	2025.05.27	
최완철	신한자산신탁	위험관리책임자	2023.01.01	2024.12.31	
고영득	신한EZ손해보험	위험관리책임자	2023.09.01	2025.08.31	

다. 협의절차(운영현황)

당사 그룹리스크협의회는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 제4조에 따라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소집합니다.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의합니다. 위험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에 대한 결의는 그 내용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자회사 리스크관리부서에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라. 활동내역

그룹리스크협의회는 2023년도 총12회 개최하였으며, 그룹 중점관리영역 선정 및 익스포저 한도 설정, 그룹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 설정 등 위험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 결의하고, 그룹의 제반 리스크 관련 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2023년 2월 2일에 개최된 제1회 그룹리스크협의회는 2022년 12월말 기준 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실시 계획을 결의하였으며, 금융감독원 시나리오 기준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보고 받고, 2023년도 위험조정 성과평가지표 설정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2022년 4분기 정기 보고 사항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2023년 2월 23일에 개최된 제2회 그룹리스크협의회는 국가별 위험분석 결과를 보고 받고,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2023년도 그룹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를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상반기 그룹사별 Top 운영리스크를 보고 받고, 그룹 ESG리스크관리체계 고도화 프로젝트를 추진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2023년 4월 21일에 개최된 제3회 그룹리스크협의회는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인 그룹리스크협의회 규정의 건과 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결과와 이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및 비상조달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2023년 5월 4일에 개최된 제4회 그룹리스크협의회는 신한카드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안을 결의하였고, 그룹자체정상화계획운영규정 개정의 건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그룹자체정상화계획 승인 결과 및 개선 방향과 2023년 1분기 정기 보고 사항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2023년 6월 22일에 개최된 제5회 그룹리스크협의회는 2023년도 계열 및 개별기업 신용 익스포저 한도와 2023년도 중점관리영역 그룹 익스포저 조정안, 신한은행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그룹사 운영리스크관리현황 점검 결과 및 신규제 대응

계획과 그룹 RWA 관리시스템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2023년 7월 26일에 개최된 제6회 그룹리스크협의회는 2023년 6월말 기준 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실시 계획을 결의하였으며, 2023년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수립 방향 및 모의훈련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그룹 운영리스크 손실데이터 정기 적합성 검증 결과와 2023년 2분기 정기 보고 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2023년 8월 29일에 개최된 제7회 그룹리스크협의회는 2023년 하반기 그룹사별 Top 운영리스크와 그룹 운영리스크관리 체계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 계획,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결과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2023년 9월 22일에 개최된 제8회 그룹리스크협의회는 이사회 결의사항인 2023년 그룹자체정상화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5일에 개최된 제9회 그룹리스크협의회는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인 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결과와 이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및 비상조달계획을 심의하였으며, 2023년 리스크한도 적정성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2023년 11월 7일에 개최된 제10회 그룹리스크협의회는 2023년 그룹 리스크 전략 방향 및 2023년 3분기 정기 보고 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2023년 12월 5일에 개최된 제11회 그룹리스크협의회는 2024년 최소자기자본비율과 리스크한도 설정의 건을 심의하였고,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모형검증팀에서 수행한 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정기 적합성 검증 결과 및 그룹 비소매 신용평가모형 및 PD(부도율) 정기 적합성 검증 결과, 그룹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스템 정기 적합성 검증 결과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2023년 12월 18일에 개최된 제12회 그룹리스크협의회는 위험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인 2024년도 그룹 중점관리영역 선정 및 익스포저 한도와 바젤 거액익스포저 한도 규제 도입 및 관리 방안을 결의하였고, 그룹 고객자산 리스크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안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그룹리스크협의회 회의 개최내역>

회 차	개최일자	회의안건	가결여부
1회	2023.02.02	[결의] 2022년 12월말 기준 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실시(안)	가결
		[보고] 금융감독원 시나리오 기준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보고] 2023년도 위험조정 성과평가지표 운영(안) 보고	
		[보고] 2022년 4분기 정기 보고 사항	
2회	2023.02.23	[결의] 2023년도 국가별 위험분석 결과 보고 및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 설정(안)	가결
		[보고] 2023년도 상반기 그룹사별 Top 운영리스크	
		[보고] 그룹 ESG리스크관리체계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 보고	
3회	2023.04.21	[심의]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 개정의 건	심의 완료
		[심의] 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결과와 이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및 비상조달계획	심의 완료
4회	2023.05.04	[결의] 신한카드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안)	가결
		[협의] 그룹자체정상화계획운영규정 개정의 건	협의 완료
		[보고] 그룹자체정상화계획 승인 결과 및 개선 방향 보고	
		[보고] 2023년 1분기 정기 보고 사항	

회 차	개최일자	회의안건	가결여부
5회	2023.06.22	[결의] 2023년도 계열 및 개별 기업 신용 익스포저 한도 설정(안)	가결
		[결의] 2023년도 중점관리영역 그룹 익스포저 한도 조정(안)	가결
		[결의] 신한은행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안)	가결
		[보고] 그룹사 운영리스크관리현황 점검 결과 및 신규제 대응 계획 보고	
		[보고] 그룹 RWA 관리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추진 보고	
6회	2023.07.26	[결의] 2023년 6월말 기준 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실시(안)	가결
		[보고] 2023년 그룹 자체정상화계획 수립 방향 및 모의훈련 결과 보고	
		[보고] 그룹 운영리스크 손실데이터 정기 적합성 검증 결과 보고	
		[보고] 2023년 2분기 정기 보고 사항	
7회	2023.08.29	[보고] 2023년 하반기 그룹사별 Top 운영리스크	
		[보고] 그룹 운영리스크관리 체계 개선 프로젝트 추진 보고	
		[보고]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결과 보고	
8회	2023.09.22	[협의] 2023년도 그룹자체정상화계획(안)	협의 완료
9회	2023.10.05	[심의] 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결과와 이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및 비상조달계획	심의 완료
		[보고] 2023년 리스크한도 적정성 점검 결과 보고	
10회	2023.11.07	[보고] 2024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방향	
		[보고] 2023년 3분기 정기 보고 사항	
11회	2023.12.05	[심의] 2024년도 최소자기자본비율 설정의 건	심의 완료
		[심의] 2024년도 리스크한도 설정의 건	심의 완료
		[보고]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보고	
		[보고] 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정기 적합성 검증 결과 보고	
		[보고] 그룹 비소매 신용평가모형 및 PD 정기 적합성 검증 결과 보고	
		[보고] 그룹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스템 정기 적합성 검증 결과 보고	
12회	2023.12.18	[결의] 2024년도 그룹 중점관리영역 선정 및 익스포저 한도 설정(안)	가결
		[결의] 바젤 거액익스포저 한도 규제 도입 및 관리 방안	가결
		[보고] 그룹 고객자산 리스크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안)	

2023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
Remuneration System



13.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13.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회사는 2020.6.15 ~ 2020.7.29(33영업일), 2021.1.19 ~ 2021.1.21(3영업일) 간 실시한 금융감독원 수시검사 결과를 2023년 12월 22일 통보 받았으며, 기관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및 전 경영진 3명에 대해 주의(상당) 및 견책(상당)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2023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
Remuneration System



14.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가.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활동 내역	176
나. 준법감시직원 현황	176



14.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가.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활동 내역

당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그룹내부통제규정 제7조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 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하였고,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이사회는 2023년 2월 8일에 개최된 2023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준법감시인으로부터 2022년도 내부통제 체계 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받았습니다.

① 내부통제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그룹내부통제규정」 제2장 내부통제조직(제6조~제10조)에서 구체적인 내부통제 조직과 그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에 명시한 대로 내부통제 조직 구조를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음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 체계에 관한 사항

준법감시인은 2020년 제 11회 임시이사회(2020.12.17) 에서 선임 의결하였으며,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음 (2022.11.20 재선임되어 2023.1.1부터 업무 수행 중)

또한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체계를 총괄하고 관련 자문을 수행하며,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입안 및 관리 하는데 필요한 준법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③ 내부통제 활동에 관한 사항

준법감시인은 「그룹준법감시업무규정」 제4조(그룹 준법감시인의 직무)에 근거하여 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활동, 자금세탁방지 업무, 기타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였음

④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배구조법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바, 이를 「그룹내부통제규정」 제8조(내부통제위원회)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등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의 「내부통제위원회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⑤ 윤리준법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소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규범인 「신한금융그룹 윤리강령」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임직원 실천력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가이드 및 동영상 제작, 배포하는 등 윤리준법 문화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추진하였음. 그룹 공통 신입직원 교육을 포함한 소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윤리준법 교육활동 등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음

나. 준법감시직원 현황

그룹리스크협의회는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 제3조에 따라 당사의 위험관리책임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신한은행 기업여신심사 담당 본부장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룹리스크협의회는 당사의 위험관리책임자이며, 위원장은 협의안건에 따라 위험관리책임자가 아닌 자회사의 소관업무담당 최고책임자를 위원으로 지정하여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1) 준법감시직원 현황 (인원 수)

(2023년말 기준 / 준법감시인 제외)

구분	준법감시직원*	재고용직원등	기타	총계
인원	9	0	0	9

* 준법감시인 산하 인력 중 아래 인력은 미합산

가.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나. 영업점의 자점감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다. 송무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라. 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 중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계약직 직원, 임금피크제를 적용 중인 직원 또는 퇴직 후 재고용한 직원

(2) 준법감시직원 비율

구분	당해년도	비고
총 임직원 수	221	임원 제외/ 겸직 포함
준법감시직원 수	9	준법감시인 제외
재고용직원등(한산수)	0	
준법감시직원 비율	4.07%	

2023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
Remuneration System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2. 보수체계

2023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 Remuneration System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180
나. 구성	180
다. 권한과 책임	181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82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회사의 보수정책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임원 등에 대한 보수체계가 회사의 성과 및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기본 운영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관련 내부규정으로는 보수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으며, 당사 정관 제48조 제1항 제6호 및 이사회규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설치 근거를 두고, 2004년 5월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2017년 3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기존 '보상위원회'에서 '보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보수위원회규정 제3조에 따라 사외이사인 보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기만료 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말 기준으로 모든 위원의 재임기간은 2년 미만입니다.

보수위원회 활동 내역의 서류 보존 의무와 관련하여 보수위원회규정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으며,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57조에 보수위원회의 설치, 운영 내역과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부서의 관리, 감시활동 내역을 서류로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당사 보수위원회는 보수위원회규정 제3조, 제4조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5조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여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말 기준으로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총 4인(성재호, 곽수근, 김조설, 이윤재)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인 성재호 보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보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중 1인 이상을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이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리스크관리 측면이 보수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유무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이용국	사외	위원장	2022.3.24	2023.3.23		해당
배훈	사외	위원	2022.3.24	2023.3.23	해당	
변양호	사외	위원	2022.3.24	2023.1.12 (사임)	해당	해당
성재호	사외	위원	2023.2.8	2023.3.23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명	사내/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유무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성재호	사외	위원장	2023.3.23	2024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		해당
곽수근	사외	위원	2023.3.23	2024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	해당	
김조설	사외	위원	2023.3.23	2024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		
이윤재	사외	위원	2023.3.23	2024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	해당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보수위원회규정 제8조에 의거 당사 보수위원회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임원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재임기간은 물론 퇴임 후에도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3년도 제1회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회사 경영진 등에 대한 기본급과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를 결정하고 보수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3년도 제1회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대상 및 작성내용에 관하여 심의하였으며, 이를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회사 및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성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공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 보상을 결의하는 보수위원회가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습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3년도 제1회 보수위원회에서 회사 경영진 등의 성과평가체계 및 보수체계(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전년도 회사 경영진 보수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 보수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준법감시 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평가하여 회사의 보수체계가 지배구조법 등 관련 외규를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는 '라.(1)의사결정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중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3년도 제1회, 제2회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가 회사의 재무상황 및 리스크와 연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2023년도 제1회 보수위원회에서 실시한 전년도 보수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시 보수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준법감시 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3년도 제1회 보수위원회에서 외규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회사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외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 ① 국내: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적용
- ② 해외: 해당사항 없음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수 대상자의 결정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6조에 보수위원회에서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도 제1회 보수위원회에서 변동보수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분류	인원수(2023.12.31)	직명
임원 등	13명	회장, 부사장, 상무, 본부장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명	-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당사 보수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시 소집절차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회의일 통지 후 보수위원회 위원들에게 별도의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보수위원회 부의안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설명시에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안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위원회 결의에 참가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당사 보수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지주회사 및 자회사 경영진 등의 평가보수체계가 건전하게 수립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2023년에 보수위원회는 총 8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도 회사 경영진 성과평가체계 및 보수체계 결정, 2022년도 회사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안) 심의, 2022년도 보수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안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보수위원회 개최시마다 개별 위원들에게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진행하여 보수위원회 안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가) 2023년도 제1회 보수위원회: 2023.2.27 (월)

[안건통지일 : 2023.2.21 (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용국	배 훈	성재호	
1. 위원성명	이용국	배 훈	성재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2022년도 그룹 CEO 전략과제 평가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3년도 회사 경영진 등 성과평가체계 수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2년도 자회사 성과평가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23년도 자회사 성과평가체계 수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23년도 회사 경영진 등 보수체계 수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2022년도 보수체계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2022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1회 보수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총 7건의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2년도 그룹 CEO 전략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2023년도 회사 경영진의 성과평가체계 및 보수체계에 대해 심의하고 결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자회사 성과평가(안) 및 2023년도 자회사 성과평가체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보수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회사의 보수체계가 지배구조법 등 외규를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나) 2023년도 제2회 보수위원회: 2023.3.13 (월)

[안건통지일: 2023.3.2 (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성명	이용국	배 훈	성재호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회사 경영진 등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변경 검토	명확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4. 결의안건				
가. 2022년도 회사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 확정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회 보수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2022년도 회사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안)에 대해 심의 및 결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지주회사 경영진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회사 경영진 등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변경 검토(안)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다) 2023년도 제3회 보수위원회: 2023.3.23 (목)

[안건통지일: 생략 (위원 전원 동의하여 당일 긴급소집 개최)]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성명	성재호	곽수근	김조설	이운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3회 보수위원회는 정기 주주총회 이후 최초로 개최된 보수위원회로 새로 선임된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보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성재호 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라) 2023년도 제4회 보수위원회: 2023.5.10 (수)

[안건통지일: 2023.5.3 (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성명	성재호	곽수근	김조설	이운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보수위원회 운영 개요	특이의견 없음				
나. 2023년도 보수위원회 주요 이슈	특이의견 없음				
다. 2023년도 보수위원회 운영 계획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외부 전문 컨설팅을 통한 검토 실시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4회 보수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보수위원회 운영 개요와 2023년도 보수위원회 주요 이슈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전반에 대하여 외부 전문 컨설팅을 통해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마) 2023년도 제5회 보수위원회: 2023.7.27 (목)

[안건통지일 : 2023.7.20 (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성명	성재호	곽수근	김조설	이운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신규 선임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수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5회 보수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2023.7.1. 신규 선임된 그룹 소비자보호부문장의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에 대해 심의 및 결의하였습니다.

(바) 2023년도 제6회 보수위원회: 2023.10.17 (화)

[안건통지일 : 2023.10.5 (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성명	성재호	곽수근	김조설	이운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검토」 중간 보고	성과보수 체계 개선 방안과 함께 이를 추진할 보수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6회 보수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외부 전문 컨설팅을 통해 조사한 국내외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사) 2023년도 제7회 보수위원회: 2023.11.9 (목)

[안건통지일 : 2023.11.2 (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성명	성재호	곽수근	김조설	이운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경영진 등 성과보수 환수 기준 수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7회 보수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성과보수 환수 사유 중 금융감독기관 중징계에 대하여 제재 종류별로 환수 대상, 비율 등 원칙적인 환수 기준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 심의 및 결의하였습니다.

(아) 2023년도 제8회 보수위원회: 2023.12.19 (화)

[안건통지일 : 2023.12.12 (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성명	성재호	곽수근	김조설	이윤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검토」 결과 보고	도출된 개선 방안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존 제도와 정합성, 대내외 수용성 등을 감안한 단계적인 실행 계획 검토가 필요함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8회 보수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외부 전문 컨설팅을 통해 도출한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장기 성과 중심, 리스크/내부통제 강화 관점의 성과보수 체계 도입, 통제(Control)와 개입(Engagement) 간 균형 관점에서 내실 있는 보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4) 평가

보수위원회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이사회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의거 연1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평가목적, 주제, 기준, 방법은 본 연차보고서 '2.이사회-라.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평가-(1)이사회 평가상'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보수위원회 평가 결과 위원회의 운영 및 역할 수행정도는 우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3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
Remuneration System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87
나. 보수 세부사항	189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89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지주회사 임원에 대한 주요 성과지표

지주회사 CEO에 대해서는 재무 성과지표로 그룹KPI 항목인 주주가치 관련 지표(총주주수익률), 수익성 지표(ROE, ROA), 건전성 지표(고정아이하여신비용), 리스크 관련 지표(RAROC), 효율성 지표(총이익경비율)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재무 성과지표로는 그룹의 전략방향에 따른 주요 전략과제(시니어·청년 고객층 증가율 1위, 자본시장/글로벌 국내 Top 레벨 기반 구축, 고객경험 혁신을 통한 Digital to Value 달성, 아시아 리딩 ESG 금융그룹 추진, 균형 잡힌 인적 경쟁력 확보, 철저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주회사 경영진의 경우 그룹KPI 항목 및 각 경영진의 담당 업무별 주요 전략과제의 이행률을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연동되지 않는 성과지표를 사용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 자회사에 대한 주요 성과지표

자회사 성과측정시에는 그룹KPI, 회사KPI, 전략과제를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임원의 경우 전체 보상에서 성과급 비중을 50% 이상으로 구성하여 성과보수 중심의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측정 결과를 성과급 지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간성과급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는 전사 재무성과와 비계량적인 전략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평가를 통해 산정된 개인의 성과평가 등급이 연간성과급 지급률에 반영됩니다.

장기성과급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는 주주가치 관련 지표, 수익성 지표, 건전성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평가결과는 장기성과급 지급률에 반영됩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당사의 성과보수는 연간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성과보수 중 장기성과급 비중을 일반 임원은 50% 이상, 최고 경영진은 60%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연간성과급은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장기성과급은 부여 이후 4년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일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정책

성과보수액 중 장기성과급은 부여 이후 4년간의 평균 성과에 의해 최종 지급 수량이 결정되고, 지급시점의 주가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당사 장기성과급 구조상 지급 이전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목표에 미달할 경우 장기보수 전체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어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도 자연히 보수 금액이 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성과급 지급 이전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임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감독기관의 중징계를 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성과보수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보수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미확정의 결정 기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 장기성과급은 부여 당시 일정 수량의 주식수가 부여되며, 4년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주식수가 변동되며, 최종 운영기간 종료시점의 주가에 따라 최종 지급 금액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운영기간이 종료되어야 이연하여 지급하는 주식수와 보수금액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 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당사 임원의 고정보수는 기본급과 직무수당으로 구성되며,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변동보수는 연간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동보수의 각 규모는 매년 보수위원회 결의를 통해 기본급의 일정 배수로 결정되며 각 임원 직위별로 배수가 차등되어 있습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당사 임원의 성과보수 중 연간성과급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장기성과급은 신한지주 주식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 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변동보수 중 연간성과급은 현금으로, 장기성과급은 신한지주 주식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전체 성과보수 중 장기성과급의 비중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수 중 이연지급되는 장기성과급의 비중은 일반 임원의 경우 50% 이상이며, 최고 경영진의 경우는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위험관리, 준법감시 담당 임원 성과보상체계의 독립성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성과평가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연동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담당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결정됩니다.

(5)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당사는 임직원의 주인의식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노사협력 및 성과 공유를 위해 2002년 12월 9일 신한금융지주회사 우리사주조합을 창립하여 ESOP를 운영하고, 회사의 성과지표 달성률을 기준으로 매년 일부는 현금, 일부는 ESOP를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직원별 연간성과(목표달성도)에 연계하여 보수 지급액이 변동하는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보수규정에 따라 임금 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임금 항목을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기본급은 보수규정에 따라 직무/역할의 가치 및 책임의 크기,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등급별로 임금범위를 달리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8조에 따라 보수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의 경우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외부자문을 실시 하였습니다.

(7)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65조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은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리스크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8)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기준 개정에 따라, 임원 등의 성과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정정되는 경우 정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 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뉴욕증권거래소 상장회사 성과보수 환수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원의 보수 항목 중 '활동수당'의 명칭을 담당 직무의 성격 및 중요도에 따라 지급되는 해당 보수의 성격을 감안하여 '직무수당'으로 개칭하였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단위: 명, 억원)

구분	임직원보수총액(A) ^{주1)}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주2)}	비율(A/B)	임직원수(C)	임직원 평균보수(A/C)
전년도 (2022년)	318	55,837	0.57%	206	1.54
당해년도 (2023년)	322	63,493	0.51%	202	1.59

주1) 해당년도 말 재직 임직원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재함

주2) 그룹 연결기준의 (t-1)기의 금액을 기재 (예시: 당해연도가 2023년인 경우 2022년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재)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명, 억원)

구분		임원			직원		
		대표이사	사외/비상임이사	미등기임원	관리자	책임자	사원 등
전년도 (2022년)	보수총액	9	9	45	40	187	28
	성과보수액	-	-	18	8	26	5
	임직원수	1	13	10	21	136	25
당해년도 (2023년)	보수총액	7	7	51	42	196	19
	성과보수액	-	-	23	9	27	2
	임직원수	1	10	10	20	139	22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 지주회사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한함 (자회사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은 자회사 연차보고서에 내용 포함)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주1)}	기본급 ^{주2)}	성과보수액 ^{주2)}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2022년)	임원 등	13	40	61	33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0	0	0
당해년도 (2023년)	임원 등	4월15일 內 추가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주1) 해당년도 중 6개월 이상 임원 등(임원, 본부장)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주2)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액(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로 분류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주1)	주식연계상품 주2)	기타 주3)
전년도 (2022년)	임원 등	61	28	33	0	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0	0	0	0
당해년도 (2023년)	임원 등	4월15일 內 추가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주1)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기(중가)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시기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인 방법(예: 외부평가기관 2개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아 산정한 금액 등)으로 평가하여 산정

주2)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 (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주3)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

*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라도 주식관련 보수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주1)	
			지급확정	지급 미확정
전년도 (2022년)	임원 등	92	0	92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0	0
당해년도 (2023년)	임원 등	4월15일 內 추가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주1)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

*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기재하였으며, 2022년 발생 성과보수액을 2023년 1/4분기중 평가하여 이연규모를 확정하는 경우 등 이연보수액을 2022년말 기준 누적 이연보수액에 포함(이하 동일)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주1)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2022년)	임원 등	92	0	92	0	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0	0	0	0
당해년도 (2023년)	임원 등	4월15일 內 추가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주1)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연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주1)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2022년)	임원 등	92	33	31	15	13	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0	0	0	0	0
당해년도 (2023년)	임원 등	4월15일 內 추가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주1) 해당연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2022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22년(t기) 발생분, 2021년(t-1기) 발생분, 2020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축소액 주1)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주 주4)
	직접적 조정 주2)	간접적 조정 주3)		
전년도 (2022년)	임원 등	0	0	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0	0
당해년도 (2023년)	임원 등	4월15일 內 추가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주1) 해당년 직전연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결산기준) 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2) 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3) 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 (해당연도말 누적액 기준)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주1)	1인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22년)	임원 등	0	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	0
당해년도 (2023년)	임원 등	4월15일 內 추가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주1)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제외

2023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
Remuneration System



 **첨부**

1. 관련규정
2.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1. 정 관

2001.	9.	1	제정
2002.	3.	20	개정(1)
2003.	3.	31	개정(2)
2004.	3.	25	개정(3)
2006.	3.	21	개정(4)
2008.	3.	19	개정(5)
2009.	3.	17	개정(6)
2010.	3.	24	개정(7)
2011.	3.	23	개정(8)
2012.	3.	29	개정(9)
2015.	3.	25	개정(10)
2016.	3.	24	개정(11)
2017.	3.	23	개정(12)
2019.	3.	27	개정(13)
2020.	3.	26	개정(14)
2021.	3.	25	개정(15)
2023.	3.	23	개정(16)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Shinhan Financial Group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사업의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2.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금지원
3.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4. 자회사등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2011.3.23 개정)
5.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011.3.23 신설)
6. 위 각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nhangroup.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에 한다.(2019.3.27 개정)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식 284,453,152주에 1998년 12월 2일 주식회사 신한은행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보유자가 2001년 7월 15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발행, 이전될 기명식 보통주식수를 합산한 주식수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기명식 우선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대해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의 분배금액은 해당 우선주식의 최초 발행가액과 미지급 배당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2003.3.31신설)

제9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2 범위 내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단, 우선배당율을 조정할 수 있는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012.3.29 개정)

③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여부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2021.3.25 개정)

제10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2019.3.27 개정)

제11조(전환주식) ① 이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과 동수로 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전환주식의 발행금액 총액이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의 발행금액,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액 및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금액과 합산하여 2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회사 발행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세부적인 내용 및 조건과 주식의 배정에 관해서는 제2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1.3.25 개정)

⑤ (삭제) (2021.3.25 개정)

제12조(상환주식) ① 이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회사가 상환기간 만료시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④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⑤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과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통지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상환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2012.3.29 개정)
- ⑥ 이 회사는 상환주식 발행시의 이사회 결의로써 그 상환주식을 제11조에서 정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13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2009.3.17 개정)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2012.3.29 신설)
- ④ 제2항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2009.3.17 개정)
-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4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상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여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9.3.17 개정)

- ② 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성과 달성률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유예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이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 회사 또는 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002.3.20, 2009.3.17 개정)
 -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2. 주요주주(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9.3.17 개정)
-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2002.3.20 개정)
-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2002.3.20 개정)
- ⑨ (삭제) (2021.3.25 개정)
- 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2009.3.17 개정)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2021.3.25 개정)

제16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2019.3.27 개정)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2021.3.25 개정)

제17조(주주명부 작성·비치)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2021.3.25 개정)

제18조(기준일) ① (삭제) (2021.3.25 개정)

-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2021.3.25 개정)
- ④ 제3항 후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장 사 채

제19조(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2019.3.27 개정)

제19조의2(사채 등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제3장에서 규정하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 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021.3.25 개정)

제20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발행금액 총액이 제11조 제4항에 따른 전환주식의 발행금액,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액 및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금액과 합산하여 2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21.3.25 개정)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한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에게 발행하는 경우
 3.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후회사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09.3.17 개정)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삭제) (2021.3.25 개정)

제21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발행금액 총액이 제11조 제4항에 따른 전환주식의 발행금액,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의 발행금액 및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금액과 합산하여 2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21.3.25 개정)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한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에게 발행하는 경우
 3.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후회사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09.3.17 개정)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삭제) (2021.3.25 개정)

제22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발행금액 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21.3.25 개정)

1. 이익참가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후회사 등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해외에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09.3.17 개정)
- ② 제1항에 의거하여 발행된 사채의 이익배당참가에 관한 사항은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기준으로 하여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23조(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금액 총액이 10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고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2021.3.25 개정)

- ②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의무가 감면(이하 "채무재조정"이라

한다)된다.

1. 이 회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이 회사가「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 ③ 이 회사의 이사회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당시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내용 및 조건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2015.3.25 조 신설)

제23조의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의 발행금액 총액이 제11조 제4항에 따른 전환주식의 발행금액,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의 발행금액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액과 합산하여 2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고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2021.3.25 개정)
 - ②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2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며, 그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전환가액 등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전환의 조건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세부사항은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이 회사는 제1항의 총액 범위 내에서 주주의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주주가 그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배정 시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그 처리방법을 정한다.
 - ⑤ 이 회사는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및 제휴회사 등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총액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⑥ (삭제) (2021.3.25 개정)

제4장 주주총회

제24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5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이 소집한다. (2011.3.23 개정)

- ② 대표이사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자가 소집한다. (2023.3.23 개정)

제26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009.3.17 개정)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2009.3.17 개정)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27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8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제25조에서 정한 소집권자로 한다.

제29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1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의 결의에서 서면결의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이사회

제36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이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2003.3.31 개정)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2019.3.27 신설)

제37조(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2012.3.29 개정)

제38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6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으며 회사 또는 자회사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직간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2010.3.24 개정, 2017.3.23 개정)

② 제1항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2009.3.17 개정)

제39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2017.3.23 개정)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사외이사는 그 재임기간 동안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자회사등의 사외이사 겸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3.24 조 신설, 2015.3.25 조 개정)

제40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36조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6조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1조(대표이사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1인을 선임한다. (2004.3.25, 2011.3.23, 2015.3.25 조 개정)

제42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 회장은 이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총괄한다.(2011.3.23 개정)

-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분장, 집행한다.(2004.3.25 개정)

제43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회는 정기이사회회와 임시이사회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회는 분기 1회, 임시이사회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 ③ 이사회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2002.3.20, 2011.3.23 개정)

제45조(이사회회의 의장) ① 이사회회의 의장은 매년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2010.3.24 개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의장 이외에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이사회회의 결의로 선임하여야 한다. (2010.3.24 개정)

제46조(이사회회의 결의 등) ①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2.3.29 개정)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이사회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2016.3.24 신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 8.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제47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15.3.25 개정)

제48조(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2004.3.25 개정, 2012.3.29 개정, 2015.3.25 개정)

- 1. 회장후보추천위원회 (2021.3.25 개정)
- 2. (삭제) (2021.3.25 개정)
- 3. 감사위원회
- 4.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2021.3.25 개정)
- 5. 위험관리위원회(2017.3.23 개정)
- 6. 보수위원회(2017.3.23 개정)
- 7. (삭제) (2021.3.25 개정)
- 8. ESG전략위원회 (2021.3.25 개정)
- 9.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21.3.25 신설)
- 9.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2023.3.23 개정)
- 10.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023.3.23 신설)
- ② 각 이사회내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04.3.25 개정, 2015.3.25 개정)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5.3.25 개정)

제49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구체적인 이사의 보수지급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021.3.25 개정)

제50조(고문 등)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명예이사,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제6장 감사위원회

제51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017.3.23 개정)

- ② 감사위원회의 위원후보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023.3.23 개정)
- ③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2015.3.25 개정)
- ④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2015.3.25 신설)
- ⑤ 감사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2015.3.25 개정)
- ⑥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사위원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9.3.27 신설)

제52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으로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12.3.29 신설)
-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2.3.29 신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2019.3.27 개정)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53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7장 계 산

제54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5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11.3.23 개정)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2012.3.29 개정)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2012.3.29 신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3.23 개정)
- ④ 대표이사 회장은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2011.3.23, 2012.3.29 개정)
- ⑤ 대표이사 회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2004.3.25, 2008.3.19, 2011.3.23, 2019.3.27 개정)

제56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012.3.29, 2019.3.27 개정)

제57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준비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58조 (삭제) (2020.3.26 개정)

제59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23.3.23 개정)

제59조2(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2009.3.17 개정)

-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2009.3.17 개정)
 -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2012.3.29 개정)
 -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2021.3.25 신설)
 -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용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2021.3.25 개정)
 - 7. 당해 영업연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2021.3.25 신설)

④ (삭제) (2021.3.25 개정)

- ⑤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다만,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에서 이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21.3.25 개정)

제60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61조(보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나 상법, 또는 기타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 정관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 정관 제1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증권예탁원으로 한다.

제4조(설립 이후 최초의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정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대표이사 회장 및 대표이사 사장은 1인이 겸직하는 것으로 하여 주식이전회사의 주식이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5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의 선임) 정관 제3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 없이 주식이전회사의 주식이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6조(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식이전회사의 주식이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7조(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 정관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는 10억원을 한도로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주식이전회사) 아래 주식이전회사들은 공동으로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01년 8월 10일 기명날인한다.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20

대표이사 은행장 이 인호 (인)

신한증권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4

대표이사 사장 유 양상 (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26-3

대표이사 사장 강 신중 (인)

신한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4

대표이사 사장 백 보길 (인)

부 칙(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 3.20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 3.31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 3.25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3.21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주식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2항,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우선주식부터 적용한다.

부 칙(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3.19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3.17부터 시행한다.

부 칙(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3.24부터 시행한다.

부 칙(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3.23부터 시행한다.

부 칙(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4.15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47조 제1항 제1호, 제55조는 2012년 정기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3.25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8.1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16기 정기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18기 정기 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0조, 16조, 17조, 19조 및 19조의2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19기 정기 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20기 정기 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2. 지배구조 내부규범

2015.	2.	26	제정
2016.	3.	24	개정(1)
2016.	7.	21	개정(2)
2017.	2.	8	개정(3)
2017.	3.	23	개정(4)
2018.	2.	20	개정(5)
2018.	5.	17	개정(6)
2018.	8.	16	개정(7)
2018.	12.	12	개정(8)
2019.	3.	27	개정(9)
2019.	12.	13	개정(10)
2020.	5.	21	개정(11)
2020.	12.	17	개정(12)
2021.	3.	25	개정(13)
2022.	3.	2	개정(14)
2023.	3.	23	개정(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의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 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그룹”이라 함은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자회사등을 말한다.
2. “자회사등”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가. 「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하 “은행”이라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4. “상법상 회사”란 「상법」제169조의 회사(「상법」규정을 준용하는 특별법에 의한 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6.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7. “사외이사”란 「상법」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를 말한다.
8. “겸직 비상임이사”란 그룹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9.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사장·부사장·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 및 자회사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020.12.17 개정) (2022.3.2 개정)

10. "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11. "이사회등"이란 상법 제390조에 따른 이사회 및 같은 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
12. "경영진"이란 임원중에서 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3.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란 금융회사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14. "성과보수"이란 성과에 연동(連動)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를 의미한다.
15.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란 회사가 제67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및 지배구조 운영 등에 관하여 매년 작성하여 공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16.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란 회사가 제67조 제2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매년 작성하여 공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17. "준법감시인"이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제1절 이사회

제3조(이사의회의 구성)

- ①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추고 그룹의 창업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한다.
- ② 이사회는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 ③ 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이사의회의 권한 및 책임)

-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자회사를 포함한 경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조직의 중요한 변경 및 계약에 관한 사항
 5.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2021.3.25 개정)
 6.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
 7.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회사의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수립·평가 및 상시적인 최고경영자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이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1.3.25 신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및 그 실적

2. 이사회내위원회의 심의 및 결의사항
 3. 다른 규정에서 정한 이사회 보고사항
 4. 그 밖에 대표이사 회장이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이사회는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④ 이사회가 각 이사회내위원회 규정의 「결의사항 등」의 제·개정을 통해 권한위임을 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내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제5조(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인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회사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제6조(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8조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이사회는 연1회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이사회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참고하며,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절 이사회내위원회

제9조(이사회내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2021.3.25 개정, 2023.3.23 개정)
 1. 회장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4. 위험관리위원회
 5. 보수위원회
 6. ESG전략위원회
 7.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8.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이사회내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결의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중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에 한한다. (2021.3.25 개정)

- ③ 이사회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④ 이사회내위원회는 연1회 해당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며,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0조(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업무) (2021.3.25 개정)

- ① 회사는 대표이사 회장을 추천하기 위하여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 ②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단, 대표이사 회장 후보 선정을 위한 최종 회의에는 사외이사 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며, 이 때는 사외이사 전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2016.3.24 개정) (2019.3.27 개정)
- ③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
 - 2. 대표이사 회장의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
 - 3.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 추천
 - 4.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 ④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제3항 제4호의 후보자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⑤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이사회등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1조 (삭제) (2021.3.25 개정)

제12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이하 이 조에서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 ②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1항에 따른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구성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한다.
- ③ 감사위원 후보는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1.3.25 개정)
- ④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 2. 외부감사인 선정 및 외부감사인 해임요청 (2018.8.16 개정)
 -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제13조(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2021.3.25 개정)

- ①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단, 사외이사 후보 최종 추천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 절차가 개시되면 사외이사 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며, 이 경우 사외이사 전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2018.5.17 개정)
- ②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
 - 3.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③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2항제3호의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④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후보로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이사회등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4조(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2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②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회사 및 자회사별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 그룹리스크관리규정과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6.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금융감독원의 비소매 및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그룹 내부등급법 승인 관련 의사결정 사항
 9. 그 밖에 이사회 및 위험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보수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보수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 ② 보수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위험관리위원회 소속이사로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③ 보수위원회는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1.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 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자회사의 연간 성과평가 결정에 관한 사항 (2018.12.12 개정)
 5. 회사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결정
 6. 보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보수 체계와 관련된 사항
- ④ 보수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삭제) (2021.3.25 개정)

제17조(ESG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2021.3.25 개정)

- ① ESG전략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② ESG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2. 기후변화대응을 포함한 친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규범/정책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속가능경영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이사회내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사외이사는 보수위원회 및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회내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이사회내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업무)

- ① 회사는 자회사 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2023.3.23 개정)
- ②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2021.3.25 개정, 2023.3.23 개정)
- ③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020.5.21 개정, 2023.3.23 개정)
 - 1.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
 - 2.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
 -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 4.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 5. 자회사 대표이사 리더십 평가에 관한 사항
- ④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제3항 제4호의 후보자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2023.3.23 개정)
- ⑤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이사회등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023.3.23 개정)

제3절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

제20조(자회사등에 대한 이사회등의 책임)

- ① 이사회등은 자회사등이 조직구조, 영업 및 관련 위험관리에 적합한 지배구조 정책과 절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이사회등은 자회사등의 이사회에 대하여 독립적인 법률상 및 지배구조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회사등에 대한 적절한 감독활동을 수행한다.
- ③ 이사회등은 자회사등이 노출하고 있는 위험의 성격, 규모, 복잡성을 감안하여 위험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수립하고 위험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제21조(자회사등에 대한 이사회등의 권한)

- ① 제4조의 권한에 추가하여 이사회등은 자회사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할 수 있다.
 - 1. 자회사등의 경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나.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자회사등의 경영성과 평가 및 보수의 결정에 관한 사항
 - 3. 자회사등의 지배구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
 - 나. 자회사등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의 수립·평가 및 상시적인 자회사등의 최고경영자후보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자회사등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5.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자회사등에 대한 위험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임원·사외이사후보추천원칙, 보수원칙, 보수정책 등 자회사등을 전체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의사항을 자회사등이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자회사등에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이사 및 최고경영자

제1절 이사

제22조(이사의 선임 및 퇴임)

- ①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021.3.25 개정)
- ② 사내이사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021.3.25 개정)
- ③ 비상임이사 또는 대표이사 회장이 아닌 사내이사는 이사회에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021.3.25 개정)
- ④ 주주총회는 이사가 이사로서 신분을 유지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임할 수 있으며, 이사는 사임, 임기만료,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임한다

제23조(이사의 자격요건)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사외이사는 그 재임기간 동안 자회사등을 제외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
- ③ 사내이사의 자격요건은 본 규범 제44조를 따른다.
- ④ 비상임이사는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24조(이사 후보 추천절차)

- ①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이사회내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 ②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이사회내위원회는 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 ③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한다. (2021.3.25 개정)
- ④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한다. (2021.3.25 개정)

제25조(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의 공시)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통지에 같음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을,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안내한다. (2021.3.25 개정)

1. 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4. 사외이사 후보자와 회사 및 자회사등(그 임원 및 대주주 포함)과의 관계
5. 관련법령 및 제23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7.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8. 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26조(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연임될 수 있다.
 1. 사외이사 :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
 2. 사내이사 및 비상임이사 : 3년 이내
- ② 제1항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③ 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제30조에 의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사외이사는 6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으며 회사 또는 자회사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의 해당년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해당년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사외이사의 역할)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8조(이사의 자료요청권 등)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이사의 책임)

- ① 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등이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한다.
- ② 사외이사는 제1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등의 참여에 할애한다.
- ③ 이사는 재임기간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 및 자회사등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⑤ 회사는 매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여 이사 재임시의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⑥ 회사가 제5항에 따라 가입·갱신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외이사의 자기부담액을 배상책임액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기부담액의 최대 한도는 1억원 이내로 한다.
- ⑦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등"이라 한다)이 회사(자회사등 및 회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기부금(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기 이전에 회사가 회원·사원 등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등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기부금·출연금 등은 제외한다. 이 항에서 “기부금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소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외이사가 회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2.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사외이사 등이 비영리법인등의 수탁자·임직원이 되는 경우 수탁자·임직원이 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제30조(이사에 대한 평가)

- ① 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 ② 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한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한다.
- ④ 사내이사에 대한 평가는 본 규범 제50조를 따른다.
- ⑤ 비상임이사에 대한 평가는 사외이사의 평가를 따른다. 다만, 겸직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이사의 보수)

- ①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이사회내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실적에 상응한 보수체계를 수립한다.
- 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수당, 직책수당, 회의 수당, 참가 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사내이사의 보수는 본 규범 제51조를 따른다.
- ④ 비상임이사의 보수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따른다. 다만, 겸직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운영)

- ① 회사는 사외이사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사외이사 지원부서로서 이사회사무국을 운영한다. (2021.3.25 개정)
- ② 이사회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021.3.25 개정)
 1. 제5조제3항에 따른 선임사외이사의 업무 지원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업무 지원
 3.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4.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검증 업무 지원
 5.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 ③ 이사회사무국은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제2항제2호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한다. (2021.3.25 개정)

제33조(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 ① 회사는 이사가 회사와 자회사등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와 자회사등의 업무집행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한다.
- ② 이사가 경영정보의 보고 또는 제공을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 ③ 회사는 이사회 등의 회의자료를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발송하여 해당 이사회 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8.5.17 개정)

제34조(이사에 대한 자문용역의 제공) 회사는 이사가 회사와 자회사등에 대한 이사회등의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회계·경영 관련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

제35조(이사에 대한 교육)

- ① 회사는 신입 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보고 등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대신할 수 있다.
 1. 회사 또는 자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중에서 선임된 경우
 2. 다른 금융기관의 재직 경력 등으로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임된 경우
- ② 회사는 이사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한다.

제2절 최고경영자

제36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업무 단계별 소요기간, 주체, 관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3.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4.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5.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6.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행자 선정, 선임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이사회는 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 제3호의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또는 시기를 정한다.
- ④ 이사회는 제3항의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선임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회사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한다.
- ⑤ 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 ⑥ 이사회는 제1항의 내부규정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한다.

제37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 ① 회사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의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부서를 둔다. (2019.3.27 개정) (2021.3.25 개정) (2023.3.23 개정)
- ②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업무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019.3.27 개정)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 ③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업무 지원부서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제2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한다. (2019.3.27 개정) (2021.3.25 개정) (2023.3.23 개정)

제38조(최고경영자의 자격)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최고경영자로 선임한다.

제39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 ①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한다. (2021.3.25 개정) (2023.3.23 개정)

- ②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자가 관련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한다. (2021.3.25 개정) (2023.3.23 개정)
- ③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2021.3.25 개정) (2023.3.23 개정)

제40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린다. (2021.3.25 개정) (2023.3.23 개정)

-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 2.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 3. 최고경영자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1조(책임경영체제 확립)

- ① 회사는 경영진의 임기를 상당 기간으로 하고 경영진(등기 임원 제외)의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거나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한다.
- ② 회사는 능력에 근거한 경영진의 선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의 임명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해임 및 퇴임사유 등을 명문화 한다.

제42조(적용범위)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는 본 규범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이 경우 "이사회"를 "지주회사 이사회"로, "최고경영자"를 "자회사등의 최고경영자"로, "경영승계"를 "자회사등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로 본다. (2020.5.21 개정)

제43조(경영의사결정 체계)

- ① 그룹의 전략적 경영의사결정을 위하여 그룹경영회의를 설치한다.
- ② 그룹경영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표이사 회장으로 한다.
 - 1.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35조제5항에 따른 주력 자회사의 최고경영자
 -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 및 자회사등의 임직원
 - 3. 위원장이 참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때마다 지명하는 사람
- ③ 그룹경영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1. 회사 및 자회사등의 연간 사업계획
 - 2. 회사 및 자회사등의 해산·영업양도·분할·합병 및 자회사등의 편입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3. 회사 및 자회사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규의 제·개정
 - 4. 전략적 공동투자, 핵심 전산시스템 변경 등 2개 이상의 자회사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영사항 중 위원장이 자회사등 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그룹경영회의는 제3항에 따른 사항 중 위험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제74조제3항에 따른 그룹리스크협의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그룹경영회의는 상정 안건명과 주요 논의내용을 기록한다.
- ⑥ 그 밖에 그룹경영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경영진에 관한 사항

제1절 경영진의 자격요건

제44조(경영진의 자격요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영진이 되지 못한다.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대표이사 회장은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③ 대표이사 회장이 아닌 경영진은 도덕성을 갖추고,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통해 회사의 건전한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2절 경영진의 권한과 책임

제45조 (권한과 책임) ① 대표이사 회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하며 다음 각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 1. 이사회의장으로서 이사회의 운영(회장이 이사회의장으로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 2. 주주, 관련기관 등 회사의 이해관계인과의 의사교류 원활화를 위한 역할
- 3. 회사 업무 전반의 총괄 및 이해관계인의 조정 역할
- 4.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요청하는 역할
- ② 대표이사 회장 이외의 경영진은 대표이사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소관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 ③ 경영진은 이사회와 이사회내의 각 위원회 및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 하여야 한다.

- ④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절 경영진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46조(경영진의 선임 및 해임)

- ① 대표이사 회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021.3.25 개정)
- ② 대표이사 회장 아닌 경영진 중 전략기획·재무관리 담당 경영진,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021.3.25 개정)
- ③ 이사회는 자질, 업적, 역량 등을 감안하여 경영진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경영진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대표이사 회장이 아닌 경영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경영진 직위에서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2022.3.2 개정)
 - 1. 법규, 정관, 내규, 위임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회사와 경영진간에 체결된 위임계약서에서 해임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제47조(직무대행 등)

- ① 대표이사 회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1.3.25 개정)
- ② 전략기획, 재무기획,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진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경영진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1.3.25 개정)
- ③ 제1,2항 외의 경영진의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 회장이 정하는 경영진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임기) 대표이사 회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에 따르며, 대표이사 회장 아닌 경영진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단,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를 담당하는 경영진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2022.3.2 개정)

제4절 경영진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49조(경영진 등에 대한 교육 및 평가 활용)

- ① 회사는 경영진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하여 전략, 리더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경영진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하며, 그 평가결과를 경영진 선임 시 고려한다.

제5절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50조(경영진의 성과평가)

- ①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②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계량적인 평가 외에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며, 담당업무 성과 외에 회사등 조직 단위의 업무성과와 연동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③ 경영진에 대한 평가결과는 보수의 지급이나 재선임 또는 해임시에 활용한다.

제51조(경영진의 보수)

- ① 경영진의 보수는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2023.3.23 개정)
- ② 경영진의 보수는 연봉(기본급, 연간성과급)과 직무수당으로 하며, 보수와는 별도로 성과연동형 장기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023.3.23 개정)

제5장 감사위원회

제52조(기본원칙)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 ② 감사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제53조(감사위원회의 권한 등)

-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회사 및 자회사등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② 경영진은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54조(감사보조조직)

- ① 감사위원회에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팀을 둔다.
- ② 감사팀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 ③ 회사는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으로 감사팀을 운영한다.
- ④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이사회에 대한 보고)

- ① 감사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감사실시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이를 즉시 보고한다.

제6장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제56조(기본원칙)

- ① 보수위원회는 회사의 보수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보수체계가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과도한 성과보수 지급으로 회사 및 자회사의 자본적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③ 회사는 건전한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성과 연계 보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으로 임직원의 보수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한다.

제57조(보수위원회 활동의 서류 보존) 회사는 보수위원회의 설치·운영 내역과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부서의 관리·감시활동내역을 서류로 보존한다.

제58조(보수와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 ①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담당자로 채용·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회사는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회사의 보수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업무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시 대상이 되는 분야의 성과와는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59조(성과보수의 원칙, 설계 및 조정)

- ①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 중 성과보수 비율은 성과평가와 연동하고, 그 비율은 책임의 정도, 직무의 특성, 담당 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따라 달리한다.
- ②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의 상당부분을 성과보수로 하고,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한 성과에 따라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회사는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경영진(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60조, 제61조 및 제62조에서 같다),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 규모가 조정될 수 있도록 보수제도를 설계한다.

제60조(이연지급)

- ①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는 담당 업무의 투자성 정도, 투자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3년 이상 이연지급한다. 다만,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성의 존속기간 수준으로 이연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2018.2.20 개정)
- ② 회사는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성과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한다. (2018.2.20 개정)
- ③ 이연지급시 이연기간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 배분한 수준보다 작도록 한다. (2018.2.20 개정)
- ④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한다. (2018.2.20 신설)

제61조(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

- ① 회사는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 중 상당부분을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등 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한다
- ② 회사는 주식 또는 주식연계 상품에 대하여 부여시점 이후 최소 일정 기간 동안 지급이 유보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회사는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장기보수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④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2018.2.20 신설)

제62조(현금보수 지급 등)

- ① 이연지급된 보수 중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한 잔여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현금보수로 지급될 수 있다.
- ② 지급확정기간 중 회사는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 미확정 부분을 재무성과나 손실규모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제63조(보수체계 재조정) 회사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개입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보수체계를 건전한 리스크관리 및 장기성장과 연계되도록 재조정할 수 있다.

제64조(보장형 상여 및 과도한 퇴직보수의 제한)

- ① 회사는 보장형 상여를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규 임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최소의 보장형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한다.

② 회사는 과도한 퇴직 보수로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창출 및 리스크관리의 건전성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제65조(개인적 리스크회피 전략 등 금지) 회사 임직원들은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리스크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을 활용하여서는 안된다.

제66조(성과평가 지표)

- ① 회사는 단기적인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 성과와 수익성,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경영진의 성과평가 지표를 설정하며,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 1. 외형 및 자산 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성 및 수익성 관련 지표를 반영
 - 2. 수익성 지표를 사용할 경우 비경상적인 요인들은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위험을 감안한 수익성 지표를 반영
 - 3. 재무적 지표 이외에 비재무적 지표로서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표를 반영
 - 4. 회사의 성과를 장기간에 걸쳐 측정·평가하고 장기성과의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연지급 변동보수 제도를 활용
 - 5. 내부목표 달성 외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간 비교 가능한 성과지표를 반영

제7장 공시

제67조(정기공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회사가 속한 관련 협회 등의 장이 정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른다.
 - 1.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 내부규범,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윤리강령 등) 및 지배구조 현황 (2021.3.25 개정)
 - 2.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등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항
 - 가.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등의 역할, 책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나.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 다.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부의장이 있는 경우 부의장, 선임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선임사외이사, 그 밖의 구성원 명단 및 경력
 - 라.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및 이사들의 개인별 참석 현황
 - 마. 최고경영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이유
 - 3.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021.3.25 개정)
 - 가.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 나.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 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업무수행 평가방식 등 사외이사 선임기준
 - 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 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 마. 법에 따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 바. 사외이사 후보와 회사 및 자회사등(그 임원 및 대주주 포함)과의 관계
 - 사.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및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 아.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차.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과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
 - 카. 이사회사무국이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 타. 그 밖의 이사회가 정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 관련 사항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회의일시, 보고안건을 포함한 안건내용,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위원회 참석 및 찬성 여부
 - 나.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현황
 - 다. 사외이사에 대하여 제공한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현황
 - 라. 관련 법령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
 - 마.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호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공내역
 - 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근거로 한 평가 개요 및 평가 결과
 - 사. 사외이사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 아. 사외이사 개인별 재직기간
 - 자.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총액 및 내역
 - 차.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카. 회사와 사외이사등 소속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타.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5.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021.3.25 개정)
- 가.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나.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절차 개요
 - 다.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 라.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된 경우 내역
 - 마.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관리 내역
 - 바. 이사회의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 사.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6.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021.3.25 개정)
- 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 나.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 다. 대표이사 회장 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등 대표이사 회장 선임기준
 - 라.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와 제안자와의 관계
 - 마. 법에 따른 대표이사 회장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 바.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 추천이유 및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의 경력
7.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8. 위험관리위원회 활동 내역
9.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권고·지시한 사항 및 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
10.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작성 기준에 따른다.

1.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을 포함한 회사의 보수체계 의사결정 절차
2. 성과측정 및 위험 조정 기준,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 이연, 지급확정 및 환수기준, 현금과 주식, 그 밖에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포함한 보수 체계의 주요 특성
3. 회계연도 중 보수액(기본급 및 성과보수를 구분하고 대상 임직원수를 포함한다)
4. 성과보수 금액 및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한다)
5. 이연된 성과보수(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
6.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7. 회계연도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기준 최고 지급액
8. 회계연도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
- ③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익년도 정기 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해당 회사 및 관련 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등이 직전년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변동보수는 이를 결의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한다.
-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공시를 함에 있어 이 규범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68조(수시공시)

- ① 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 ② 회사는 제18조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한다.

제69조(주주총회)

- ① 회사는 사외이사 관련 주주총회 안건 상정시 사외이사후보추천 등 성격이 상이한 안건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의장, 이사회내위원회 위원장은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 ③ 회사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행사 주식수, 안건별 찬반 주식수 비율 등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제70조(공시방법) 이 규범에 따른 공시는 회사 및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제8장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등

제71조(내부통제체제)

- ①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 ②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룹내부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72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 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한다.
- ③ 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⑤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73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 그 밖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과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준법감시인이 된 사람이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74조(리스크관리체제)

- ① 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 ②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룹리스크관리규정에서 정한다.
- ③ 회사는 리스크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의 리스크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그룹리스크협의회를 설치한다.
- ④ 그룹리스크협의회는 위원장은 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 하고 위원의 구성은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을 따른다. (2020.5.21 개정)
- ⑤ 그룹리스크협의회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그룹경영회의에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견을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⑥ 그룹리스크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75조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 ① 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한다.
- ②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한다.
- ③ 회사가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76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①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관련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사람이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77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의 경영 업무

4. 자회사등의 업무(위험관리책임자가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

5.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78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한다.

③ 회사 및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한다.

④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범은 2015. 2. 26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한캐피탈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날부터 이 규범 제42조를 적용한다.

③ 제9조제8호 및 제17조의 시행일은 2015.3.25 로 한다.

제2조(적용례 등) ① 제23조제2항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 규범 시행 후 선임(재선임과 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범 시행일 현재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자도 제29조제7항제1호과 관련해서는 이 규범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초로 선임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규정) 규정의 일체 내용이 본 규범으로 이동 및 변경된 「사외이사운영규정」은 폐지한다.

첨부

부 칙(1)

1. (시행일) 이 규범은 2016. 3.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2)

1. 이 규범은 2016.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3)

1. 이 규범은 2017. 2. 8부터 시행한다.
2. 제26조제4항의 시행일은 제16기 정기주주총회일로 한다.

부 칙(4)

1. (시행일) 이 규범은 2018.2.20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제19조 제3항은 제주은행의 경우 2018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관련 규정을 변경한 때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5)

1. (시행일) 이 규범은 2018. 5.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6)

1. (시행일) 이 규범은 2018.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7)

1. (시행일) 이 규범은 2018. 12.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8)

1. (시행일) 이 규범은 2019. 3.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9)

1. (시행일) 이 규범은 2019. 12.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1. (시행일) 이 규범은 2020. 5.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1. (시행일) 이 규범은 202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1. (시행일) 이 규범은 2021. 3. 25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위원회의 역할이 이사회로 이동한「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과 다른 위원회와 통합된「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13)

1. (시행일) 이 규범은 2022. 3. 2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1. (시행일) 이 규범은 2023. 3. 23부터 시행한다.

3. 그룹내부통제규정

2010.	2.	4.	제정
2011.	2.	21.	개정(1)
2012.	3.	29.	개정(2)
2016.	7.	21.	개정(3)
2018.	4.	1.	개정(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등(이하 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을 총칭하여 “그룹”이라 하고, 그룹에 속하는 각 회사를 “그룹사”라 한다)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룹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및 각 법률의 시행령, 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부통제기준”이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투자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2. “내부통제”란 그룹 임직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게 하고 회사가 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3. “내부통제체제”란 내부통제 관련 조직, 규정 등 그룹사의 임직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체제를 말한다.
4. “준법감시인”이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그룹사의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그룹사의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법규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② 그룹사의 내규(정관을 제외한다)는 이 규정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제·개정) 이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법령 및 내규의 개정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 등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회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① 그룹사의 조직구조와 업무분장은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② 그룹사는 직제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제1항의 원칙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의 조직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자회사등의 조직구조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회사등에 대하여 조직구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자회사 경영관리업무등”이라 한다)를 영위하여야 하며,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의 수행과 관련된 내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⑤ 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은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휘·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⑥ 지주회사는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을 영위함에 있어 자회사등에 대한 조인·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자회사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⑦ 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훼손하거나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⑧ 지주회사는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을 수행함에 있어 자회사등의 협조 또는 이해조정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자회사등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그룹 내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제2장 내부통제조직

제6조(이사회) ① 지주회사 이사회는 그룹사를 통괄하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자회사등의 이사회는 이를 토대로 각 회사별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 ② 그룹사 이사회는 그룹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그룹사의 내부통제체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다.
- ③ 그룹사 이사회는 그룹사의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하고 그룹사의 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체제 등 내부통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7조(대표이사) ① 그룹사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내부통제체제를 구체적으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그룹사 대표이사는 그룹사의 내부통제체제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조직구조 등을 구축·확립하는 등 내부통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내부통제체제의 유효성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한다.
- ③ 그룹사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그룹사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체제·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통제체제·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내부통제위원회) ① 그룹사는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한다.
- ③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2.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3.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4.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등
- ④ 내부통제위원회는 매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9조(준법감시인) ① 그룹사 준법감시인은 각 회사별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 ② 그룹사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매뉴얼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 ③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그룹의 내부통제체제를 총괄한다. 이 경우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이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에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임직원) 그룹사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법규, 내규 및 윤리강령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내부통제체제 구축 및 운영

제11조(업무수행 시 준수절차) ① 그룹사의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금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그룹사의 비전과 목표, 경영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룹사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그룹사는 그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준수해야 할 기준, 유의사항 등을 각 회사 내규 등에 정하고 동 내규 등의 내용이 그룹사의 임직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룹사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주회사는 그룹사의 임직원이 제2항에서 정한 내규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정보 및 의사전달 체계) ① 그룹사는 각 회사 및 임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그룹의 비전과 전략 및 핵심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공유되도록 하는 정보 및 의사 전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에는 그룹사의 재무 및 경영정보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직 및 임직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그룹사는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지주회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비점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정보 및 의사전달 방법) ① 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에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보 및 의사 전달은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주회사는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을 수행하면서 자회사등의 주요 경영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이는 공식문서(골드윙 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한다.

③ 지주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공식문서로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관련 내규에 정하여야 한다.

제14조(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확인) ① 그룹사 준법감시인은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범위 및 점검주기 등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점검한다.

②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회사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내부감사부서 등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제15조(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 ①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소속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감사위원회 및 대표이사 회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지주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및 대표이사 회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조사결과, 내부통제체제 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회사등 또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자회사등 및 관련부서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그룹사의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사전협의 등) ① 그룹사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회사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협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그룹사의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사항 중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그룹사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불공정행위의 방지) ① 그룹사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다른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 또는 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임직원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의 보고 등의 절차나 기준은 그룹사의 관련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제2항에 따른 관련 내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회사등 준법감시인의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2. 그룹사 준법감시인이 해당 회사 임직원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사항
- ④ 그룹사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자금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예금 등의 구속 행위 및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그룹사 임직원은 고객 및 이해관계 있는 자와의 각종 거래와 관련하여 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허위·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① 그룹사는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고객과 그룹사 사이 또는 고객과 고객 사이 이해상충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그룹사 임직원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고객과 그룹사 사이 또는 고객과 고객 사이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 ③ 그룹사 임직원은 제2항에 평가 결과에 따라 이해상충 유무를 고지하거나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해당 업무를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그룹사 임직원은 제3항에 따른 조치나 통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회사의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처리절차상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조치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9조(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에 대한 평가·관리) ①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 관련부서(지주회사 및 관련 자회사등의 소관부서를 말한다)는 그룹사 사이의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②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그룹사는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운용기준 등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③ 자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운영현황을 지주회사의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소관부서는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 운영 및 관리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회사등 또는 소관부서에 대하여 미비점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영업점 등 시설의 공동사용 시 준수사항) ① 그룹사가 사무공간, 영업점, 전산시스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객을 보호하고 그룹사 상호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장치나 대책의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점검결과 고객 보호 및 그룹사간 이해상충 방지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회사등에 대하여 장치나 대책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고객정보의 공유) ① 그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따른 고객정보의 제공 등 법규에 따라 허용된 경우 외에는 그룹사 사이에 고객정보를 제공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 ② 그룹사는 고객정보 공유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고, 공유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거나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③ 자회사등은 정기적으로 고객정보의 공유현황을 지주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의 고객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정보제공 목적 외의 사용 여부, 보안대책 또는 보안시스템의 적정성 및 정보공유 관련 민원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윤리경영) 그룹사는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선관주의의무) 그룹사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 주주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4조(법규위반사실 은폐금지 및 내부고발제도 운영) ① 그룹사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그룹사는 내부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를 총괄하는 자를 지정하고 내부고발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와 그룹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그룹사에 제보하지 않은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금융거래 비밀보장 등) ① 그룹사 임직원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그룹사 임직원은 고객의 신용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상태가 유지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비밀유지 등 의무) ① 그룹사는 각 회사의 고유 정보 및 고객과 관련하여 비밀을 요하는 정보(이하"비밀정보"라 한다)를 관련 법규와 그룹사의 내규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비밀정보는 그 기록 형태(메모, 서류, 전자화일 등) 및 기록 유무 등을 불문하며, 임직원은 자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비밀정보를 관리, 사용하는 임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 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비밀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반정보와 구별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광고) ① 그룹사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룹사의 명칭,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거래조건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이용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그룹사는 상품 또는 서비스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명령휴가) 그룹사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29조(고위험사무 직무분리기준) 그룹사는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서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직무분리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부족이나 사안의 시급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무분리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별도의 보완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신상품 개발등의 업무절차) ① 그룹사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품 기획·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2. 상품 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3. 상품 판매 이후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제31조(영업점 자체점검 등) ① 그룹사는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 확인사항, 실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점장(영업부문의 장을 포함한다)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① 그룹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그룹사는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그룹사는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 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신원사항 등 확인
2.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2018. 4. 1. 본 조 신설>

제4장 지주회사 준법감시인

제33조(임면) ① 준법감시인은 금융관련법률 및 금융회사의 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관련 법규상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대표이사의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내규상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타 준법감시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준법감시인은 재임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③ 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내부통제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이사회까지 준법감시인을 선임한다.

④ 준법감시인 임면시 관련 사실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지위 및 임기) 준법감시인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제35조(의무와 권한) ①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경영협의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보고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 또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6조(독립성 보장) 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5장 보칙

제37조(위임사항)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회사 내규 및 업무절차 등으로 정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의 직무와 지원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제정은 대표이사 회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규정은 201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사회규정

2001.	9.	1	제정
2002.	3.	20	개정(1)
2004.	5.	10	개정(2)
2005.	6.	29	개정(3)
2008.	3.	19	개정(4)
2009.	12.	17	개정(5)
2010.	2.	4	개정(6)
2011.	2.	21	개정(7)
2011.	8.	25	개정(8)
2012.	2.	23	개정(9)
2015.	2.	26	개정(10)
2016.	8.	1	개정(11)
2017.	3.	23	개정(12)
2018.	5.	17	개정(13)
2018.	8.	28	개정(14)
2021.	3.	25	개정(15)
2022.	2.	9	개정(16)
2022.	3.	2	개정(17)
2023.	3.	23	개정(18)
2023.	8.	10	개정(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2.26 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4.5.10 개정) (2021.3.25 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회사등”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등을 말한다. (2009.12.17 개정)
2. “손자회사등”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회사로서 자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한다. (2009.12.17 호 신설)
3. “경영진”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2005.6.29 개정) (2022.3.2 개정)
 - 가. “이사인 경영진” : 이사인 자 중 이사회에서 경영진운영규정 제3조의 경영진의 직위를 받은 자를 말한다.
 - 나. “이사아닌 경영진” : 이사아닌 자 중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역할) ①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전략과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 (2004.5.10 개정) (2010.2.4 개정)

② 이사회는 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환경 및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구성) 이사회는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2015.2.26 조 신설)

제6조(대표이사 회장)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1인을 선임한다. (2015.2.26신설)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5.2.26 신설) (2021.3.25 개정)

제7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2010.2.4 개정) (2015.2.26 개정)
② 이사회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인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2010.2.4 신설)
④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2010.2.4 신설) (2015.2.26 개정)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회사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제8조(이사의 권한 및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023.8.10 개정)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10.2.4 개정) (2023.8.10 개정)
③ 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법률·회계·경영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다. (2010.2.4 신설) (2023.8.10 개정)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10.2.4 개정)

제9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2015.2.26 개정)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며,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15.2.26 개정)

제10조(결의사항 등)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그러나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이사회규정, 이사회내위원회규정, 경영진운영규정, 내부통제규정, 그룹자체정상화계획운영규정 (2009.12.17 개정) (2015.2.26 개정) (2018.8.28 개정) (2022.2.9 개정) (2022.3.2 개정)
나. 기타 이사회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규정
4.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가. 자회사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회사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나. 이사, 경영진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다. 주식 및 자본금의 변경
5. 자회사등의 편입 및 제외에 관한 사항. 다만 손자회사등의 편입 및 제외의 경우, 금융감독기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자회사등이 손자회사등에 출자한 금액(다른 자회사등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각 자회사등별 출자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이

- 손자회사등 편입 및 제외 당시 지주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1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2009.12.17 개정)
6. 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2004.5.10 신설) (2021.3.25 개정)
 - 가. 기업지배구조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사항
 - 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 다. 이사회 의 규모, 운영 등에 사항
 - 라. 독립적인 이사의 독립성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대표이사 회장, 전략기획·재무관리 담당 경영진,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의 선임 및 해임 (2009.12.17 개정) (2011.2.21 개정)(2016.8.1 개정) (2017.3.23 개정) (2021. 3.25 개정) (2022.3.2 개정)
 - 나. 회사의 사외이사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설정 및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단, 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제외) (2021.3.25 신설)
 - 다. 위원회의 설치, 개폐 및 그 위원 선임 및 해임(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제외) (2004.5.10 개정)
 - 라.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범위내 이사보수의 결정
 - 마.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승인
 - 바.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사외이사 평가에 관한 사항 (2010.2.4 신설) (2016.8.1 개정) (2021.3.25 개정)
 - 사.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위의 결정 (2015.2.26 신설)
 - 아. 대표이사 회장 직무대행의 결정 (2015.2.26 신설)
 8. 중요한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가. 1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본의 출자
 - 나.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로서 1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 다. 외국금융기관 등과의 포괄적 업무제휴, 자본의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제휴 또는 협약에 관한 사항
 -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승인 (2015.2.26 신설)
 9. 고문, 명예이사 및 자문위원 등의 위촉에 관한 사항
 10.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15.2.26 신설)
 11. 회사의 리스크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15.2.26 신설)
 12.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계획의 수립·평가 및 상시적인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2015.2.26 신설)
 13. 이사회내위원회 또는 회장이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 (2015.2.26 개정)
 1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15.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내위원회가 결의한 사항 중 재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015.2.26 신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및 그 실적
 2. 이사회내위원회의 심의 및 결의사항
 3. 다른 규정에서 정한 이사회 보고사항
 4. 기타 회장이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1.2.24 개정)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각 이사회내위원회 규정의 「결의사항 등」의 제·개정을 통해 권한위임을 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내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2015.2.26 신설)

제11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2016.8.1 개정) (2017.3.23 개정)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2.2.23 개정)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계인 출석)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011.2.21 개정) (2015.2.26 개정)

제13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은 이사회 종료일로부터 14일 내에 초안을 작성하여 모든 이사에게 발송하고 신속히 확정하여야 한다. (2023.8.10 신설)
- ④ 의사록 확정 전에 감독기관의 요청, 등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의사록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안임을 명시하고 이사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 조치할 수 있다. (2023.8.10 신설)

제14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회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2010.2.4 신설) (2015.2.26 개정)

제15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① 회의자료를 회일 1주일 전까지 발송하여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2015.2.26 조 신설) (2018.5.17 개정)

1. 경영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소집권자의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인사 기타 비밀의 유지가 중요한 사항의 경우
- ②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 회계, 경영 관련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보수 등) 이사회의 이사 중 경영진이 아닌 이사에 대하여 이사회내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 실적에 상응한 보수(수당 포함)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비, 자료수집비 등 별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02.3.20 신설) (2010.2.4 개정) (2015.2.26 개정)

제17조(이사회내위원회)

- ① 이사회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규정에 의한다. (2004.5.10 개정) (2015.2.26 개정) (2021.3.25 개정)
 1. 회장후보추천위원회 (2011.8.25 신설) (2021.3.25 개정)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2021.3.25 개정)
 4. 위험관리위원회(2017.3.23 개정)
 5. 보수위원회(2017.3.23 개정)
 6. ESG전략위원회 (2021.3.25 개정)
 7.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2021.3.25 신설, 2023.3.23 개정)
- ② 이사회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 후보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심의·의결하여 이사 선임 안건을 주주총회에 부의한다. (2011.8.25 신설) (2021.3.25 개정)
- ③ 위원회에 관하여 제13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5.2.26 개정) (2023.8.10 개정)

④ 제13조 제4항을 준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승인한다. (2023.8.10 신설)

제18조(이사회 지원조직 운영) ① 회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지원을 활성화하고,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이사회 지원조직으로서 이사회사무국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015.2.26 개정)

② 이사회사무국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 회장이「이사회사무국운영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2015.2.26 개정)

③ 이사회는 이사회사무국의 업무목표를 설정하고, 연간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한다. (2021.3.25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01.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 3.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 5.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 6.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3.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12.17부터 시행한다.

부 칙(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2.4부터 시행한다.

부 칙(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2.21부터 시행한다.

부 칙(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도 결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4.15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6부터 시행한다.
2. 제13조제1항제8호의 시행일은 2015.3.25 로 한다.

부 칙(1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8.1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3.23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5.17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8.28부터 시행한다.

부 칙(1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3.25부터 시행한다.

부 칙(16)

-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2.9부터 시행한다.

부 칙(17)

-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3.2부터 시행한다.

부 칙(18)

-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3.23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8.10부터 시행한다.

5.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04.	5.	10	제정
2009.	5.	28	개정(1)
2009.	11.	12	개정(2)
2010.	2.	4	개정(3)
2011.	8.	25	개정(4)
2015.	2.	26	개정(5)
2018.	5.	17	개정(6)
2021.	3.	25	개정(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2.26 개정) (2021.3.25 개정)

제2조(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2015.2.26 신설) (2021.3.25 개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2010.2.4 개정) (2015.2.26 개정) (2018.5.17 개정)

② ①항에 불구하고 사외이사 후보 최종 추천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 절차가 개시되면 사외이사 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며, 이 경우 사외이사 전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2021.3.25 개정)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2015.2.26 개정)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5.2.26 개정)

제5조(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2015.2.26 개정)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10.2.4 개정)

제6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2015.2.26 개정)

1.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015.2.26 개정)(2021.3.25 개정)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의 추천 (2015.2.26 개정)(2021.3.25 개정)
3.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2015.2.26 개정)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015.2.26 개정)

③ 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2015.2.26 신설)

제7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015.2.26 개정)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 후보가 되는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2.4 개정) (2015.2.26 개정) (2021.3.25 개정)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5.2.26 신설)

제8조(관계인의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015.2.26 개정)

제9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등) ①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2010.2.4 개정) (2015.2.26 개정)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2010.2.4 개정) (2015.2.26 개정)

③ 사외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2010.2.4 개정) (2015.2.26 개정)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검증된 자중에서 인선한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확정하여 추천한다. (2010.2.4 개정) (2015.2.26 개정)

⑤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위원회 활동과 사외이사 후보의 검증결과 및 추천내용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부의하여 심의·결의를 받아야 한다. (2010.2.4 개정) (2015.2.26 개정)

⑥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2015.2.26 신설)

⑦ 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한다. (2015.2.26 신설) (2021.3.25 개정)

⑧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2015.2.26 항 신설) (2021.3.25 개정)

1. 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4. 사외이사 후보자와 회사 및 자회사등,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5. 관련법령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7.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8. 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1조(감사위원 후보 추천절차 등) ① 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한다. (2021.3.25 신설)

② 회계와 컴플라이언스 업무 감사의 전문성을 위해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분야와 법률 분야 전문가로 추천한다. (2021.3.25 신설)

제12조(사외이사 후보인선자문단 운영)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후보 인선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 5.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규정은 2009. 5.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이 규정은 2009. 11.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이 규정은 2010. 2. 4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이 규정은 2011년도 결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일(2012. 3.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이 규정은 2015. 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이 규정은 2018. 5.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7)

이 규정은 2021. 3. 25부터 시행한다.

6.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11.	8.	25	제정
2015.	2.	26	개정
2016.	3.	24	개정
2016.	8.	1	개정
2019.	3.	27	개정
2021.	3.	25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3.25 개정)

제2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회사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2019.3.27 개정)

② ①항에 불구하고 대표이사 회장 후보 선정을 위한 최종 회의시에는 사외이사 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며, 이 경우 사외이사 전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2021.3.25 신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2021.3.25 개정)

1. 대표이사 회장 후보인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 가.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검토에 관한 사항
 - 나.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평가 등 경영승계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대표이사 회장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 라. 대표이사 회장 후보인 이사의 추천
2.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대표이사 회장의 연령 제한) ① 대표이사 회장으로 신규 선임되는 자의 연령은 만 67세 미만이어야 한다.

② 만 67세 이상인 대표이사 회장이 연임하여 대표이사 회장이 되는 경우에는 재임기한이 만 70세를 넘지 못한다.

제8조(경영승계 계획) ① 대표이사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승계 계획을 위원회에 제안하고 그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사 경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대표이사 회장이 제안한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회사의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자격요건, 법률요건 및 승계시점의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서의 연령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을 선정하고, 후보자 선발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회에서 수립된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육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경영승계 계획의 운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⑤ 경영승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선정 기준
 2.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3.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4. 대표이사 회장 승계 프로세스

제9조(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및 검증 등)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할 자를 선정한다.

- ② 위원회는 도덕성, 신안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탐색 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추천함에 있어 경영승계 계획에 따른 후보군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회사로부터 대표이사 회장 후보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규 및 규준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확인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대표이사 회장의 임기가 도래하기 최소 2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 추천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 회장 유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경영승계 계획상의 가속승계 절차를 따른다.
- ⑦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대표이사 회장 대행자 및 회사 운영계획, 대표이사 회장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⑧ 위원회가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대표이사 회장 후보추천절차 개요
 2.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2021.3.25 개정)
 3. 대표이사 회장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 추천 이유
 6.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0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본인이 후보군에 포함되는 등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후보 추천 절차에 참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9.3.27 개정)

제11조(관계인 출석)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첨부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도 결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일(2012. 3.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3.24부터 시행한다.

부 칙(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8.1부터 시행한다.

부 칙(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3.27부터 시행한다.

부 칙(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3.25부터 시행한다.

7. 감사위원회규정

2001.	9.	1	제정
2002.	9.	10	개정(1)
2003.	12.	12	개정(2)
2010.	2.	4.	개정(3)
2011.	6.	23	개정(4)
2012.	2.	23	개정(5)
2014.	8.	21	개정(6)
2015.	2.	26	개정(7)
2015.	8.	24	개정(8)
2016.	8.	1	개정(9)
2018.	8.	16	개정(10)
2018.	12.	12	개정(11)
2019.	5.	9	개정(12)
2022.	2.	10	개정(13)
2023.	3.	23	개정(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뉴욕증권거래소 상장에 따라 적용되는 미국의 관계법령 포함),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12.12 본조 신설)

제3조(역할) 위원회는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2015.2.26 개정)

제4조(권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회사 및 자회사등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참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경영진은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2015. 2. 26 본조 신설)

제5조(의무)

- ① 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2015.2.26 본조 신설)

제6조(독립성)

- ①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또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함)로부터 자문, 기타 보수적 수수료를 수령 하거나,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2003.12.12 본조 신설, 2010.2.4 개정)

제2장 구성

제7조(구성)

- ①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 ②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2003.12.12 본조 신설, 2010.2.4, 2015.2.26 개정)

제8조(위원장)

-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2003.12.12, 2015.2.26 개정)
-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5.2.26 개정)

제3장 운영

제9조(소집)

-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2002.9.10, 2015.2.26 개정)
-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10.2.4 개정)

제10조(결의사항 등)

-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2011.6.23, 2012.2.23, 2023.3.23 개정)
 - 1. 임시주주총회 및 임시이사회 소집 청구 (2012.2.23 신설)
 - 2.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2015.2.26 신설)
 - 4. 외부감사인 선정 및 외부감사인 해임요청 (2018.8.16 개정)
 - 5. 외부감사인과 회사간에 체결하는 감사 및 비감사 계약에 대한 사전승인
 - 6. 회사의 외부감사인과 자회사등간에 체결하는 감사 및 비감사 계약에 대한 사전승인
 - 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평가
 - 8.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 9.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진술의견
 - 10. 감사위원회 업무 보조조직의 장(이하 "내부감사책임자"라 한다)의 임면 동의 및 업무성과평가(2015.2.26, 2022.2.10 개정)

11. 감사업무규정의 제정 및 폐기
 12. 자회사에 대한 특명감사 승인
 13. 재무보고내부통제규정 제정 및 폐기 승인(2018.12.12 신설)
 14. 감사결과에 따른 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경영진 제재 조치요구(2023.3.23 신설)
 15. 법령과 정관에서 위원회의 직무로 정하는 사항
 16.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5.2.26 개정)
1.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2. 대내외 감사에 대한 결과 및 조치내용
 3.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회계추정 및 회계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4.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매분(반기) 감사 및 검토 결과 검토
 5. 회사가 대외에 공표하는 중요한 회계 및 재무자료에 대한 적정성 검토
 6.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7.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8.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9.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검토
 10. 그룹내부통제규정의 개정 및 폐지사항 (2015.2.26 개정)
 11. 준법감시인으로부터의 보고사항
 12. 준법감시인 해임 건의사항
 13. 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수행의 적절성과 효과성 검토·평가(2018.8.16 신설)
 14. 관련법령, 정관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1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5.2.26 신설)

제12조(외부감사인의 보고) 외부감사인은 다음의 사항을 위원회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검토)에 사용된 중요한 회계정책 및 방침
2. 회계기준에서 허용하는 회계처리방법이 2이상인 경우 재무보고에 실제 적용된 회계처리방법의 선택 근거
3. 기타 외부감사인과 회사간의 중요한 서면 정보 또는 의사교환 내용 (2003.12.12 본조 신설)

제13조(권한위임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가 정하는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19.5.9 개정)
1. 제10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사항 중 계약금액 1억원 이하의 비감사 계약 (2014.8.21 개정)
2. 제10조 제1항 제6호
3. 제10조 제2항 제5호
4. 사안이 긴급하고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의하여 대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2003.12.12 본조 신설)
- ③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부감사책임자에게 위임하며, 내부감사책임자는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5.8.24 신설, 2022.2.10 개정, 2023.3.23 개정)
 - 1. 경영진의 일상업무 집행에 대한 일상감사
 - 2.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사후관리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3.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단, 제10조 제1항 제14호는 제외한다.)
 - 4. 감사팀원의 업무성과평가
 - 5.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 6.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제14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5조(이사회에 대한 보고)

-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감사실시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③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매 사업연도마다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이사회에 대면보고 한다. (2018.12.12 개정)
- ④ 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수행의 적절성과 효과성 검토·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한다.(2018.8.16 신설)
- ⑤ 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이를 즉시 보고한다. (2015.2.26 본조 신설)

제16조(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2015.2.26 신설)

- ① 내부감사책임자는 주요 업무수행과정 중 중요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2015.8.24, 2022.2.10 개정)
-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2016.8.1 개정)

제4장 보칙

제17조(외부감사인등과의 관계)

-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정, 보수, 유지 및 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책임을 진다.
-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하고 효과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또는 내부감사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003.12.12 본조 신설)
-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회사에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2018.8.16 신설)
-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8.16 신설)

⑥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8.8.16 신설)

⑦위원회는 경영진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공개 또는 비공개로 회의를 연 2회 이상 진행하여야 한다. (2022.2.10 신설)

제18조(내부감사업무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감사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감사팀을 둔다.

② 감사팀은 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2015.2.26 신설)

③ 회사는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으로 감사팀을 운영한다. (2015.2.26 신설)

④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8.1 신설)

⑤ 회사의 내부감사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감사업무규정에 의한다.(2003.12.12 본조 신설)

제19조(관계인 출석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015.2.26 개정)

②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20조(감사록)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회의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감사록을 작성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규정은 2002. 9.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 12. 12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자는 위원회의 별도 결의가 없는 한 개정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위원회가 정하는 위원으로 본다.

부 칙(3)

이 규정은 2010. 2. 4부터 시행한다.

첨부

부 칙(4)

이 규정은 2011. 6.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이 규정은 2012. 4.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이 규정은 2014. 8.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7)

이 규정은 2015. 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8)

이 규정은 2015. 8.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9)

이 규정은 2016.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이 규정은 2018. 8. 28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4호, 제17조 제1항, 제4항 내지 제6항은 2018.11.1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이 규정은 2018. 12.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이 규정은 2019. 5. 9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이 규정은 2022. 2.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이 규정은 2022. 3. 23부터 시행한다.

8. 보수위원회규정

2004.	5.	10	제정
2010.	2.	4	개정(1)
2010.	2.	26	개정(2)
2011.	2.	8	개정(3)
2015.	2.	26	개정(4)
2016.	8.	1	개정(5)
2017.	3.	23	개정(6)
2018.	2.	20	개정(7)
2018.	12.	12	개정(8)
2020.	5.	21	개정(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지주회사 및 자회사 경영진 등의 평가보수체계가 건전하게 수립, 운용되도록 관리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② 위원 중 1인 이상은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이사로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또는 상법상의 회사(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상법상의 회사를 말한다.)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사외이사인 위원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 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결의사항 등)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동일)에 대한 평가 및 보수체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평가 및 보수안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자회사의 연간 성과평가 결정에 관한 사항

4.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말한다)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5.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회사의 보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7. 회사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대상자의 결정
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관계인의 출석, 관계자료 제출 및 외부자문)

-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해지는 전적으로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 ③ 위원회는 자회사가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위원회 관련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자회사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 5.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규정은 2010. 2. 4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이 규정은 2010. 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이 규정은 2011. 2. 8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이 규정은 2015. 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이 규정은 2016.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이 규정은 2017. 3.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7)

이 규정은 2018. 2.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8)

이 규정은 2018. 12.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9)

이 규정은 2020. 5. 21부터 시행한다.

9. 위험관리위원회규정

2001.	9.	1	제정
2003.	5.	15	개정(1)
2006.	9.	12	개정(2)
2009.	11.	12	개정(3)
2010.	2.	4	개정(4)
2012.	5.	24	개정(5)
2015.	2.	26	개정(6)
2015.	10.	1	개정(7)
2016.	8.	1	개정(8)
2017.	3.	23	개정(9)
2018.	12.	12	개정(10)
2021.	10.	18	개정(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위험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3.23 개정)

제2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2015.2.26 개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2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2012.5.24 개정) (2015.2.26 개정)

②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또는 상법상 회사(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상법상 회사를 말한다.)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2015.2.26 신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2012.5.24 개정) (2015.2.26 개정)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5.2.26 개정)

제5조(소집) ① 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2003.5.15 개정) (2015.2.26 개정)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10.2.4 개정) (2015.2.26 개정)

제6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2. 회사 및 자회사별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2006.9.12 개정)
4. 그룹리스크관리규정과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2009.11.12 개정)
5.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2016.8.1 신설)
6.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16.8.1 신설)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6.8.1 신설)
8. 금융감독원의 비소매 및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그룹 내부등급법 승인 관련 의사결정 사항 (2015.10.1 신설)
9. 리스크 공시정책에 관한 사항

10. 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이와 관련된 자본관리 계획, 자금조달 계획
 11.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금융위원회 등 외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타 규정,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
 1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리스크 검토결과를 심의한다. (2012.5.24 신설)
1. 이사회 결의사항인 자회사등의 편입 및 제외에 관한 사항
 2. 제1호 자회사등의 편입 및 제외와 관련하여 자회사등이 해당자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신용공여
 3. 이사회 결의사항인 중요한 계약 등
 - 가. 1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본의 출자
 - 나.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로서 1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 다. 외국금융기관 등과의 포괄적 업무제휴, 자본의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제휴 또는 협약에 관한 사항
 -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승인 (2015.2.26 신설)
 4.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
 5. 회사의 리스크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금융위원회 등 외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타 규정,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
 7.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2006.9.12 신설) (2015.2.26 개정)
1. 위원회가 결정한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 대비 운용현황
 2. 자회사 위험관리위원회의 결의사항 (2017.3.23 개정)
 3. 리스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
 4. 내부등급법 승인 대상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검증 결과 (2015.10.1 신설)
 5.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3조제4항에 의거하여 제43조제3항에 대해 그룹리스크협의회가 그룹경영회의에 제출한 리스크 검토 의견 (2015.2.26 신설)(2018.10.18 개정)
 6.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보고서
 7. 금융위원회 등 외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타 규정,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
 8.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015.2.26 개정)
-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의한 사항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그룹리스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협의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 다시 결의할 수 있다. (2009.11.12 신설)

제7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5.2.26 개정)

제8조(관계인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015.2.26 개정)

제9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그룹리스크협의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리스크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룹리스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09.11.12 신설)

부 칙

1. 이 규정은 2001.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 5.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 9.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1.12부터 시행한다.

부 칙(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2. 4부터 시행한다.

부 칙(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5.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8.1부터 시행한다.

부 칙(9)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3.23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12.12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10.18부터 시행한다.

10. ESG전략위원회규정

2015. 3. 25 (제정)
2021. 3. 25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ESG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3.25 개정)

제2조(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함으로써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방향을 수립하고,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2021.3.25 개정)

제3조(구성)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2021.3.25 개정)

1.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2. 기후변화대응을 포함한 친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규범/정책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속가능경영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보고한다. (2021.3.25 개정)

1. 지속가능경영 관련 공시 보고서 발간 보고
2. 지속가능경영 관련 대외평가 대응 결과 보고
3. 지속가능경영 관련 업무 이행 현황 보고

③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첨부

제8조(관계인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 3.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규정은 2021. 3. 25부터 시행한다.

11.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04.	5.	10	제정
2005.	6.	29	개정(1)
2009.	11.	12	개정(2)
2010.	2.	26	개정(3)
2011.	2.	8	개정(4)
2011.	2.	21	개정(5)
2015.	2.	26	개정(6)
2015.	8.	24	개정(7)
2016.	8.	1	개정(8)
2018.	2.	20	개정(9)
2018.	12.	12	개정(10)
2019.	12.	13	개정(11)
2020.	5.	21	개정(12)
2021.	3.	25	개정(13)
2023.	3.	23	개정(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회사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2021.3.25 신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2010.2.26 시행) (2021.3.25 개정)

② (2021.3.25 개정, 2023.3.23 삭제)

③ 당해 자회사 경영지원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이사 아닌 경영진 및 제6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의 감사팀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결의 및 심의사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자회사의 대표이사 후보군 탐색 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대표이사 회장으로 한다. (2021.3.25 개정)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21.3.25 개정)

제6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2023.3.23 개정)

1.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4. 자회사 대표이사 리더십 평가에 관한 사항
 5. (2023.3.23 삭제)
 6.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 제1호의 사항에 대해 달리 결의할 수 있다. (2021.3.25 개정)

제7조(자회사 경영승계계획)

-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이 제안한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자회사의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회에서 수립된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23.3.23 개정)
- ④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 프로세스

제8조(후보추천 및 검증)

- ① 위원회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대표이사 유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경영승계 계획 상의 가속승계 절차를 따른다.
- ④ 회사는 해당 자회사로 하여금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자회사 대표이사 대행자 및 운영계획,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자회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로 하여금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2023.3.23 개정)
 1.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6.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021.3.25 개정)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관계인 출석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 및 자회사의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적용범위) 제7조 및 제8조는 자회사 중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 5.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 6.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회계연도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회계연도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2. 8부터 시행한다.

부 칙(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2.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2.26부터 시행한다.

첨부

부 칙(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8.24부터 시행한다.

부 칙(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8.1부터 시행한다.

부 칙(9)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2.20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제5조 제5항은 제주은행의 경우 2018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관련 규정을 변경한 때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1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12.12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12.13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5.21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3.25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3.23부터 시행한다.

12. 그룹경영회의 운영규정

2011.	9.	1	제정
2015.	2.	26	개정(1)
2016.	4.	1	개정(2)
2017.	3.	23	개정(3)
2017.	5.	17	개정(4)
2020.	3.	20	개정(5)
2021.	2.	3	개정(6)
2023.	2.	9	개정(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그룹경영회의(이하“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의 역할)

회의는 그룹 주요현안을 협의하여 그룹(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그룹”을 말한다) 을 대표하는 대표이사 회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제3조(구성)

- ① 회의의 위원은 대표이사 회장 및 전 그룹사 CEO로 구성한다.
- ② 그룹 주요 사업부문 담당 경영진, 지주회사 경영진(CFO, CSSO 등) 및 그룹위험관리책임자(CRO)는 열석하며, 대표이사 회장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열석하게 할 수 있다.
- ③ 대표이사 회장이 회의의 위원장이 되며 대표이사 회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 회장이 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④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략기획팀 또는 대표이사 회장이 정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회의소집)

-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③ 회의의 일시와 장소는 위원장이 지정하며,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사전에 각 위원 및 열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원칙) 회의의 모든 위원 및 열석자는 그룹의 관점에서 사안을 논의한다.

제6조(협의사항) 회의는 그룹 주요 현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본 조의 협의는 회의 참석자의 논의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1. 그룹의 비전/전략방향 및 경영계획/예산 수립과 관련된 사항
2. 그룹 전략 실행을 위해 자회사등 및 사업부문 간 협조 또는 이해 조정 필요 사안
3. 자회사등 및 사업부문별 각종 경영현안 중 자회사등 간 공유 및 협의가 필요한 사안
4. 자회사등 및 사업부문 간 공동으로 적용되는 제도 관련 사안
5. 그룹 차원의 브랜드 전략 관련 사안
6. 기타 대표이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7조(보고사항) 회의에 보고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회사등 및 사업부문의 각종 사업 중 주요 사항의 추진 및 실행 결과

- 2. 금융시장 동향
- 3. 기타 대표이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8조(회의진행)

- ① 회의의 위원을 포함한 그룹 내 모든 자회사의 대표이사는 간사를 통해 회의의 협의/보고사항을 부의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 회장은 제6조의 협의사항 중 위험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룹리스크협의회가 회의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제6조의 협의사항 등 논의 안건명과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 기록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규정은 2015. 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이 규정은 2016.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이 규정은 2017. 3.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이 규정은 2017. 5.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이 규정은 2020. 3.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이 규정은 2021. 2. 3부터 시행한다.

부 칙(7)

이 규정은 2023. 2. 9부터 시행한다.

13.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

2001.	12.	7	제정
2003.	5.	2	개정(1)
2009.	11.	12	개정(2)
2011.	3.	23	개정(3)
2015.	2.	26	개정(4)
2015.	10.	1	개정(5)
2016.	12.	1	개정(6)
2017.	3.	23	개정(7)
2018.	12.	12	개정(8)
2020.	3.	4	개정(9)
2023.	4.	27	개정(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험관리위원회규정에서 정한 그룹리스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11.12 개정) (2017.3.23 개정)

제2조(협의회의 역할) 협의회는 그룹과 자회사 리스크 정책 및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하여 그룹의 제반 리스크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2009.11.12 개정) (2017.3.23 개정)

제3조(구성)

- ① 협의회의 위원은 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신한은행 기업여신심사 담당 본부장으로 구성한다. (2003.5.2 개정)(2009.11.12 개정) (2017.3.23 개정) (2020.3.4 개정)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되며,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09.11.12 개정)
- ③ 협의회의 간사는 회사의 리스크관리팀장이 된다. (2017.3.23 개정)
- ④ 위원장은 협의안건에 따라 위험관리책임자가 아닌 자회사의 소관 업무담당 최고책임자를 위원으로 지정하여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2009.11.12 개정) (2017.3.23 개정)
- ⑤ 필요할 경우 자회사의 소관부서장이 배석하여 의사진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자회사의 위원이 그 권한을 소관부서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이 대행할 수 있다. (2009.11.12 개정)

제4조(소집)

- ① 협의회는 매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요청에 의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2003.5.2 개정)
- ②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전체 위원 중 관련 자회사의 위원을 지정하여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09.11.12 신설)

제5조(결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를 결의한다. 협의회는 결의된 사항을 회사의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7.3.23 개정) (2020.3.4 개정)

- 1. 국가, 중점관리영역, 개별 기업 및 계열 등 익스포저 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 2. 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
- 3. 금융감독원 내부등급법 승인 대상을 제외한 그룹 비소매 신용평가시스템 관련 의사결정 사항
-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 및 협의사항)

-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대해 심의한다. (2020.3.4 개정)
 - 1. 회사 및 자회사별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 2. 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결과 및 이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 자금조달계획
 - 3. 리스크공시정책에 관한 사항
 -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를 협의한다. (2003.5.2 개정) (2003.11.12 개정)
 - 1. 그룹 및 자회사의 리스크측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리스크측정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나. 리스크 평가방법론 및 관리 기준의 중요한 변경사항
 - 2. 그룹차원의 리스크 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
 - 가. 그룹차원의 신상품 도입에 따른 리스크관리 사항
 - 나. 그룹 및 자회사의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 3. 자회사 자금지원관련 리스크관리 사항
 - 4.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3조제4항에 의거하여 제43조제3항에 대해 위험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으로 그룹경영회의가 요청한 사항 (2015.2.26 신설)
 - 5.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 ③ 제6조제2항제4호에 대하여 그룹경영회의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2015.2.26 신설) (2017.3.23 개정) (2020.3.4 개정)

제7조(보고사항) 협의회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그룹 및 자회사의 리스크한도 및 관리 현황
- 2. 그룹 및 자회사의 자산건전성 및 연체 현황
- 3. 그룹 및 자회사의 자본적정성 관리 현황
- 4. 위험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결의방법)

- ① 협의회 결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 ② 협의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5.2.26 개정)
- ③ 신한은행 기업여신심사 담당 본부장은 의결권을 제한하고 출석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외 협의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출석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11.12 조 신설) (2023.4.27 개정)

제9조(회의결과 시행 등 보고)

- ① 각 자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는 협의회에서 실행하기로 한 결의사항 및 협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009.11.12 개정) (2017.3.23 개정)
- ② 각 자회사의 리스크관리부서는 결의 및 협의사항에 대한 실행 결과를 회사 리스크관리팀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회 간사는 실행 결과를 위원장과 협의회 의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9.11.12 개정)

제10조(회의록)

- ① 협의회 결의안건에 관하여는 위원별로 가부 내용을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사의 회장에게 보고한다. (2009.11.12 조 신설) (2011.3.23 개정)

제11조(실무협의회)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협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및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2009.11.12 개정)

제12조(규정의 개폐)

① 이 규정의 개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2017.3.23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률 및 감독 규정의 변경 또는 다른 규정의 변경에 따른 변경, 단순한 용어 변경 등은 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전결로 할 수 있다. (2009.11.12 조 신설) (2017.3.23 개정)

부 칙

이 규정은 2001. 12. 7부터 시행한다.

부 칙(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 5. 2부터 시행한다.

부 칙(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1.12부터 시행한다.

부 칙(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3.23부터 시행한다.

부 칙(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26부터 시행한다.

부 칙(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10.1부터 시행한다.

부 칙(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12.1부터 시행한다.

부 칙(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3.23부터 시행한다.

부 칙(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12.12부터 시행한다.

부 칙(9)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3.4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4.27부터 시행한다.

14. 신한금융그룹 윤리강령

2011. 06. 01 제정
2022. 08. 11 전면 개정

前文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은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입니다.

우리는 그룹의 미션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윤리적 원칙, 신한이 핵심가치, 그리고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고객과 주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본 윤리강령은 신한금융그룹의 임직원에게 윤리적 판단 기준과 행동 지침으로 작용하며 내규나 매뉴얼 등에 의해 구체화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 준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을 조장·묵인하는 행위는 그룹의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에 따른 조치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제1장 고객에 대한 기준

1. 우리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1.1 우리는 항상 고객에게 적합하고 적절한 상품과 서비스를 권유하고, 고객의 눈높이에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 1.2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의 관점에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허위·과장 광고는 금지됩니다.
- 1.3 업무 수행 중 고객의 이익과 이해상충이 발생하면, 고객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2. 업무 전문성과 정직함으로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최선을 다해 고객의 자산을 관리합니다.

- 2.1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학습하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합니다.
- 2.2 전문성과 정직함, 그리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기본으로, 최선을 다해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충실하게 자본시장 업무를 수행합니다.
- 2.3 금융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고객의 자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객 관점에서 업무를 개선합니다.

- 3.1 고객 의견을 경청하고, 고객 불만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3.2 고객의 관점에서 업무를 개선하여, 고객이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제2장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기준

1. 우리는 주주와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행동합니다.

- 1.1 주주와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 결정합니다.
- 1.2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룹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경영합니다.

2. 주주와 투자자를 위해 경영성과와 정보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공시합니다.

- 2.1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정보와 문서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충실하게 운영합니다.
- 2.2 주주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규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게 공시합니다.
- 2.3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회사는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제3장 사회에 대한 기준

1. 함께 나누며 모두가 잘 사는 따뜻한 희망사회를 구현합니다.

- 1.1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육성합니다.
- 1.2 건강한 금융소비자 양성을 지원하고, 금융취약계층의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합니다.
- 1.3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2. 고객, 임직원, 주주와 투자자, 협력회사 등 그룹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본적 권리와 인권을 존중합니다.

- 2.1 우리는 UN 인권위원회의 국제적 기준을 준수합니다.
- 2.2 신한금융그룹 인권선언서에 기반하여, 그룹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인권신장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실천합니다.
- 2.3 사람과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추구하며, 직원과 고객, 사회구성원 모두를 소중히 여기고 포용합니다.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금융을 통한 탄소중립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합니다.

- 3.1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중요한 경영 요소로 인식하고, 그룹 차원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 3.2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3.3 친환경 사업에 대한 기후금융 및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친환경 활동에 모든 임직원이 참여합니다.

제4장 임직원 간의 기준

1. 우리는 모두에게 공정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 1.1 학력, 지역, 나이, 성별, 인종, 종교, 혼인 여부, 장애 여부, 정치적 성향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 1.2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능력과 자질에 따라 정당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 1.3 사적인 관계로 인해 공정한 업무 수행이 방해 받지 않도록, 스스로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 1.4 그룹사 간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며, 소속과 출신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2. 임직원 간 상호 존중과 배려는 기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은 금지됩니다.

- 2.1 임직원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하며,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공격을 통해 다른 임직원에게 수치심, 모욕감, 위협감 등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2.2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 2.3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모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는 비밀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하여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3. 직장 내 성희롱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 3.1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 성적 농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은 금지됩니다.

- 3.2 부적절한 언행을 목격한 경우에는 누구라도 바로 지적하여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근거 없는 악의적 소문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3.3 언어 폭력, 성희롱 등이 리더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 3.4 회사는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합니다. 근무 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임직원도 회사가 정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합니다.

제5장 업무수행 기준

1. 그룹의 미션과 핵심가치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과 내규를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합니다.

- 1.1 그룹의 미션과 핵심가치는 모든 업무 수행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 1.2 업권에 따른 법령과 회사 내규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적법하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 1.3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자금세탁방지, 그리고 금융실명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 1.4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의 해석과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처리합니다.

2.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편익을 주고 받지 않습니다.

- 2.1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접대, 편의 제공을 받지 않습니다.
- 2.2 업무상 부정한 이익의 대가를 얻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편익을 제공하거나 제안, 약속하지 않습니다.
- 2.3 정상적 업무 과정에서 금품이나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및 재산상 이익 제공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합니다.

3.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허가 없는 영리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 3.1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회사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하면 회사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 3.2 업무 수행 중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리더, HR 부서, 준법 부서 담당자와 상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3.3 미공개 정보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유출하지 않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회사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4 회사 소속을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외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임직원과 회사의 성장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모든 자산과 비용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4.1 모든 유·무형의 회사 자산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 4.2 회사의 모든 비용 또한 업무 목적으로만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과 대상 등에 대하여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4.3 회사 자산과 비용의 사용 내역은 모니터링 되며, 공개될 수 있습니다.

5.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보유출을 철저히 방지합니다.

- 5.1 고객정보는 적절한 절차에 의해 취득하고,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합니다.
- 5.2 고객정보가 유출되거나, 업무 목적 이외로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 5.3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관련 부서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회사의 소중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6.1 정보보안 프로세스를 준수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6.2 회사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용 커뮤니케이션 도구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는 정보 유출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6.3 회사의 대외비와 기밀 정보는 가족, 친구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유출하지 않아야 하고, 이는 퇴사 이후에도 적용됩니다.

7.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7.1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쉽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2 모든 고객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거래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합니다.

7.3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을 추진합니다.

제6장 외부 커뮤니케이션 기준

1. 외부 커뮤니케이션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1 업무와 관련한 외부 커뮤니케이션은 사전에 리더 및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진행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한 개인적인 견해가 회사의 공식 의견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2 언론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은 홍보 담당 부서를 통하거나, 사전에 협의하여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1.3 신한의 상징물(CI, BI, 로고)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2. 정치·사회적 이슈, 특정 집단의 이익 등에 대해 중립적인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2.1 개인의 정치적·사회적 견해는 존중되나, 업무 수행 시에는 정치·사회적 이슈,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 등과 관련하여 중립적 관점을 유지합니다.

2.2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불법적인 기부금이나 경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 각종 단체, 특정 이해집단, 자선단체 등에 기부금을 제공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합니다.

제7장 협력회사와 경쟁사에 대한 기준

1.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생의 관계를 지향합니다.

1.1 협력회사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수의계약은 사유 및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준수합니다.

1.2 협력회사에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하지 않으며, 부당 거래 방지 관련 법령과 내규를 준수합니다.

1.3 협력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습니다.

2. 공정하게 경쟁하며,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합니다.

2.1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합니다.

2.2 자유롭고 창의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그 발전에 기여합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사외이사 후보자명	종합 의견
곽수근	적합
배 훈	적합
성재호	적합
윤재원	적합
이용국	적합
이윤재	적합
진현덕	적합
최재봉	적합

본 위원회는 상기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최재봉 (서명)	위원	곽수근 (서명)
위원	김조설 (서명)	위원	박안순 (서명)
위원	배 훈 (서명)	위원	성재호 (서명)
위원	윤재원 (서명)	위원	이용국 (서명)
위원	이윤재 (서명)	위원	진현덕 (서명)
위원	허용학 (서명)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후보 검토보고서

사외이사 후보자명	종합 의견
곽수근	적합
배 훈	적합
성재호	적합
윤재원	적합
이용국	적합
이윤재	적합
진현덕	적합
최재봉	적합

본 위원회는 상기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2023년 2월 3일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최재봉 (서명 또는 날인)



후보자별 심사결과

후보자	곽 수근	소속법인	서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모범규준 준수 여부			
상법 제382조 제3항 -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2항 -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6조 -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 제1항 -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6조 제4항 - 사외이사 임기제한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 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고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 (주요 사항)		해당여부	비고
소속 법인 자본의 10% 초과여신거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속 법인 및 본인 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다른 회사(자회사등 제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 요건	충족여부	비고	
전문성	충족	경영, 회계 전문가 (회계전공 경영학 교수)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다양성, 적합성, 실효성	적정함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사외이사 업무수행 능력 우수 (직무에 대한 기대 수준 이상)	

후보자	배 훈	소속법인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대표변호사
*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모범규준 준수 여부			
상법 제382조 제3항 -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2항 -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6조 -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 제1항 -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6조 제4항 - 사외이사 임기제한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 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 고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 (주요 사항)		해당여부	비 고
소속 법인 자본의 10% 초과여신거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속 법인 및 본인 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다른 회사(자회사등 제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 요건	충족여부	비 고	
전문성	충족	법률, 회계, 글로벌 전문가 (해외 변호사, 회계사)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다양성, 적합성, 실효성	적정함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사외이사 업무수행 능력 우수 (직무에 대한 기대 수준 이상)	

후보자	성 재 호	소속법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모범규준 준수 여부			
상법 제382조 제3항 -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2항 -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6조 -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 제1항 -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6조 제4항 - 사외이사 임기제한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 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 고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 (주요 사항)		해당여부	비 고
소속 법인 자본의 10% 초과여신거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속 법인 및 본인 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다른 회사(자회사등 제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 요건	충족여부	비 고	
전문성	충족	법률, 글로벌 전문가 (국제법 전공 법학 교수)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다양성, 적합성, 실효성	적정함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사외이사 업무수행 능력 우수 (직무에 대한 기대 수준 이상)	

후보자	윤 재원	소속법인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모범규준 준수 여부			
상법 제382조 제3항 -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2항 -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6조 -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 제1항 -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6조 제4항 - 사외이사 임기제한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 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 고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 (주요 사항)		해당여부	비 고
소속 법인 자본의 10% 초과여신거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속 법인 및 본인 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다른 회사(자회사등 제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 요건	충족여부	비 고	
전문성	충족	회계, 경영 전문가 (美 공인회계사, 회계전공 경영학 교수)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다양성, 적합성, 실효성	적정함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사외이사 업무수행 능력 우수 (직무에 대한 기대 수준 이상)	

후보자	이 용 국	소속법인	서울대 법학전문 대학원 임상교수
*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모범규준 준수 여부			
상법 제382조 제3항 -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2항 -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6조 -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 제1항 -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6조 제4항 - 사외이사 임기제한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 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 고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 (주요 사항)		해당여부	비 고
소속 법인 자본의 10% 초과여신거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속 법인 및 본인 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다른 회사(자회사등 제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 요건	충족여부	비 고	
전문성	충족	법률, 금융 전문가 (금융분야 전문변호사, 법학 교수)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다양성, 적합성, 실효성	적정함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사외이사 업무수행 능력 우수 (직무에 대한 기대 수준 이상)	

후보자	이윤재	소속법인	前 대통령비서실 재정경제비서관
*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모범규준 준수 여부			
상법 제382조 제3항 -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2항 -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6조 -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 제1항 -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6조 제4항 - 사외이사 임기제한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 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고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 (주요 사항)		해당여부	비고
소속 법인 자본의 10% 초과여신거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속 법인 및 본인 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다른 회사(자회사등 제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 요건	충족여부	비고	
전문성	충족	경제, 금융, 경영 전문가 (금융경제 관련 공직 경험, 전문경영인)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다양성, 적합성, 실효성	적정함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사외이사 업무수행 능력 우수 (직무에 대한 기대 수준 이상)	

후보자	진 헌덕	소속법인	(주)페도라 대표이사
*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모범규준 준수 여부			
상법 제382조 제3항 -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2항 -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6조 -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 제1항 -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6조 제4항 - 사외이사 임기제한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 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고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 (주요 사항)		해당여부	비고
소속 법인 자본의 10% 초과여신거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속 법인 및 본인 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다른 회사(자회사등 제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 요건	충족여부	비고	
전문성	충족	경영, 글로벌 전문가 (해외기업 전문경영인, 경영학 교수)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다양성, 적합성, 실효성	적정함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사외이사 업무수행 능력 우수 (직무에 대한 기대 수준 이상)	

후보자	최 재봉	소속법인	성균관대 기계공학 교수
*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모범규준 준수 여부			
상법 제382조 제3항 -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2항 -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6조 -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 제1항 -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6조 제4항 - 사외이사 임기제한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 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 고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 (주요 사항)		해당여부	비 고
소속 법인 자본의 10% 초과여신거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속 법인 및 본인 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다른 회사(자회사등 제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 요건		충족여부	비 고
전문성		충족	정보기술 전문가 (ICT 분야 공학 교수)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다양성, 적합성, 실효성		적정함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사외이사 업무수행 능력 우수 (직무에 대한 기대 수준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

TEL: 02-6360-3000

www.shinhangroup.com